



Vietnam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베트남

2018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Vietnam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베트남

2018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본 안내서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베트남세법 등을 2018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베트남세법 및 조세 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I. 베트남 국가 개황 1
 - 1. 베트남 국가 개황 2
 - 2. 한국과의 주요 이슈 9
 - 3.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12
 - 4. 베트남에서의 우리나라 위치 13
 - 5. 한국과의 FTA 13

- II. 베트남 최신 세무동향 15
 - 1. 베트남 진출시 주요 이슈 16
 - 2. 베트남 진출기업의 주요 세무상 애로사항 20
 - 3.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 강화 23

- III. 베트남 핵심 세무 25
 - 제 1 장 이전가격세제 26
 - 1. 이전가격 관련규정 26
 - 2.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주요 변경내용 27
 -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32
 - 4. 상호 합의(MAP) 48

 - 제 2 장 외국인계약자 세제 50
 - 1. 관련규정 및 조세조약과의 관계 50
 - 2. 외국인계약자 세제 적용대상 52
 - 3. 외국인계약자세제 산출방법 59



4. 외국인계약자세제 유의사항	70
5. 외국인계약자세제 관련 사례	73
제 3 장 세목별 조세제도	75
1. 법인세	75
2. 부가가치세	83
3. 소득세	91
4. 환경보호세, 특별소비세, 자원세	97
IV. 투자 인센티브 제도	105
제 1 장 투자환경	106
1. 최근 투자환경	106
2. 일반 투자환경	108
3. 베트남 투자환경의 변화	109
제 2 장 투자 인센티브 제도	115
1. 주요 우대조치 요약	115
2. 투자 인센티브 목적 및 지원대상	116
제 3 장 주요 투자법 내용	122
1. 투자관련 법률 및 규정	122
2. 개정투자법 주요내용	122



V. 부록	129
1. 베트남 관련 주요 예규 및 심판례	130
2. 한·베트남 조세조약	133
3. 베트남 APA 규정	157
4. 베트남 투자법	179
5. DECREE No. 20/2017/ND-CP 이전가격 과세규정	228
6. 이전가격 보고서식	258
7. 2018.9.17. 베트남 국세청 간담회 자료	274
8. 베트남 주요 웹사이트	287
9. 참고문헌(웹사이트)	290

베트남 국가 개황

I

- 1. 베트남 국가 개황 / 2
- 2. 한국과의 주요 이슈 / 9
- 3.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 12
- 4. 베트남에서의 우리나라 위치 / 13
- 5. 한국과의 FTA / 13





1 베트남 국가 개황



Base 802749AI (C00082) 8-01



□ 일반개황

국 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행정구역	5개의 중앙 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
독립일	1945년 9월 2일
면적	약 33만 966.9km ² (한반도의 약 1.5배)
기후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수도	하노이(Hà Nội) 721.6만 명, 2015년 기준
인구	9,270만 명(2016년 베트남 통계청)
중앙 직할시	하노이(721.6만 명), 호치민(814.6만 명), 하이퐁(196.3만 명), 다낭(102.8만 명),껀터(124.8만 명)
민족	비엣족(깁족, 전인구의 85.7%), 타이족, 화교(약 82만 명), 크메르 족 등 54개 민족
공용어	베트남어
종교	불교(43.5%), 가톨릭(36.6%), 까오다이교(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 종교) 등
화폐단위	베트남동(Vietnamese Dong, VND로 표기)
기준환율	22,437VND/USD(2017. 12. 20. 베트남중앙은행 고시환율)
시차	2시간 늦음(G.M.T +7시간)
외교관계	185개국과 수교
對 한국수교	1992년 12월 22일

□ 정치

정부형태	사회주의 공화제(공산당이 유일 정당)
독립일	1945년 9월 2일
행정구역	5개 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
주요도시	호치민市(775만명), 하노이市(700만명), 하이퐁市(187만명)



□ 경제

국내총생산(1인당)	1,381억불(1,528불)
수출/수입	1,108억불/1,116억불
경제성장률	5.02%
화폐단위	베트남동(VND), \$1 = 약 20,000 VND

□ 역사

고대국가 및 중국 복속기	「흥」 家の 반랑국(BC 690년) 등 고대국가형성 /중국에 병합(BC 111) → AD 972년 독립
전통왕조시대	전기 「레」왕조 → 「리」왕조 → 「찐」왕조 → 후기 「레」왕조 → 「찡」 · 「응웬」 家간 남북분립기 → 「응웬」왕조(AD 1802-1859)
佛 植民시대 /對美 항쟁기	1859년 佛 사이공 점령(1883년 佛의 보호국) 1940년 일본군 진주 및 1945년 일본군 항복후 「호치민」 독립 선언 1954년 佛 항복, 남북 분단
통 베 트 남 시 대	1973년 미군 철수 및 1975년 베트남 공산화 - 1976년 남북통일 총선거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7.2) 및 1977년 유엔 가입 80년대 초반 신경제정책 추진 ⇒ 성과미흡 - 산업기반 미비,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대외 불개방 등이 원인 1986년 개혁 · 개방의 “도이모이”(쇄신)정책 추진 - 시장경제요소 도입과 대외 개방 - 중국('91) · 미국('95)과 수교(現 167개 국가와 수교) - ASEAN 가입('95), APEC 가입('98) - ASEM 정상회의('04), APEC 정상회의 주최('06) -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08) - ASEAN 정상회의 의장국('10)



□ 국토

- (위치)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가늘고 긴 S자형으로 동경 103°27'~109°28', 북위 8°30'~23°24'에 위치. 북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으로부터 남서쪽에 이르기까지 남중국해와 태일란드 만에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하고 있음.
- (기후)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지형 특성상 남과 북의 기후 차이가 큼. 전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800mm정도이고, 주로 우기 때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음. 북부 지역은 아열대로 연간 온도 차가 커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차가 약 20℃에 달하는 지역도 있으나, 남부 지역은 열대 몬순기후로 연간 온도 차가 크지 않아 연간 최저 및 최고기온 차는 약 7℃ 정도임.
- (면적) 국토 면적은 330,966.9km²으로 남과 북을 합친 전체 한반도 면적의 약 1.5배.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길이는 1,650km에 달하며,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약 3,260km이다. 또한, 동서로는 최장거리가 600km, 최단거리가 48km에 달하는데, 베트남의 영토는 이처럼 길쭉한 모양새와 건국 신화 때문에 '용'에 비유되곤 함.
- (부존자원) 베트남은 풍부한 해안유전과 석탄, 석회석, 크롬, 티타늄, 몰리브덴, 철광석, 금, 주석, 인 회석, 망간, 구리, 보크사이트, 흑연, 고령토, 석영, 각종 보석 등이 매장돼 있어 자원이 풍부한 편이나 원유와 무연탄을 제외하고 경제성이 있는 자원은 부족하다. 원유의 매장량은 약 11억 5,100만 루베로 추정되고 있으며, 무연탄의 매장량은 100억 톤, 철광석의 매장량은 20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음.

□ 행정구역

- 크게 8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행정단위는 성(省), 현(縣), 사(社)로 구성됨
 - 성 : 58개의 성과 5개의 중앙 직할시



- 현 : 성 아래의 성도, 현, 시사가 있으며, 중앙직할시 아래에 구가 있음
- 사 : 현 아래의 시진, 사가 있고, 구 아래에는 방이 있음

(단위 : 명, km²)

지 방	구 성	인 구	면 적
부서부	4성	2,364,200	37,533
북동부	11성	9,746,498	64,025
홍강, 삼각주	9성	18,439,299	14,861
중북부	6성	10,070,311	51,552
중남부	5성	8,764,843	44,366
중부, 고원	5성	5,115,125	54,659
남동부	7성	14,067,361	23,604
메콩강, 삼각주	12성	10,201,178	20,025

<출처 : 위키백과, 2018. 6월>

□ 정치 사회동향

○ (정책기조) 자주독립, 실리주의

베트남은 ‘자유와 독립만큼 귀한 것은 없다(Không có gì quý hơn độc lập tự do)’는 호치민의 지도 아래 ‘독립·자주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통일 이후, 베트남은 안정적 통합과 오랜 전쟁의 상흔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가 경제 회복을 통해 체제의 안정과 여러 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했으며,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와도 우호관계를 형성해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외교정책을 펼쳤음.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으며, 과거 전쟁을 치른 미국과 합동군사훈련, 핵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사회주의적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음.



○ (외교정책) 외국인 투자 유치와 통상 관계 확대에 주력

베트남은 2007년 1월 WTO에 가입한 이후 유통시장을 개방했으며, 신흥 유망 시장으로서 외국인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2015년에는 △한국-베트남 FTA △유럽연합(EU)-베트남 FTA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다수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음.

2016년 5월 22~25일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베트남은 기존의 경제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포괄적 파트너십을 맺어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음.

2017년 5월 29~31일에는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베트남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총리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하여 양국간 경제 및 통상협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보는 윈-윈(win-win)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2017년 11월 10~11일에는 제25차 APEC 정상회의를 베트남 중부 해안도시 다낭에서 개최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명문화한 다낭선언문을 채택했음.

2017년 11월 23~24일에는 베트남 응웬쑤언푹 총리가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해 제9차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V) 개발 삼각지대 정상회의를 갖고 3국의 경제통합과 ‘아세안 비전 2025’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 (2016~2020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

베트남 총리는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을 2016년 3월 21일 국회에 제출했고, 4월 12일에 국회 비준을 받음.



<2016-2020년 베트남 사회·경제 개발 계획 주요 내용>

경제	2016-20년 연평균 GDP 성장률	6.5-7%
	2020년 1인당 GDP	3,200-3,500달러
	GDP 대비 공업, 서비스 부문 비중	85%
	총 GDP 대비 사회 투자 비율	32-34%
	재정적자 비율	GDP 대비 4% 미만
	총요소생산성(total-factor productivity)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30-35%
	2020년 도시화 비율	38-40%
	연간 노동생산성	5%
사회	2020년 농업 부문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 수 대비 40%
	2020년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수 대비 65-70%
	도심 실업률	4% 미만
	의료보험가입 인구 비율	80%
	빈곤가정 비율	연간 1-1.5% 감소
환경	정수사용 인구 비율	도심지역 95%, 비도심 지역 90%
	폐수처리 비율	85%
	삼림피복률	42%

<자료원 : Resolution No. 142/2016/QH13> (2016년 7월 작성기준)

이번 계획안의 주요 목표는 ① 거시경제 안정화 및 경제성장률 제고, ② 경제구조조정 및 성장모델 변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③ 시민 안전·복지·삶의 질 개선, ④ 자연재해 등의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 ⑤ 국가안전 보장, ⑥ 외교업무 및 국제통합 활동 강화, ⑦ 국가 보호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⑧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선진 공업국으로의 발전임.



2 한국과의 주요 이슈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2012년 한-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양국 관계 발전과 교류 증진의 계기로 고위급 교류 방문과 수교기념 국제 세미나 등의 외교분야 행사와 더불어 양국 국민들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실시
-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여 양국간 경제협력과 정치적, 문화적 우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으며,
-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중부 다낭시를 방문, 쩌 다이 쩡(Tran Dai Quang)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으며, 2020년까지 교역 1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음.

□ 베트남의 對 한반도 정책 기조

-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면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북한 핵문제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통일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경험을 반영,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고 있음. 베트남 중부지역에 종합병원 건설, 현지진출 한국 기업 및 교민사회와 함께 저소득 계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 의료 혜택 지원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구상 중임.

□ 베트남 WTO 가입에 따른 대 베트남 수출여건 변화

- 베트남은 의회의 비준에 따라 2007년 1월 11일 정식으로 WTO 회원국이 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의 수입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가 5년 이내라는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어 WTO 가입에 따라 수입 관세인하의 본격적인 효과는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으로는 2018년에 대부분의 관세인하가 완료될 예정임.
- 베트남 정부의 WTO 수입관세 협상 대상 10,600개 품목에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500대 수출 품목 중 489개 품목을 선별(분석 불가능한 11개 품목 제외)해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 변화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489개 우리의 대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서 즉시 또는 향후에 수입관세 인하 혜택을 보는 품목은 전체 41.9%인 205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39.9%를 차지하는 190개 품목은 WTO 가입으로 오히려 수입관세가 인상되며 94개 품목(18.2%)은 수입관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을 합할 경우 총 284개 품목 (58.1%)은 오히려 수출환경이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음.

□ 한 - 베트남 FTA

○ 한 - 베트남 양자 간 FTA 현황

한국과 베트남 FTA는 지난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으로 2년 4개월 만인 2014년 12월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됐음. 한국과 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고 보다 포괄적인 FTA 추진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했음.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중인 베트남은 한국과의 양자 FTA에 소극적이었으나, 현지 투자 우리기업의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기여 등을 이유로 양국간 FTA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협상을 시작했음.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대베트남 수출 확대 효과가 크지 않아 한·베트남 FTA를 통해 상품분야의 추가 자유화와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환경 개선 등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졌음. 그간 생산기지로 인식돼왔던 베트남은 이번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우리기업들에게 향후 유망 내수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다. 한-베 FTA 협정은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정식서명을 완료했으며, 2015년 11월 30일 국회 비준을 마치고 2015년 12월 20일 마침내 발효됐음.

○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 (상품 분야) 베트남 측은 이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제외됐던 민감·초민감 품목을 추가 자유화하며, 6%p를 추가적으로 개방했음.
 - (원산지/통관 분야) 한국과 베트남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 수입관세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 등 기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했음.
 - (개성공단 분야) 이번 한-베트남 FTA에서는 개성공단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음. 우리 업계의 요청을 감안해,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FTA 적용 품목 100개를 선정해 협상했음(섬유, 의류, 기계, 자동차 부품 등)
 -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에서는 베트남이 건설 서비스 일부의 양허를 개선하고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함. 또한, 향후 베트남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를 자유화하는 경우, 우리와도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했음.
- * 네거티브 방식 :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개방을 제한·금지하는 품목만 정하는 협상 방식.
- (투자 분야) 이번에 실질적 타결이 된 한-베트남 FTA에서는 한-아세안 FTA보다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 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투자자 대 국가 소송제도 절차를 체계화했음.

- (규범 분야)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쟁, 전자상거래, 지적권 등을 포함하면서 비교적 ‘선진화된 포괄적 FTA’를 타결했음.

3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 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 구	백만 명	90.73	91.68	92.64	93.61 ^(a)	94.59 ^(b)
명목GDP	십억 달러	185.9	191.45	200.49	215.92 ^(a)	234.19 ^(b)
1인당 명목GDP	달러	2,049	2,088	2,164	2,307 ^(a)	2,476 ^(b)
실질성장률	%	6	6.7	6.2	6.3 ^(a)	6.5 ^(b)
실 업 률	%	2.05	2.4	2.4	2.40 ^(a)	2.40 ^(b)
소비자물가상승률	%	4.09	0.63	2.05	3.65 ^(a)	3.9 ^(b)
재정수지(GDP대비)	%	△6.1	△5.9	△6.5	△6.0 ^(a)	△5.6 ^(b)
총 수 출	백만 달러	150,217	162,017	176,581	193,871 ^(c)	224,320 ^(d)
(대한 수출)	백만 달러	7,144	8,921	11,406	-	-
총 수 입	백만 달러	147,849	165,570	174,804	195,770 ^(c)	225,569 ^(d)
(대한 수입)	백만 달러	21,763	27,631	32,163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2,368	△3,554	1,777	△1,899 ^(c)	△1,249 ^(d)
경상수지	백만 달러	9,508	906	77	227 ^(a)	417 ^(b)
환율(연평균)	VND/US\$	21,148	21,698	21,935	-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1.5	11	13.9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9	11.8	12.6	-	-

* 주 : (a) IMF 추정치, (b) IMF 전망치, (c) Euromonitor 추정치, (d) Euromonitor 전망치

<자료 : IMF, EIU, Euromonitor, 베트남 세관총국>



4 - 베트남에서의 우리나라 위치

□ 2017년 상반기 베트남의 상위 10위 교역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액(비중)	순위	국가명	수입액(비중)
1	미국	19,695.1(20.2)	1	중국	26,838.5(26.7)
2	중국	13,021.4(13.3)	2	한국	22,558.1(22.4)
3	일본	8,040.3(8.2)	3	일본	7,773.9(7.7)
4	한국	6,566.0(6.7)	4	대만	5,891.6(5.9)
5	홍콩	3,494.9(3.6)	5	태국	4,753.5(4.7)
6	네덜란드	3,334.0(3.4)	6	미국	4,721.9(4.7)
7	독일	3,157.7(3.2)	7	말레이시아	2,701.2(2.7)
8	아랍에미리트	2,491.2(2.5)	8	싱가포르	2,844.6(2.8)
9	영국	2,399.3(2.5)	9	인도	1,976.0(2.0)
10	태국	2,222.7(2.3)	10	인도네시아	1,765.2(1.8)
기 계		33,298.6(34.1)	기 타		18,673.9(18.6)
합 계		97,721.2(100.0)	합 계		100,498.4(100.0)

<자료 : 베트남 세관총국>

5 - 한국과의 FTA

구 분	한 - ASEAN FTA(또는 AKFTA)	한 - 베트남 FTA(또는 VKFTA)
추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11.30. 협상개시 - 2006.8.24. 정식서명 - 2007.4.2. 비준안 국회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8.6. 협상개시 - 2014.12.10. 실질적 타결 - 2015.5.5. 정식 서명 - 2015.11.30. 비준안 국회 통과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6.1. 상품협정 발효 - 2009.5.1. 서비스협정 발효 - 2009.9.1. 투자협정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12.20. 발효

구 분	한 - ASEAN FTA(또는 AKFTA)	한 - 베트남 FTA(또는 VKFTA)
의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가 타결한 열다섯 번째 FTA이자, 한-ASEAN FTA 첫 개별국 업그레이드 협상 - 기존 한-ASEAN FTA상의 양국간 불균형한 상품 양허 수준 개선
효 과 기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베트남간 교역확대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ASEAN FTA 발효를 전후로 양국간 교역액이 약 10%p 증가 - 한국의 대 베트남 수입관세 인하에 따라 선진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겨냥한 수출기지로서의 베트남 투자진출 확대 - 베트남의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진출이 증가에 따른 한국산 생산재 수입 수요 증가가 원인 - 한-ASEAN 서비스협정 발효로 한국 기업이 ASEAN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품목군 추가 개방을 통한 수출확대 기대 -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거대 내수 소비시장으로의 진출 여건 마련 - 건설 및 도시계획·조경, 기계·장비 임대 등의 서비스 분야가 추가 개방됨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 분야 확대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으로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원산지 증명, 불투명한 통관절차, 진출 제한 등의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완화 및 특혜 관세 사후적용 혜택
한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유효기간과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활용률 저조(약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품목 기준 2013년까지 50%, 2015년까지 90% 철폐 - 관세혜택 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품목의 경우 MFN(최혜국대우관세) 보다 고율관세 적용 - ASEAN 다른 회원국 대비 낮은 개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세 비율 : 베트남 27%, 말레이시아 83%, 필리핀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기업의 낮은 인지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확인, 사후 적용을 위한 절차 요건 추가 발생 등의 기업 애로사항 제기

<자료 :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베트남 최신 세무동향

II

1. 베트남 진출시 주요 이슈 / 16
2. 베트남 진출기업의 주요 세무상 애로사항 / 20
3.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 강화 / 23



1 베트남 진출시 주요 이슈

□ 탈(脫) 중국화의 가장 확실한 대안

- 최근 외투기업들의 기술유출, 임금상승 등 투자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국을 대신해 새로운 생산거점이자 수출기지로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고 파격적인 외국인 투자정책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확대
- '15년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관세장벽 철폐로 타(他) 동남아 국가와 차별화되는 각종 조세혜택 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와 함께,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적극적 세수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

□ 우리나라는 베트남 제1위 투자국

-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FDI는 낮은 인건비 및 법인세 등에 따라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업체의 활발한 진출에 힘입어 2013년 이후 4년 연속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의 지위를 차지함.
-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2018.9월말 누계기준 신규법인 수는 5,665건, 투자금액은 197억 달러임.

□ 법인세율 추가 인하로 동남아 주요 국가 중 낮은 법인세 부과

- 2014.1월 법인세율 인하(25%→22%) 후 2016년 1월 추가로 20%로 인하했으며, 일반우대 지역에서는 사업개시로부터 10년간 17%, 특별우대지역과 총리령으로 지정된 경제특구의 특정산업*의 경우 사업개시로부터 15년간 10%의 우대세율을 적용함.

* 첨단 과학기술분야, SOC, SW 분야



- 또한, 과세소득 발생 이후에도 우대지역 구분에 따라 법인세 완전면제 기간과 50%의 감면기간을 두어 적극적인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펼치고 있음.

□ 2015년 7월 新투자법 및 新기업법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정부는 2015년 7월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유치 분야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新투자법과 新기업법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보다 유리한 여건을 제공함.
 - 법인 설립 시 외국 투자법인(외국인 지분 51% 이상)은 기업등록증과 투자등록증을 모두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지분이 51% 미만일 경우 내국 법인과 법인설립 절차가 동일함.
 - 투자등록증 허가 기간을 45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으며, 법인 인감 등록 절차 등을 간소화함. 또한 투자유치 분야를 5단계로 구분(일반투자, 특별 투자장려, 투자장려, 조건부 투자, 투자금지)하여 각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을 세분화함.

□ 특정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선별적 인센티브 제공

- 베트남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IP), 수출가공공단(EPZ), 경제 특구(EZ)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역 투자기업은 법인소득세, 관세, 토지사용료 등 부문에서 우대 세율이 적용됨. 이와 같은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가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FDI 유입액(등록 자본액, 억 달러) : 78.5('12) → 142.7('13) → 156.4('14) → 155.8('15) → 151.8('16)

- 외국인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64.6%), 부동산업(10.0%), 운송·저장업(4.6%), 금융·보험업(3.4%) 등 순서임.
- 아울러 최근 자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IT, 부품소재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하이테크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이에 섬유·봉제·신발 등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투자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소비 및 투자증가 등으로 6%대의 경제성장세 지속

-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간 중국 다음으로 높은 연평균 6.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며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 도약함.
- 2016년에는 가뭄, 해양오염으로 인한 농업부문 등 1차 산업 부진으로 성장률이 전년(6.7%) 대비 둔화되어 6.2%를 기록함.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진작, 제조업·건설업의 지속적 성장, 외국인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6%대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대 베트남 무역 확대

-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원산지 기준 완화 등 규정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 베트남 무역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326억 달러, 교역액은 전년 대비 20.1% 증가한 451억 달러로 베트남은 2015년부터 중국, 미국, 홍콩에 이은 4대 수출국 및 교역국으로 발돋움함.

□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지 진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가중

- 외국인투자기업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7년 전년대비 평균 7.3% 상승하였으며, 이전의 10% 대의 상승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10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1지역 : 월 3.5백만 동→3.75백만 동, 2지역 : 3.1백만 동→3.32백만 동 등

** 호치민 시내와 같은 1지역의 경우 2005년 0.6백만 동에서 2017년 3.75백만 동으로 10년 만에 6배 상승하였으며, 타 지역도 유사한 수준임.

- 급격한 물가상승이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나, 2014년부터 노동자 중심의 국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 또한 노동법으로 기술훈련을 이수한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의 7% 이상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한 - 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 타결 및 가서명

- 기획재정부는 2014. 8. 18.(월) ~ 8. 20.(수)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9월 발효, 이하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이 기대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역외소득 비과세)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비과세됨을 명시함.
 - (주식 양도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 *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기타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은 현행대로 거주지국에서 과세
 - (사용료 소득)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함(제한세율 7.5%).
 - *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 세율 유지
 - (정보교환) 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하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함.
 - (혜택의 제한)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나, 2018.6월 현재까지 비준 및 발효되지 않은 상태임



□ 조세회피방지규정 도입('13.12.24 공포)

- (Circular NO.205/2013/TT-BTC, 2013.12.24) 조세조약의 혜택만을 목적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 경우 ‘계약의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일명 ‘GAAR’¹⁾)이 도입(명문화)되어
 - 우리기업이 홍콩 등을 통해 우회진출하는 경우 적용될 소지가 크며 본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확산

2 베트남 진출기업의 주요 세무상 애로사항



□ 이전가격세제 시행규칙 시행과 본격적인 과세

- 시행규칙 정비와 함께 이전가격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최대 세무리스크임
- 현지 진출한 대부분 우리기업은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베트남 현지기업을 저임금을 활용한 단순한 현지 생산처로 인식, 이익을 남기지 않는 구조로 운영해왔으며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이전가격보고서 및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세당국의 일방적 과세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이전가격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근거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방적인 과세로 이어지고 있음

1) GAAR : General Anti-Avoidance Rules(조세회피방지규정)



□ **외국인계약세제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한 이중고**

- 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베트남 과세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외국인계약세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서도 “정당한 납부”세금으로 보고 있지 않아 이중과세 조정이 불가능
- 재화의 공급시 보증 조건만 포함한 경우는 외국인 계약자세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계약서 내 다른 서비스의 조건이 포함되어서는 안됨(조립·유지·검사·보증 등의 공급을 수반한 재화의 공급은 외국인 계약자세를 적용 받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 이들 서비스의 공급가액 표시 유무를 떠나 유상, 무상 모두에게 적용)

□ **현지 노동법 준수 어려움**

- 베트남 노동법 상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여 야간 작업에 대한 임금 지급시 공식적 지급이 힘들어 현지 손금인정 어려워 회계 및 세무 처리가 까다로움

□ **현지진출 중소기업의 혜택미비**

- 우리 일부기업의 거액투자에 대하여는 특별 세제조항을 통해 파격적 혜택을 받은 반면 일반적 투자 확대 우대세율 적용시 투자규모, 매출액, 고용규모와 같은 조건을 두어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혜택 미비(투자확대 기준 3억 달러 이상)

□ **공무원의 부정부패**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수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체 183개 평가국 중 112위를 기록, ASEAN 국가 중 최하를 기록하는 등 베트남의 부정



부패는 반 경쟁적인 비즈니스 관행 및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시키는 행정절차 등 심각한 문제

- 현지 업무별 일정률의 비공식적비용이 일반화되어있음

□ 주재원 과세 이슈

- 베트남 소득세 시행규칙(Circular 111/2013-TT-BTC)에 따르면, 베트남 거주자의 요건을 미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상기 18조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요율(20%)에 따라 세금을 베트남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사로부터의 장기 출장자 파견, 서비스가 수반된 재화(설치, 시운전, 교육훈련 등 인적 용역수행이 명시된 기계설비) 수입의 경우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 과세하고 있음
-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해야하나 현지법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하여 현지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 투자에만 감면혜택 및 투자요건 복잡

-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기준으로 200억 동이상 신규 투자를 하거나 감세 조치가 적용되는 사업 부문에만 투자 확대를 시행
- 취득 원가 기준 고정자산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 기준 20% 이상 증가 시 인정하는 등 신규투자요건 복잡



3 -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 강화

□ 개정된 이전가격 규정 강화²⁾

- 베트남 과세당국에서는 이전가격 규정을 강화하여 Decree No 20/2017/ND-CP(2017.2.24)와 Circular No 71/2017/TT-BTC(2017.4.28)를 공표하였고, 이 규정들은 2017.5.1일부터 발효가 되어 시행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제출 의무 도입, 그룹내 용역제공, 특수관계자간 이자지급, 무형자산 관련 거래, 고정자산 매입 거래 등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납세자의 이전가격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과세당국이 이 자료를 통해 세무조사를 용이하게 하였음.
 - 또한 이 규정은 기존에는 많이 과세하지 않았던 용역거래(로열티, 경영자문료, 기술 용역료, 이자 등)에 대해서도 과세권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피력됨.

□ 이전가격 과세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³⁾

- 베트남 정부는 2015년 7월 베트남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내에 ‘이전가격전문조사부서’를 신설하였고, 지방에는 하노이, 호치민, 빈중, 동나이에도 동일한 부서가 신설되었음.
 - 또한, 2016년 3월 GDT 내에 ‘위험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는데, 이 부서에서는 각종 세무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이전가격전문조사부서의 조사를 돕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위험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KOTRA, 해외시장뉴스(2017. 7. 7)

3) 국제원산지정보원, 외국의 비관세장벽 자료 체계화 연구용역보고서(2017.12), 264면



□ 이전자격 시행령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전망⁴⁾

- 비교가능한 베트남 정보(local data)의 부족에 따른 비교군의 확대 가능성, 이전자격 평가를 위해 과세당국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복 등 높아진 분쟁가능성, 가격조정 세부 방법의 부재 등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 국제적 세제 기준인 BEPS 실행계획 도입으로 과세의 투명성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베트남 당국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임

4) 이홍배, 베트남 이전자격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 법률신문(2017.11.9.)

베트남 핵심 세무

Ⅲ

제 1 장 이전가격세제 / 26

제 2 장 외국인계약자 세제 / 50

제 3 장 세목별 조세제도 / 75



제 1 장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 관련규정

□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연혁

- 정상가격원칙(The arm's length principle)에 관한 법령
 - Circular 74/TC-TCT(1997.10.20.), Circular 89/1999/TT-BCI(1999.7.16.), Circular 13/2001/TT-BCT(2001.3.8.) 등 외국인투자법률에 시장가격의 적용에 대해 규정
 - '04년 발효된 베트남 기업소득세법(BIT)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은 시장가격에 따라야한다는 원칙이 포함
 - '06년부터 발효된 Circular 117/2005/TT-BTC에 정상가격계산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서식을 규정
 - '10년 기존의 규정을 강화하고 이전가격의 국제적기준을 반영(OECD 가이드라인)한 Circular NO66/2010/TT-BTC를 제정, 기존의 Circular 117을 대체하였으며 본격적인 과세가 이루어짐
 - 『2012-2015』 이전가격관리계획(Decision No. 1250/QD-BT)을 통해 이전 가격세무조사 방향을 제시
 - '17년 이전가격 규정을 강화해 Decree No. 20/2017/ND-CP(2017.2.24)와 Circular No. 41/2017/TT-BTC(2017.4.28)를 공표했고, 2017년 5월 1일부로 효력 종전의 Circular NO66/2010/TT-BTC를 대체
-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
 - 2011-2020 조세개혁정책의 일환으로 APA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4.2.5일 부터 시행(Circular 201/2013/TT-BTC(2013.12.20.))



○ 상호합의(MAP)

- APA규정(Circular 201/2013/TT-BTC(2013.12.20.) 및 조세조약적용을 위한 적용 가이드라인(NO. 205/2013/TT-BTC, 2013.12.24) 내 상호합의에 대하여 규정
- 한 - 베 조세조약 제25조와 우리나라 국조법 제22조에 따라 우리나라와 쌍방 APA 및 MAP가능

2 -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주요 변경내용⁵⁾

□ 특수관계 범위

○ 직접 특수관계자 - 소유권

개정전 제66호 시행규칙	개정후 제20호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가 20%이상으로 투자하는 경우 당사자가 특수관계자로 간주됨. 구체적으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의 소유주에 최소 20%의 투자 자본금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2) 두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의 기업에 최소 20%의 투자 자본금을 각각 보유하는 경우, 또는 (3) 제 3의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각 두 기업에 최소 20%의 투자 자본금을 보유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 투자의 최소지분율이 25%로 증가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의 소유주에 최소 25%의 투자 자본금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2) 두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의 기업에 최소 25%의 투자 자본금을 각각 보유하는 경우 (3) 조건은 삭제되었음.

5) Decree No. 20/2017/ND-CP(2017.2.24)와Circular No. 41/2017/TT-BTC(2017. 4. 28)
KOTRA, 해외시장뉴스(2017. 7. 7), Kocham Seminar자료-2018. 5. 23. 개정국세 및 세무조사 동향 (서우회계법인 베트남)

○ 간접 특수관계자 - 차입금

개정전 제66호 시행규칙	개정후 제20호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이상으로 보증 또는 자본조달하는 경우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로 간주됨. 구체적으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여하거나 보증해 주며 그 대여금이 차용 기업의 투자자본가치의 20% 이상을 차지하거나 그 차용 기업의 중기 & 장기 총 차입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 또는 자본조달 최소비율이 25%로 증가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여하거나 보증해 주며(특수관계자에 의해 보증된 제3자의 대출 또는 유사한 재무거래를 포함)그 대여금이 차용 기업의 투자자본가치의 25% 이상으로 차지하거나 그 차용 기업의 중기 & 장기 총 차입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간접 특수관계자 - 사업관계

개정전 제66호 시행규칙	개정후 제20호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기업은 다른 기업의 총 매출 또는 매입가치의 50% 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간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삭제 됨. · 제 20호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두 기업이 특수관계자로 간주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개인에 의해 투자된 자본을 통해 제어되거나 직접 영업관리 대상이 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사업 또는 (2) 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결정에 의해 관리 또는 제어되는 경우

조건 (2)는 실질과세 원칙과 일치하지만 현재 상세한 지침이 없으므로 다양한 해석을 양산할 수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 비교대상회사

개정전 제66호 시행규칙	개정후 제20호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가 비교대상을 선택 시 특수 관계자간 거래의 arm's length 을 평가 하기 위해, 조세당국이 요청 시 확인이 가능한 합법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비교대상 정보 선택 시 지역적인 제한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대상 회사 선택은 아래와 같이 제안된 데이터의 우선순위로 실행 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자의 내부 비교정보 (2) 같은 국가 & 영토 이내에 위치 하는 비교정보 (3) 유사한 사업부문 & 경제발전 조건을 가진 타국의 비교정보

○ 정상가격과의 차이 산정

개정전 제66호 시행규칙	개정후 제20호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분석 시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과의 차이 산정에 대한 지침이 없음. 	<p>이전가격차이 산정 : CUP경우 제3자 비교 사례가격</p> <p>타방식 : 중위값 이상의 비교사례가격.</p> <p>과세표준결정 : 이전가격차이 산정규정을 토대로 중위값 이상으로 조정</p>

□ 이전가격 보고서

○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의 종류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규정을 준용해 아래 3가지 보고서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여

- 1) Master file(통합기업보고서) : 그룹 본사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로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

- 2) 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 :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각 자회사가 이전가격 거래 시 관련 정책을 잘 준수했는지에 대한 실행보고서
- 3)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 보고서) : 전 세계 관련 자회사의 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 이 보고서는 매출액, 이익, 세금 납부액, 종업원 수, 자본금, 자산, 주요 영업형태와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제출 대상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국의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에 베트남에서도 제출 대상

○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시기 및 제출

납세자는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까지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함. 이 보고서와 별도로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 작성해야 할 이전가격 서식 4개가 추가됐는데, 서식들을 작성하려면 위의 이전가격보고서 패키지 작성을 선행해야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는 과세당국의 요청 시에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당초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제출기한이 단축됨

개정전 제66호 시행규칙	개정후 제20호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시 30일 내에 제출 · 서식 03/TNDN 아래 TP 신고서01 (특관자에 대한 기본정보, 거래금액 등 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시 15일 내에 제출 · TP 신고서 01(특관자거래 기본정보) · 신고서 02(자회사기업보고서) · 신고서 03(기업집단 전체보고서) · 신고서 04(국가간 세금납부 보고서)

○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작성 의무의 면제

- 1) 당해연도 매출액이 500억 동 이하이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규모가 300억 동 이하로 영세한 납세자인 경우
- 2) 베트남 자회사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로 당해연도 매출액이 2000억 동 이하이면서, 도매업의 경우 영업이익(EBIT)가 최소 5% 이상인 경우, 단순제조업의 경우, 10% 이상인 경우, 단순임가공업의 경우 15% 이상인 경우



- 3) 양 과세당국에 이전가격에 대해서 미리 승인받는 제도인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가 체결되고 APA 연례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 특수관계자 용역거래와 이자비용

- 특수관계자 거래 중에 실질없이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하려고 하고 있음(로열티와 경영자분류 등)
- 법인세법상 아래 요건 충족 시 손금 산입 가능
 - (1) 제공받은 용역이 실제로 납세자의 영업에 혜택이 있을 것
 - (2) 독립된 기업간에서도 그러한 용역을 제공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
 - (3) 지급된 용역대가가 정상가격일 것(그룹의 경비 배부기준과 이전가격 산출방법이 일관성이 있을 것)
 - (4) 납세자는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관련 증빙이 있을 것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EBITDA(영업이익에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를 가산한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만 이자비용 공제 가능.

□ 설비와 기계장치 등의 구매 거래

당초 많은 베트남 내 외국계 기업들이 본사로부터 설비 등을 구매하여 베트남으로 들여올 때, 과도한 이익을 붙여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이번 개정 규정은 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

- 신규 설비나 기계장비 : 본사로부터 구입 시에는 본사의 구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본사가 구매한 금액에서 구매 관련 비용과 적정한 이익률만을 가산하여 베트남 자회사에 넘겨야 한다.
- 중고로 사용 중인 설비나 기계장비 : 당초 구입한 설비와 기계장비의 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계상후 의 회계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관련 비용과 적정한 이익률만을 가산하여 베트남 자회사에 넘겨야 한다.

3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⁶⁾

□ 관련규정

-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적용지침서(Circular NO201/2013/TT-BTC)
 - '13.8.23일 초안 발표
 - '13.12.20일 발효, '14.2.5일부터 시행
 - (우리나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규정

□ APA 정의

- 과세당국과 납세자 서면 약정서에 의해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근거를 정의한 한 협약
 - 과세당국 : 국세청 (the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지방세무서 (Departments of Taxations of provinces)

□ 적용대상

- 법인세(CIT)를 납부하는 납세자(APA신청기한 내 신청)
 - 국내 외 거래를 모두 포함[operate in multiple localities (Including other countries or territories)]
 - 모든 사무소(every office)가 별개의 회사(separate company) 로 간주

□ APA유형(일방, 쌍방, 다자간 모두 규정)

- 일방APA : 베트남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APA

6) 2016.12.31. 현재 처리중에 있는 베트남 APA 건수는 6건(국세청, 2016 APA 연차보고서(2017.12월), 제46면)



- 쌍방, 다자간APA : 베트남 과세당국과 납세자, 1개 이상의상대방국가 과세당국 간 APA

□ APA 적용거래

- 특수관계자 간 매출, 교환, 임차, 물품 및 용역 이전
- 거래를 통합하여 특수관계거래로 신고할 수 있음
 - 건별 신청이 원칙이나 거래가 상호의존적인 경우로 이전가격규정에 의해 기능, 자산, 위험 유사한 경우에 해당

□ APA 적용원칙

- 협상(negotiate) :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법률 적용에 대한 협상에 의해 적용됨
- APA 지향(목적)
 - 과세당국의 징수비용과, 납세자의 세무협력비용을 절감
 - 사업 성격에 적합한 시장가격을 결정, 적정이익을 산출하여 정상가격에 대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 이중과세 및 탈세를 방지
 - 납세자는 APA 협상기간동안 세금을 현행과 같이 신고납부
- APA 정상가격 결정방식
 - 이전가격규정(Circular 66)을 준수하며 선정방식의 본질이 선정방법의 명칭보다 더 중요함(실질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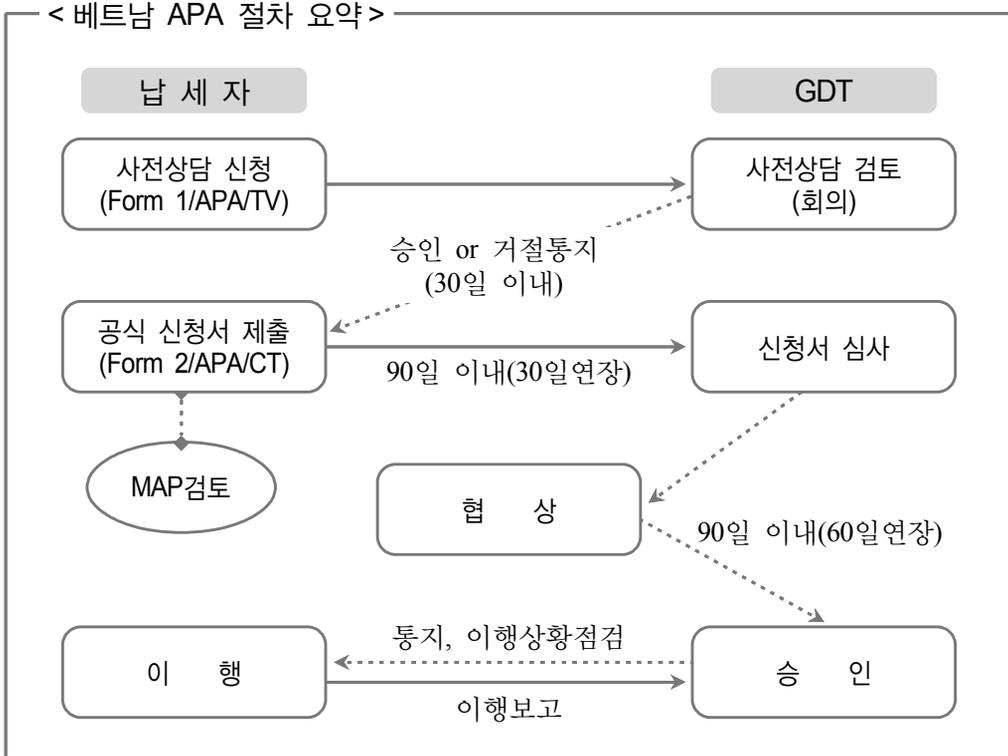
□ APA 관련 권한

-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 협상, 승인, 수정, 갱신, 철회 및 무효화 계획을 승인



- 국세청(The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
 - 신청서 접수, APA 협상 진행, 승인, 수정, 갱신, 철회 및 무효화, APA 이행에 대한 감독 및 조사
- 지방세무서(Departments of Taxation of provinces)
 - APA협상, 이행(업무의 범위 한정)

□ APA 절차 요약도



□ 사전상담

- 요건 : 납세자의 APA신청요건 검토 요청시
- 사전 상담 유형
 - 신규 APA체결 및 추가거래에 대한 신청 여부 불문



- APA 만료일 임박으로 인한 갱신시 과세당국이 요청하거나, 납세자가 요청할 수 있음
- 일방APA에서 쌍방, 다자간으로 전환할 경우 가능

< 사전상담 >

사전상담을 거쳐야 본 신청을 할 수 있어 강제규정임
우리나라는 의무는 아니나 사실상 대부분 사전상담을 거침(권장)

- 사전상담 제출서류(납세자의 의무)
 - 납세자명, 소재지, 특수관계거래 당사자의 상호 및 주소
 - APA의 유형(쌍방, 다자간 APA 관련국가 명)
 -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 및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거래 특정 거래 선정사유 및 특정 거래가 제외 사유
 - 특수관계거래의 가격 범위
 - APA 적용 희망기간
 - APA규정에 따른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기능, 자산 및 위험에 대한 분석
 - 비교가능성 분석, 데이터, 산정 방식, 사분위 범위 및 정상가격결정을 위해 제안
 - APA 영향을 주는 중요한 추정
 - 회사의 범위 및 납세자의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로 법인의 영업에 관련된 정보 (사업의 종류, 자본, 구조, 사업범위를 포함)
 - 납세자 관할에서 진행된 세무조사결과 요약
 - 유사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해서 외국의 과세당국과 APA를 승인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특수관계거래
 - 해당 외국 과세당국의 의견(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시간, 연락처
 - APA실행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시장분석, 사업전략, 정책, 다른 조세 채무에 끼치는 영향 등)



- 서면기록원칙 : 모든 상담은 서면으로 기록
- 사전상담결과통지 : 30일이내에 APA공식제출 승인여부 통지
- 사전 상담 요청서식(1/APA-TV)

□ APA신청서 제출

- 공식신청서(2/APA-CT) 제출
- 기한 : 서면상담 승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일 이내
- 제출기한 연장 : 서면으로 요청(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첨부자료 내역
 - 1) 기본사항
 - 납세자명, 소재지, 특수관계거래 당사자의 상호 및 주소
 - 납세자의 Tax codes(본점, 지점 및 부서의 tax codes 포함)
 -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의 주요 사업 종목에 대한 정보
 - 2) 특수관계 거래 및 범위
 -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 및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거래 특정 거래 선정사유 및 특정 거래가 제외 사유
 - 특수관계거래의 가격 범위
 - 적용되는 APA 유형, APA 적용 희망기간
 - 3) 기업 현황
 - 기업의 연혁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 정보
 - 기업 및 납세자의 조직 구조
 - 가치사슬에 대한 개요 및 해당 가치사슬에서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가 속한 단계
 - APA적용대상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흐름에 대한 상세 설명 및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유사 특수관계거래
 - 자본구성 및 관계(직·간접 투자, 대출, 구성원(partner)들 간의 투자 비율 등을 포함)



- 특수관계자의 사업 특성
 - 기업의 사업전략 개요 및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 적용일 이후 5개년 사업계획 또는 적용 기간 동안 납세자가 활용하는 사업전략 설명
- 4) 산업 분석 정보(산업 및 시장동향 분석)
- 납세자의 시장점유율
 - 위험요소, 기회, 시장성장을 촉진하는 요소
 - 다른 국가나 영토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 정책 및 규정과 같은 산업에 대한 기타 정보
 -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의 기능, 자산 및 위험 상세 분석.
 - 납세자 및 APA 거래상대방은 당사자들 간의 자원 및 인프라 배분을 포함하여, 기능, 자산 및 위험의 상세 분석
 - 지적 재산 및 무형 자산 : 해당 자산의 소유자, 사용자,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한 등록방법 및 등록시기, APA적용대상 물품 혹은 서비스 가격산정구조 하에서의 무형 자산 가치
 - 회계규정, 특수관계자 사용 통화(currency) 및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를 위해 사용된 통화
 - 가치사슬(value chain), APA 적용 거래와 관련된 거래사슬 및 APA 적용 유사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
 - APA 적용 및 비적용 거래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 공급 및 유통 과정
 - 납세자의 주요 공급자 및 고객 정보
 - 기타 독립 당사자와의 거래 설명
- 5) 재무정보
- APA가 적용되기 직전 3년 간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신고서(3년 이하인 경우 전체)
 - 특수관계자어의 3년 간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 시장 및 재무 관련 기타 정보 및 계획

6) 정상가격 결정방법

-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입증(근거)
- 비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분석, 비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선택 사유, 가격결정을 위해 선정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와의 적합성 및 양립성 설명(차이조정 포함)
- 특수관계거래 재무 정보에 해당하는 APA 적용 기간 동안정상가격 결정 방식 입증(가격, 매출총이익률, 순이익률,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에 관한 영수증 및 지출에 대한 수입금(receipts) 및 지출금에 대한 추정된 영향력을 산정하는 것을 포함)
- 시장가격결정방식이 이전에 사용된 방식과 다른 경우, APA적용 기간 직전 3~5년 동안 납세자의 재무정보에 적용한 시장가격결정방식에 대한 입증(납세자가 설립된 지 3년 이하인 경우, 영업기간에 시장가격결정방식을 적용)
- APA가 적용되는 거래와 유사한 기타 특수관계거래에 적용된 시장가격결정방식에 대한 일반정보
- 유사거래의 비특수관계거래 자료(가격결정에 대한 규모 및 설명 관련 정보를 제공, 해당 거래가 비교대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한 설명)

7) 중요한 추정

- APA 특수관계자의 기여비율 변동
- 기능, 자산, 위험의 변동(무형자산, 지적 자산 등 추가 투자)
- 조세정책 및 외국환 관리에 대한 변동
- 사업허가증 발급, 정부시책

8) APA 적용 거래 관련 국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정보(국내법 및 관련 조세조약 간의 관계)

9) 유사 APA 체결본의 복사본

10) 소유권 계약, 서비스 사용, 판매, 유통 권리, 개발연구 등, APA 적용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 간 계약서 및 법적 합의서 복사본



11) 세제인센티브, 조사결과(이전가격조사 포함),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절차에 대한 결정 및 통지 등

○ 제출언어 : 베트남어로 3부

- 쌍방 APA, 다자간 APA 영문본 첨부
- 납세자는 번역본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하고 번역 내용에 책임
- 해당 문서의 전산파일을 제공
- APA 내용 색인 : 해당 문서가 보존되는 위치와 방식

○ 제출정보의 통일성

- 쌍방 APA, 다자간 APA를 신청하는 경우, 베트남 과세당국 및 외국 과세당국에 제출된 문서 내 정보 및 데이터는 유사해야 하며 최소한 위에 언급된 정보로 구성

□ APA신청서 심사절차

○ 심사기간 :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간연장 :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서면통지)

○ 최초 회의 : 제출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APA 신청 처리 계획 및 순서를 합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 국세청의 확인

- APA 관련정보 및 데이터 확인을 위해 납세자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청
- 납세자 관할 사업구역(사업소 포함)에서 확인을 위한 조사를 수행 (협의 또는 조사 내용은 과세당국 및 납세자가 기록)

○ 심사내용

-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검색, 평가 및 비교
- 기능, 자산, 위험 분석을 정보 및 증거 검색, 평가 및 수집



- 비교가능성 분석 정보 및 증거 검색, 평가 및 수집
 - 납세자의 사업 성격에 적합한 시장가격결정방식 검색 및 선정
 - 제3자로부터 수집한(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포함) 정보 및 데이터 검색, 확인 및 분석;
 - 중요한 추정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중요한 추정의 합리성 평가
- 쌍방, 다자간 APA 과세당국 정보제공(납세자 → 국세청)
 - 외국 과세당국이 납세자로 하여금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문서를 과세당국에 충분히 제공
 - 정보교환 자료통지(국세청 → 납세자)
 - 교환된 정보, APA 협의 및 체결 기간 동안 문서 및 증거로 사용된 정보(조세조약의 정보교환조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납세자로부터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

□ APA 협상 및 논의

- 협상 매체 : 전화, 온라인 동영상 또는 우편
- 일방 APA
 - 협상은 과세당국이 작성한 APA 초안위주
 - ※ APA 초안은 사전에 납세자에게 송부할 수 있음
-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
 - 외국 과세당국의 관할 공무원에게 과세당국의 대표자(The representative of the tax administration)는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APA 협상 내용 통지
 - 쌍방 APA 또는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할 공무원 및 과세당국에 의해 합의된 경우, 납세자는 과세당국 대표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한 문서나 설명을 제공



- 과세당국은 협상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간략하게 알릴 수 있으며 납세자로 하여금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정보, 데이터 또는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APA 승인 및 사용

- 협상이 종결된 APA 초안은 APA 최종안으로 체결
- 최종안에 포함되는 사항
 -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세금, 가격, 매출총이익률, 순이익률 산정을 위한 기초로서 정상가격 결정방식(적합한 경우 사분위수 범위 포함)
 - APA 시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추정
 - 납세자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규정
 - 과세당국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규정 - 시행시기
 - APA 관련 조세채무 이행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기타 규정
- 통지 주체 및 방식
 - 일방 APA : 승인에 대한 서면 통지문과 함께 과세당국이 최종본을 송부(납세자의 법률대리인은 APA 최종본에 서명 날인하고 과세당국에 이를 다시 송부)
 - 쌍방 APA, 다자간 APA : 외국과세당국과 합의한 최종본을 납세자에게 송부하고 납세자의 승인을 기재한 회신을 요청(과세당국 대표자와 납세자의 법률대리인은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에 서명 날인, 국세청은 쌍방 APA 및 다자간 APA를 발표)
 - APA 공식언어 : 베트남어(쌍방 APA, 다자간 APA 영문본사용가능)

□ APA 유형 선택

- 1차 선택 : 납세자 신청서 제출시 선택(일방, 쌍방, 다자간)
- 유형변경 : 신청서가 처리되는 중 유형변경가능
-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 외국 과세당국이 APA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베트남 과세당국과 외국 과세당국이 소정의 관례적인 협상 기간 이후 APA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 베트남 과세당국과 외국 과세당국의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 절차를 따르면서 납세자의 승인을 받아 일방 APA를 쌍방 또는 다자간 APA로 변경하기로 상호합의한 경우

□ 정상가격범위결정을 위한 자료 및 정보

- 베트남 과세당국 규정 자료
 - 감사 받은 재무제표;
 - 산업 관련 정보; 증권 시장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공시된 정보
 - 국가가 인정한 국가 기관, 리서치 기관, 협회 및 전문가 조직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거나 제공된 정보
 - 인가를 받은 정보 제공업체로부터 수령한 정보
 - 기타 공식적 자료
- 비교대상 선정시 우선순위
 - 1st) 국내 업체
 - 2nd) 유사한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현지 국가의 업체
 - 3rd) 아세안(ASEAN) 가입국에 있는 업체
 - 4th)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업체
 - 5th) 전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

< 벤치마킹 >

입증가능하고 신뢰성있는 베트남 국내업체의 공시자료는 많지 않음
Pan-asia, Asean 자료를 실무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독립적 전문가 참여

- “참고자료” 목적으로 독립적 전문가를 참여시킬수 있음
 - ※ 법적 구속력 없음
- 기밀 유지 : 협상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기밀유지의무준수

□ 신청서 철회 및 APA 협상 종결(승인전)

- 신청서 철회 및 종결(승인전) : 가능함
- 납세자 : 신청서 제출
- 국세청에서 협상 종결하는 경우
 - 해당 거래가 조세 관리에 관련된 행정상 위반으로 인해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해당 거래가 탈세, 조세회피, 또는 조세조약 남용을 위한 거래인 경우
 -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충분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전혀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납세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과세당국이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 협상을 종결하기로 상호합의한 경우
- 종결통보 : 납세자와 외국 과세당국에 APA 협상의 종결통지

□ 납세자의 APA 이행 의무

- 납세자 이행 책임
 - 협상, 승인 및 이행에 관련된 문서를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과세당국에게 제공
- 연례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매년(특수관계거래 신고서GCN-01/QLT와 함께 제출)
 - 연례보고서의 구성(3/APA-BC)

- 연례보고서 내용
 - 기능, 자산 및 위험 변경, 특수관계거래의 과세 표준으로 APA에서 명시된 방식을 이용한 가격, 매출총이익률, 순이익률산정
 - APA 준수에 관한 내용(중요한 추정의 업데이트 또는 변경)
 - APA에 따른 납세자의 세액 변경 내용 및 세액증감을 가져온 지표의 변경에 대한 내용
 - APA 조건 및 관련 사안(세금에 관한 새로운 사안, 관련 분쟁 등)을 유지·변경하는 데 관한 납세자의 의견
- 과세당국 요청에 따른 보고
 - 과세당국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고
- 비정기 보고
 - APA기간 중 APA의 지속이나 납세자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보고
 - 보고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이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지시(APA의 수정이나 종료등)
- 일방 APA가 시행 중 상호합의(MAP) 요청권리
 - 외국 과세당국의 결정에 의해 이중과세 또는 과세소득 변경이 발생되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권리
- 성실한 자료제공 책임
 - 납세자는 충분하고, 사실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출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과세당국의 의무 및 권리
 - APA 이행 감독 (APA의 재심사 목적 아님)
 - 서명된 APA의 규정(시장 가격의 결정 방식 포함) 준수



- APA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신고, 세금 납부 및 조정
- 납세자가 제출한 정기적 및 비정기적 보고 내용 검토 및 확인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조세관리법(Law on Tax administration) 제6조 제3항에 따라 APA의 절차 전반(문서 평가, 논의, 협상 및 APA 이행에 관한 모든 절차 포함)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비밀로 유지할 책임

□ 타(他) 목적 사용금지

-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 APA 연례보고서 및 비정기적 보고서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금 부과를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음

□ APA 승인에 따른 과세조정(수정신고, 경정청구)

- APA에 서명하기 전에 법인세 신고서를 기 제출한 경우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APA가 서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소득을 가격, 매출총이익률 및 순이익률로 조정하기 위해 추가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구 분	조 정
법인세액 증가	해당 세액 + 가장 낮은 율의 연체이자(payment interest)
법인세액 감소	해당세액 환급

○ APA외의 비용발생

- 해당 지출 발생일 후 30일 이내 서면 신고하고 과세당국의 의견이 있을 후 법인세 신고서를 변경

A사는 2013년 추가적인 지출로 순이익이 4.5%로 감소(APA 5%) 감소된 사유가 APA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일 경우, 0.5%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후 손금처리가능



- APA 승인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수관계거래
 - 정상가격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조세관리법 제34조(추가 세금 신고서)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조정하기 위해 APA상 과세소득산정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APA의 효과

-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구속력(승인내용 준수)
- APA는 최대 5년간 유효(Roll Forward)
- 효력발생시기 : APA 신청서 제출 시

□ APA의 연장

- APA : 5년 이하 기간연장
- APA 연장사유
 - 특수관계거래의 범위 및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 중요한 추정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사분위 범위 또는 매출총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연장 기간 동안 안정된 경우
- APA 연장절차
 - APA 만기일 최소 6개월 이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
 - APA 연장 신청은 APA 신청규정을 준용

□ APA의 수정(APA adjustment)

- 수정 : 납세자, 과세당국의 요청
- 수정 가능 사유
 - 중요한 추정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변경된 경우



- 법률 변경이 APA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외국 과세당국에서 APA 변경을 요청하고 동의한 경우
- 기타(APA 당사들이 합의하는 경우 등)

□ APA의 취소(APA cancellation)

- 취소 가능 사유
 - 납세자, 관련인이 APA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APA 신청서, APA 연례보고서, 비정기적 보고서의 중대한 실수
 - 연례보고서 또는 비정기적 보고서에서 충분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APA 수정(adjustment)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외국 과세당국이 APA 취소를 요청하고 동의한 경우
 - 타당한 사유로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 취소 내용 공개 : 취소 사유, 취소일
- 적용일 : 취소일로부터, 현재 규정에 따라 취소된 APA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납부

□ APA의 철회(APA Withdrawal)

- 철회 사유
 - 납세자가 APA 변경을 신고하거나 요청할 때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외국 과세당국이 APA 철회를 요청하고 동의한 경우
- 철회 내용 공개 : 철회 사유, 철회일(APA기간의 첫 날부터)
- 적용일 : 철회일로부터, 납세자는 철회된 APA 대상거래에 세금 납부



4 상호 합의(MAP)⁷⁾

□ 관련규정

-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적용지침서(Circular NO201/2013/TT-BTC) 제19조
- 베트남 조세조약 적용지침서 제7조 (Circular NO205/2013/TT-BTC, 2013.12.24)
- 한 - 베 조세조약 제25조(상호합의절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 상호합의 절차

- 상호합의개시신청서(4/APA/MAP) 제출
 - 쌍방, 다자간 APA 신청가능
- 상호합의 개시신청서 내용

- 1) 외국 납세자의 상호, 주소, TAX CODES
- 2) APA당사자간의 관계(조직도 포함)
- 3) 외국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외국 과세당국의 명칭, 주소
- 4) 쌍방 APA, 다자간 신청에 대한 설명
- 5)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요약설명
- 6) 외국과세당국이 회람한 관련 문서 (특수관계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등)

- 상대과세당국 관련절차
 - 상호합의 절차 및 공식 APA개시신청 후 30일 이내

7) 2018.12월 현재 상호합의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APA건수보다 적음



-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답변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 납세자에게 결과 통지
 - 납세자 상호합의 내용 이행
- 상호합의 신청기간 : 과세상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

□ 기타 베트남 MAP 관련사항

- 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고발된 경우 상호합의가능여부
- 베트남 조세조약 적용지침서 제7조 :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베트남 권한 있는 당국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
- MAP와 불복의 동시제기가능여부
- 양자간 선택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세조약 적용지침상 법원 계류중인 경우 베트남 당국이 조정할 수 없으므로 불복 또는 상호 합의 중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비교 (vs 韓) >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는 권한 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절차의 결과를 기속하게 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법적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음
→ 상호합의 중단 및 통보

- 징수유예 등 가능여부
- 상호합의에 이르는 중 모든 의무를 다해야하면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
- TP에 대한 본격적 과세가 최근 이루어져 상호합의 CASE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조세조약과 별도의 법령으로 상호합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전가격과세방법의 차이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제 2 장 외국인계약자 세제

1 관련규정 및 조세조약과의 관계



□ 관련규정

- Circular NO.103/2014/TT-BTC(2014.8.06)
 - 베트남에서 사업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 이전 시행규칙 Circular NO.60/2012/TT-BTC(2012.4.12)
- 베트남 내 외국인의 납세의무(법인세, 부가세 등)은 이미 있던 것으로 새로운 납세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

□ 한 - 베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와의 관계

- 이중과세 방지대상 조세(조약 제2조)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베트남 : 개인소득세, 이윤세, 이윤송금세
- 외국인계약세제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충돌하지 않음
 - 외국인계약세제 : 부가가치세, 매출에 대한 수입세



□ 고정사업장과 사업소득

- 한-베 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 이윤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계약체제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이중과세 미해소로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이 급증
- 고정사업장(한-베 조세조약 제5조)
 -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
 - (예시)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및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 채취장소
 - 건축장소, 건설 및 설치공사 : 6개월을 초과
 - 고정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장소
 -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재고보유
 -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을 목적으로만 재고보유
 - 단순 구입 및 정보의 수집 목적만을 위한 장소
 - 예비적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장소
 - 종속대리인 :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기업명의로 계약체결권을 상시하는 경우

□ 예규 및 판례

-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2018.2.06)



- 외국인계약자세 손금해당 여부(서면-2015-법령해석과-1413)
 -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해당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2016.4.28)

- 외국인계약자세 이월공제 대상 여부(조심-2018-구0319)
 - 내국법인의 베트남 원천소득이 결손이므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지 않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법문 및 공제산식으로 확인되므로 이월공제 대상이 아님

2 - 외국인계약자 세제 적용대상



□ 명칭 : FCWT(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 베트남에 현지법인 없이 계약 등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베트남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 적용 대상

- 외국계약자, 외국하청계약자와 베트남 법인, 개인과의 계약, 동의 또는 약속으로,
 - 고정사업장(또는 거주자) 해당 유무와 상관없이, 베트남 내에서 서비스 (such as installation, commissioning, warranty, maintenance, replacement and training or other services attached to the supply of goods)와 상품을 제공하는 외국 법인(또는 개인)



- 외국 법인(개인)과 베트남에 있는 기업간에 서명된 계약으로,
 - 베트남내에서 현지 수출입 형식에 따라 베트남에서 물품을 공급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법인(개인)
 - 베트남내에서 재화의 전달과 관련한 운송 부담을 지는 Incoterms 조건하에서 판매나 유통계약을 체결하는 외국법인(개인)
- ※ 외국 법인(개인)을 위해 임가공하고 재수출 하는 경우 제외

예시 1)

외국 기업 A가 베트남 기업 B로부터 직물을 구입(임가공)하는 계약에 서명하고, B가 베트남 기업 C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정한 경우
 → 기업 A는 A와 C사이에 계약을 기초로 베트남 발생수익 有
 A는 외국인계약세제의 적용대상이되며 C가 원천징수 납부

예시 2)

외국기업 A는 베트남기업B와 직물을 임가공(구매)하는 계약(원자재는 A가 공급)하고 기업 B가 기업 C에 임가공하도록 물품을 인도할 것을 지정한 경우 임가공종료후 기업 C는 Z에 물품을 재수출하고 기업 Z는 임가공료를 지불
 → 임가공재수출로 외국인계약세제 해당없음

- 베트남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법인(개인)으로 다음의 유통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
 - 유통/광고/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재화 및 용역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격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 베트남 하청회사를 고용하여 재화의 유통 및 용역의 일부분을 수행하게 하는 외국법인(개인)
- 베트남 내에서 수입활동 또는 수출활동 및 유통에 개입하는 외국법인(개인)

□ 비적용 대상

- 투자법, 석유가스법, 각 신용기관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외국 법인, 개인.
-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베트남 내 수행 서비스가 없이 베트남 법인, 개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외국 법인, 개인
 - **외국 국경 관문에서의 물품 인도** (판매자 : 외국 국경관문에서의 물품 수출과 물품인도와 관련된 모든 책임, 비용, 위험을 부담, 구매자 : 외국 국경관문에서부터 베트남으로 되돌아 오기까지 물품 수령, 물품 운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 비용, 위험을 부담)
 - **베트남 내 국경관문에서의 물품 인도** (판매자 : 베트남내 국경관문에서의 물품 인도장소까지의 물품관련 모든 책임, 비용, 위험을 부담, 구매자 : 베트남내 국경관문으로부터 물품 수령, 물품 운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 비용, 위험을 부담)
- 베트남 영역 밖에서 공급되고 소비되는 서비스

홍콩기업 H 는 홍콩항에서 베트남기업 V의 국제운송선단을 위해 물품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V는 H에게 물품정리비용 지급
→ 홍콩에서 발생되고 지급된 용역으로 FCWT 해당없음

- 베트남 법인, 개인을 위해 외국에서 수행되는 아래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 법인(개인)
 - 이동수단(공기, 항공기 엔진, 항공기 부품, 선박), 기계, 설비(해저 케이블, 전송설비)의 수리(Repair)
 - 광고, 마케팅(인터넷상의 광고, 마케팅은 제외)

베트남기업이 싱가포르시장에서 상품광고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싱가포르 법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 싱가포르 법인의 광고서비스는 FCWT의 대상이 되지 않음 (외국수행용역)
단, 인터넷으로 베트남시장에서 소비할 상품광고를 실행하는 경우 FCWT해당됨



- 투자 및 무역 촉진
- 중개 : 외국에서의 물품 판매, 서비스 공급

베트남기업이 태국 또는 세계시장에서 베트남 기업의 상품판매를 위하여 태국 기업과 중개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 FCWT 해당안됨

베트남기업이 베트남 기업부동산을 중개하도록 용역계약체결?
 → FCWT 해당됨, 국내에서의 서비스공급으로 봄

○ 교육훈련(온라인 교육훈련을 제외)

국외에 가서 국외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FCWT해당안됨
 단, 온라인학습의 형식으로 베트남에서 베트남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FCWT해당

- 베트남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베트남과 외국간의 국제 우편, 통신 서비스의 분할 요금

○ 보세창고 및 ICD(Inland Container Depot)에 재화를 국제운송, 화물수송, 환적 및 베트남업체의 재가공 후 수출 목적으로 보관

<용어>

- 1) 베트남 영토
 - 육지영토, 해도, 내수면, 영해 및 그 상공, 영해 밖 해역을 포함하고 베트남 법률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재판권을 행사하는 해저, 해저토양을 포함
- 2) 계약자 계약 “Contractor Contact”
 - 외국계약자와 베트남 측 당사자간의 계약, 동의, 약속
- 3) 하청계약자 계약 “Contractor Contact”
 - 하청계약자와 외국계약자간의 계약, 동의, 약속으로 하청계약자는 외국 하청계약자와 베트남 하청계약자를 포함

□ 납세의무자

-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
 - 기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고정사업장, 거주자에 대하여 달리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협정의 규정에 따름

< 주의사항 >

한-베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계약자 계약 또는 하청계약자 계약을 기초로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불한 자
 - 기업법, 국영기업법, 외국인투자법 및 합작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정치, 정치-사회, 사회, 사회-직능 단체 등 기타 경제단체
 - 석유가스법에 따라 운영하는 석유가스 계약자
 - 베트남에서 활동 허가된 외국회사 지점
 - 외국법인 또는 베트남에서 활동 허가된 외국법인의 대표
 - 직접, 또는 협력 방식으로 베트남 출발, 도착 운송권이 있는 항공사의 베트남 내 대표 사무소, 대리점
 - 외국해운사의 해운서비스운영 법인(개인)의 외국 포워딩·창고 회사, 운송사의 베트남 내 대리점
 - 증권투자펀드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투자계좌를 개설한 증권사, 증권 발행회사, 펀드 관리회사, 은행
 - 베트남에 소재하는 기타 법인 및 개인
- 원천징수 의무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함

□ 적용 세목 :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 베트남에서의 생산, 사업,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속하는 물품관련 서비스
 - 베트남 내에서 공급되고 베트남에서 소비
 - 베트남 외에서 공급되고 베트남에서 소비
- 물품인도 장소가 베트남 영토 내 일 것
- 설치, 시운전, 보증수리, 유지관리, 교체, 기타 물품공급관련 서비스 등과 같이 베트남 수반되는 물품 및 서비스
 -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 서비스가격 : FCWT로 납부
- 물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금액을 분리할 수 없는 계약(서비스 비용 면제 포함) : 계약 전체 일괄 계산

베트남기업 V는 외국기업 K와 시멘트공장용 기계설비 라인구매를 위한 계약에 서명(부가가치세 10% 해당설비)
 총 계약금액은 \$100백만(\$80백만 기계설비, 나머지는 설치안내, 설비감리, 보증수리, 유지관리 대금)
 1) 기계설비라인 수입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2) 서비스금액 \$20백만에 대하여 FCWT 추가 산출
 3) 설비와 서비스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전액에 대하여 FCWT 산출, 중복과세

< 주의사항 >

- 1) 물품과 서비스의 금액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물품과 서비스를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일괄계산됨
 따라서, 일반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분리하여 계약하는 것이 유리
- 2) 온라인 수행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음
 동일한 용역이라도 수행매체에 따라 FCWT적용이 달라질수 있음

□ 법인세(기업소득세) 납부대상

- 베트남에서 서비스, 물품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의 수익
- 다음 형식으로 공급되는 물품 및 서비스금액
 - 물품공급장소 : 베트남 영토
 - 또는 설치, 시운전, 보증수리, 유지관리, 교체 등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에 수반되는 물품

베트남기업 V는 외국기업 K와 시멘트공장용 기계설비 라인구매를 위한 계약에 서명

총 계약금액은 \$ 100백만(\$80백만 기계설비, 나머지는 설치안내, 설비감리, 보증수리, 유지관리 대금)

- 1) 기계와 서비스금액을 나누어 별도로 산출
- 2) 설비와 서비스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전액에 대하여 FCWT 산출

-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에 의해 베트남 내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 활동 장소와 무관하게 발생한 모든 수익(아래 예시)
 - 소유권, 재산사용권 양도 수익
 - 사용권, 지적소유권 이전 및 기술 이전(형식 불문)
 - 자산의 양도 및 정리(liquidating) 수익
 - 대출금 이자 수익 : 모든 수수료금액 포함
 - 증권 양도 수익
 - 계약위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벌금, 보상금
 -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수익



3 - 외국인계약자세제 산출방법

□ 베트남회계시스템(VAS)를 적용하는 경우

○ 의의

- 베트남회계시스템을 적용해 회계 처리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가 일반 외국인 투자법인처럼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확정해서 신고·납부하는 방법

○ 요건(3가지 모두 만족)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베트남 거주자
-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 계약에 따른 베트남 내 사업기간이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 계약이 효력이 있는 날을 포함하는 날로부터 183일 이상
- 베트남 회계제도(VAS) 적용

○ 신고대상 세액 : 법인세, 부가가치세

○ 산출세액 구조 : 외국인계약세 = VAT payable + CIT payable

- ▶ 부가가치세 = Output VAT - Input VAT : 세액공제법
- ▶ 법인세 = 20% x taxable income

○ 특징

- 베트남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현장만 개설해 건설공사 수행후 철수하는 경우를 예로 들 때, 이 방법은 시공사가 tax code를 부여받은 후 VAS (Vietnam Accounting System)에 따라 베트남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장부를 기장해 법인세를 계산하고(당기순이익의 25%), 부가가치세 또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를 납부하는 방법임(부가가치세율은 각각 10% 적용)
-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는데 비해, 관리 비용은 일반 법인처럼 발생하고, 또한 향후 세무조사시 장부상의 비용에 대한 인정 범위를 두고 세무서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별로 이용되지 않음



□ 베트남회계시스템(VAS)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고정비율에 의한 방법)

- 베트남의 발주처가 외국인 계약자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관련 세금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 세율에 의해 원천 징수해, 베트남 거래처가 과세 관청에 납부해야 함. 한편, 이 방법의 경우는 외국인계약자의 매입부가가치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신고대상 세액 : 법인세, 부가가치세
- 산출세액 구조
 - 외국인계약세 = VAT payable + CIT payable
 - ▶ 부가가치세 = 추정부가가치(% added value on turnover) x 부가가치세율 : 직접공제법
 - ▶ 법인세 = 매출액 x 추정법인세율
- 특징
 - 시공사가 별도로 베트남에 TAX CODE를 부여받지 않고 발주처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방식
 - 시공사 입장에서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방법에 비하여 납부금액이 많은 단점이 있음

* 통상 총계약금액에서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징수

1) 부가가치세

- 계산 방법
 - 납부할 부가가치세 : VAT계산대상 매출액 × 부가가치세율
 - VAT계산대상 매출액 = VAT불포함 매출액 / (1- 부가가치세율)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 V에 시멘트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총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불포함(법인세포함) 300,000USD(그 외 베트남 V는 A의 관리직원을 위한 숙소와 사무실을 제공하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불포함 40,000USD)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 $(300,000 + 40,000) / (1-5\%) = 357,894\text{USD}$



- 재하청 계약을 하는 경우 : 하청계약자 부분은 불포함하고 계약 수행을 위한 물품, 서비스 금액은 외국계약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결정시 제외되지 않음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 V에 시멘트공장을 건설계약을 체결
 총 가격은 10백만 USD, 계약에 따라 베트남 하청계약자 C 에게 1백만 USD의
 금액을 재하청(A : 설치이행 원재료 등 각종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외국계약자 A 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10백만 - 1백만 = 9백만 USD
 (설치 이행 등 물품 및 서비스 금액은 제외하지 않음)

- 하청계약자가 고정비율 방법에 따라 세액을 납부 이행하는 외국 하청 계약자 : 베트남측 당사자로부터 매출액 전부(외국하청계약분 제외)
- 차량, 기계, 장비 대여 : 매출액 전부(단, 보험료, 유지비, 등록비, 운영자 비용과 베트남으로의 선적비는 서류로 제시된 경우에 제외함)
-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 가는 국제 물류(포워딩), 창고 서비스(지급자 불문) : 매출액 전부
 - ※ 운송사 지급 국제운송비용 불포함
-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 가는 국제운송 서비스(지급자 불문) : 매출액 전부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운송서비스 :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아님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의 운송서비스 :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 부가가치 세율(%)

사업분야	부가가치세율
서비스, 기계설비대여, 보험; 건설작업(원재료, 기계, 설비 제외)	5
제조, 운송, 물건 포함 서비스; 건설작업에 동반되는 원재료 또는 기계, 설비가 포함되는 건설, 설치	3
기타사업	2

- 두가지 이상이 통합된 거래 : 사업활동 별 부가가치세 계산 단, 가액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최고 부가가치세율 적용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 V와 75백만USD의 발전소 건설계약체결

- 기계, 설비 공급 : 50백만
- 기술라인 설계, 기타설계 : 5백만
- 공장건물 건설 및 설치 : 15백만
- 감리, 설치 서비스 : 3백만
- 기술 훈련, 시운전 : 2백만

- 1) 전체 75백만USD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 적용함
 - 건설작업에 동반되는 원재료 또는 기계, 설비가 포함되는 건설, 설치
- 2) 하청계약자에게 원재료 계약을 포함하는 일부 작업수행 계약체결
 - A는 서비스 기능만 수행한다면 서비스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 적용

-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에 기계·장비를 공급계약 포함된 경우 : 기계·장비와 서비스 가격이 구분 불가능한 경우 3%의 부가가치세율 적용

베트남 회계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한국의 외국계약자 H는 1,000,000USD에 설치, 운전, 시운전 서비스가 수반되는 기계라인, 설비공급 계약을 베트남 기업 B와 체결

- 기계설비 가격 및 설치 시운전 서비스 가격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적용 부가가치세율은 3%

- 석유 탐사 및 시추, 개발 및 생산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계약자와 외국하청계약자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 공제방법의 세가지 요건 불충족시 : 베트남 기업(개인)은 지급전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부가가치세 미포함 총 지급금액 × VAT Rate)
 - 공제방법의 세가지 요건 충족시 : 베트남 기업(개인)이 지급한 후 세무서 등록 및 공제방법에 의해 세금신고한 경우는 지급전 원천징수 함(외국 계약자, 외국하청계약자는 납세자등록증 발급 전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없음)



2) 법인세(기업소득세)

○ 계산 방법

납부할 기업소득세 :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적용 기업소득세율

-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령한 부가가치세 불포함 매출액 전부 (베트남 측 계약자가 지급한 각종 비용을 포함)

○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사례

- 기업소득세 불포함 수령하는 경우

※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기업소득세 불포함 매출액 / 1-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 V에 시멘트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총괄감리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불포함

285,000USD(그 외 베트남 V는 A의 관리직원을 위한 숙소와 사무실을 제공하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불포함 38,000USD)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285,000+38,000) / (1-5\%) = 340,000\text{USD}$

- 재하청 계약을 하는 경우 : 하청계약자 부분은 불포함하고 계약 수행을 위한 물품, 서비스 금액은 외국계약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결정시 제외되지 않음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 V에 시멘트공장을 건설계약을 체결

총 가격은 10백만 USD, 계약에 따라 베트남 하청계약자 C 에게 1백만 USD의 금액을 재하청

(A : 설치이행 원재료 등 각종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외국계약자 A 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900백만USD

- 외국계약자와 계약한 외국재하청업자가 직접법 사용시 : 베트남 기업(개인)은 외국계약자와 외국재하청업자를 대신하여 기업소득세 납부
- 기계, 설비, 운송수단 임차 : 임차료 전부(보험, 유지관리, 등록 비용, 운송수단 운전자, 기계 등 지불 비용, 기계설비 운송비용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에 따라 제외가능

- 외국항공사 기업소득세 매출대상 : 운항, 부대사업으로 수입전부(국가 수입제외)

외국항공사 A의 발생 수입액 100,000USD
 여행자 티켓발권 85,000USD, 항공화물 운송장 판매 10,000USD
 공항이용료 1,000USD, 티켓환불금 2,000USD
 기업소득세 계산매출액 : $100,000 - 1,000 - 2,000 = 97,000$

- 외국해운사 기업소득세 매출대상 : 여객운송, 물품운송운임, 기타 부수입 (중간항 환적처리비용 포함), 베트남 내 처리항간의 이동 운임
 ※ 운송운임 : 기업소득세가 이미 계산된 운임, 베트남 해운사업자에게 지불한 운임은 불포함

기업A는 외국 해운사 X의 대리점으로 해운대리점 계약에 따라 X사의 외국 항 운송화물을 접수, 선하증권을 발권, 화물운임을 징수함
 베트남 기업B는 A를 통해 해운사 X를 이용 화물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운송하며 운임은 100,000USD
 A는 베트남 기업 선박 또는 외국선박을 임차하여 화물을 싱가포르 운송하였으며 그 운임은 20,000USD
 싱가포르에서 미국까지는 X의 선박으로 운송될 것임
 → 기업소득세 납부대상 매출액 : $100,000 - 20,000 = 80,000$

-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 가는 국제 물류(포워딩), 창고 서비스(지급자 불문) : 매출액 전부
 ※ 운송사 지급 국제운송비용 불포함

-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 가는 국제운송 서비스(지급자 불문) : 매출액 전부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운송서비스 :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아님
 베트남으로부터 외국으로의 운송서비스 :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 재보험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외국으로의 재보험 가입 : 외국계약자가 수령하는 외국 재보험 가입 비용(재보험 커미션, 리베이트 포함)
 - 외국으로부터의 재보험 인수 활동 : 외국계약자가 수령한 재보험 가입 수수료 금액.



- 증권 양도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증권 양도, 채권(면세대상 채권 제외), 예탁증서 등 : 양도시점에서의 증권, 채권, 예탁증서의 총매출액

- 이자율 스왑거래(Interest Swap Transaction)

은행 A는 10백만 USD금액을 대출하였고, 이자율은 고정금리 월 5.2%, 계약 기간은 2012.2.1~2015.2.1(3년), 지급기한은 만기납기간 시작일에 지급 A는 대출계약을 근거로, 외국은행 B와 이자스왑계약추진

- 계약기간 : 2012.2.1~2015.2.1(3년), 만기납, 시작일지급

- (SWAP) A가 B에게 지급할 변동이자율 Libor+0.25%
B는 A에게 5.2% 고정금리

기간	리보	적용이율		SWAP이율		금액(th usd)	
		A이율	B이율	A	B	A	B
'12.2~'12.7	4.8	5.05	5.2		0.15		15
'12.8~'13.1	5.0	5.25		0.05		5	
'13.1~'13.7	4.9	5.15			0.05		5
'13.8~'14.1	4.95	5.20		-	-	-	-
'14.1~'14.7	4.9	5.15			0.05		5
'14.8~'15.1	5.05	5.30		0.10		10	

→ B의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2012년(B가 수령하는 총금액) = 15-5 = 10th usd
 2013년 : 5-0 = 5th usd
 2014년 : 없음(A에게 5th usd지급해야함)
 2015년 기초에 지급한다는 계약에 따라 상계지급 미발생

- 투자자 보유 국채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소득세 대상 매출액은 만기일에 결정
 $CIT\text{대상매출액} = (\text{국채 액면가} - \text{만기일 보유 국채의 취득가의 가중평균}) \times \text{만기일 보유 국채의 수량}$

(1단계) 만기일 보유 국채량 결정

(2단계) 선입선출법으로 만기일 보유 국채량, 취득시기, 취득가 결정

(3단계) 가중평균에 의한 취득가 계산



2015.1.01액면가 VND100,000, 6개월만기 국채발행(발행가 : 1국채당 VND89,000)

- 2015.1.02~ 2015.7.01 동안 투자자 A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

거래일	취득/판매	거래량	가격
2015.1.02	취득	100	90,000
2015.2.01	취득	100	92,000
2015.3.01	판매	70	93,000
2015.4.01	취득	40	94,000
2015.5.01	판매	20	95,000

(1단계) 만기일 보유 국채량 결정 : $(100+100+40) - (70+20) = 150$

(2단계) 선입선출법으로 판매량 차감 후 만기일 보유 국채량, 취득일, 취득가 결정

2015.1.02 #10, VND 90,000

2015.2.01 #100, VND 92,000

2015.4.02 #40, VND 94,000

(3단계) 가중평균 취득가 계산 : $[(40 \times 94,000 + 100 \times 92,000 + 10 \times 90,000) / 150]$
 $= 92,400(\text{VND})$

국채로부터 CIT 계산대상 매출액 : $(100,000 - 92,000) \times 150$
 $= 1,140,000(\text{VND})$

○ 업종별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사 업 분 야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계산비율
무역 : 베트남에서의 서비스관련배송, 물품·원료·물자·기계·설비 공급 - 현지 수출입형식 모든 물품(임가공 제외) - DDP, DAP, DAT 인도조건 공급물품	1
서비스, 기계설비 리스, 보험, 시추선 리스	5
식당, 호텔, 카지노 등 관리서비스	10
선박, 항공기, 선박·항공기엔진, 부품의 리스	2
건설, 설치(원재료, 기계설비계약 포함여부상관없음)	2
제조, 기타사업, 운송(해운,항공)포함	2
외국으로의 증권, 재보험양도, 재보험 가입수수료	0.1
파생금융 서비스	2
대출이자	5
판권(Copyright)	10



- 두가지 이상이 통합된 거래 : 사업활동 별 기업소득세 계산 단, 가액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최고율 적용

□ 혼합법(공제방법 부가가치세 + 매출액비례 기업소득세)

○ 요건

- 공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중,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거주자), 183일 이상 조건 등 2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베트남 회계방식이 아닌 자을 회계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 위 두 가지를 혼합해 적용하는 방법. 즉, 법인세는 두번째의 방법에 의해, 부가세는 첫 번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 신고대상 세액 : 법인세, 부가가치세

○ 산출세액 구조

- 외국인계약세 = VAT payable + CIT payable
 - ▶ 부가가치세 =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 : 세액공제법
 - ▶ 법인세 = (총도금액- Local 외주계약분) × 2%

○ 특징

- 시공사가 tax code를 부여받고 세금신고 및 납부의 주체가 된다는 점 및 부가세 납부방식(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에 있어서 첫 번째 방식과 비슷하나, 첫 번째 방식처럼 모든 장부기장을 할 필요가 없이 법인세 계산방법은 두 번째 방식의 경우를 따르는 것임(계약금액의 2%).
- 두번째 방식에 비해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베트남 내의 하도급 비율이 큰 경우 절세효과가 크며, 첫번째 방법과는 달리 비용인정과 관련한 세무서와의 마찰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이용하고 있는 방법임

○ 절차 : 과세당국에 혼합법 적용신고 선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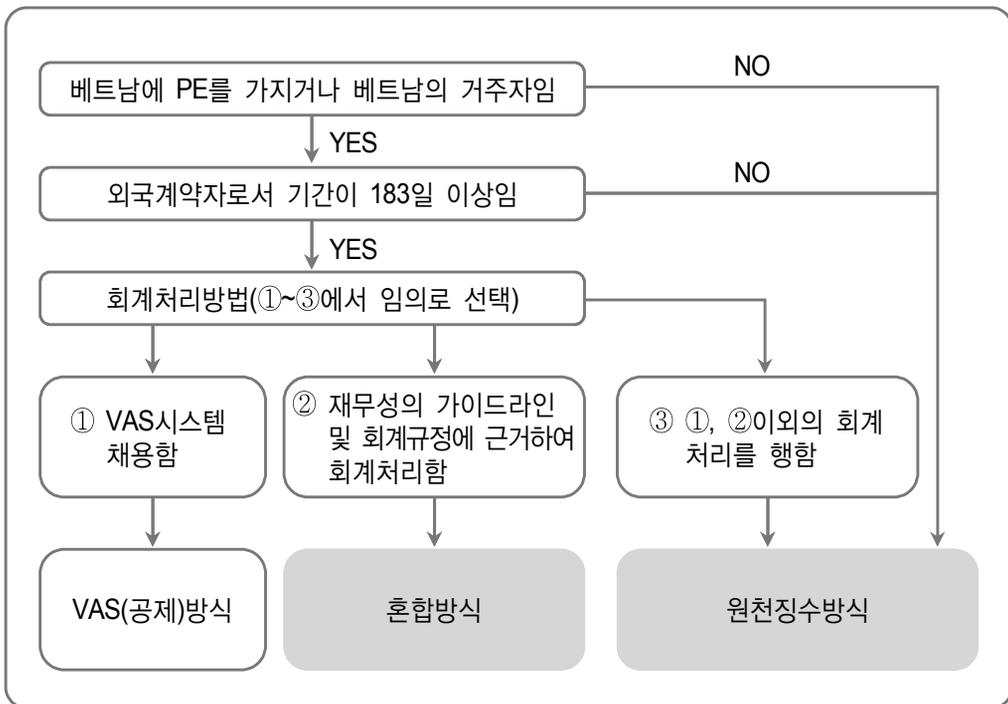


- 계약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외국인계약자와 계약하는 베트남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서면통지(Circular No.244에 따라 Hybrid방식으로 신고 하겠다는 내용)해야 함
- 연말 F/S(I/S제외) 및 관련 주석을 관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매년 제출 (세무서에 따라 Circular No.244에 따라 현금주의 F/S에 대해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종료신고, 세무조사 후 청산가능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는 공제법, 기업소득세는 고정비율법

< 혼합법 >
 베트남 회계원칙(VAS)를 따르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방법으로 신고 가능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RISK는 증가함

□ 외국인계약자세의 납세의무자와 신고납세의 방법





□ 납부방법 비교

구 분	VAS방법	원천징수방법	VAS 방법
요 건	고정사업장 존재 183일 이상 계약 VAS	VAS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존재 183일 이상 계약 현금주의 회계
납부방법	법인세 : 순이익의 25% 부가세 : 세액공제방법	법인세 : 거래액의 일정 비율 부가세 : 상동	법인세 : 거래액의 일정 비율 부가세 : 세액공제방법
비 고	회계시스템과 전표의 등록 및 유지로 인해 납세협력 비용이 큼, 현지세무서의 세무조사 가능성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 비교적 낮은 세율, 납부의 간편성
납세의무자	외국계약자	베트남 국내기업 (원천징수의무자)	외국계약자
납세등록 코드 및 등록의무자 및 수속	외국계약자	베트남 국내기업	베트남 국내기업 또는 외국계약자
납세코드는 사업등기소 또는 설립허가서, 투자허가서의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VAT)			
	매월신고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발생시 : 발생후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계약만료시 : 계약 만료 후 45일 이내에 신고·납부	매월신고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세(CIT)			
신고 및 납세기한	(분기별신고) 각 4분기말의 다음달 30일 까지 신고·납부 (연차신고) 연도말종료후 90일 이내에 신고·납부 (계약만료시) 계약종료후 45일 이내에 신고·납부	발생시 : 발생후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계약만료시 : 계약 만료 후 45일 이내에 신고·납부	발생시마다 발생후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계약종료시 : 계약 만료 후 45일 이내에 신고·납부
세 율	VAT : 0%, 5%, 10% CIT : 표준세율 25%	VAT : 업종별 간주 부가율 CIT : 업종별 간주부가율	VAT : 0%, 5%, 10% CIT : 업종별 부가율



4 - 외국인계약자세제 유의사항

□ 조세조약 반영 신청

○ 사전적 조치사항(18조, Circular No.28)

- 신청기한 : 외국인계약자세 신고기한⁸⁾ 전 15일 전까지
- 제출서류 : 비과세면제신청서, 거주자증명서(영사관인증), 외국인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계약서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처리기한 : 평균 2주내외 소요(경우에 따라 장기간소요)

< 주의 >

계약서명일에 기준하여 제출하여야하나 대금지급시점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베트남 과세당국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조세조약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P.E를 구성하지 않는우리나라 기업은 반드시 계약 후 즉시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사후구제 절차(47조, Circular No.28)

- 신청기한 :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건
- 제출서류 : 환급신청서, 사전면제신청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청인 : 직접할수 있으나 실무상 베트남 거래처에 위임
- 처리기한 :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

□ 계약내용의 분리

○ 계약내용의 분리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가 있음

-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법인에 기계, 장비를 공급하면서 설치, 감독 등 용역을 함께제공하고 대금을 합하여 받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사례

8) 계약서명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 계약내용 분리에 따른 세율 차이

건설업의 베트남 진출(계약)방법에 따른 세율차이(예시)

1) 세분화

공급형태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건설	5	2	7
자문	5	5	10
건설감리	5	5	10
원재료, 장비기계	-	1	1

2) 원재료 공급 구분

공급형태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건설(자문, 건설감리 포함)	5	2	7
원재료, 장비기계	-	1	1

3) 통합

공급형태	부가세율(%)	법인세율(%)	합계(%)
건설(자문, 건설감리, 원재료, 장비기계 포함)	3	2	5

※ 각 대금을 적용하여 총 세액을 먼저 산출해 보아야 함
관련 계약서와 증빙 철저 보관(구분 근거)

□ 신고, 납부방법 변경

○ 하나의 계약에 대하여 일단 채택 신고 된 방법 변경불가

- 계약 종료시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
-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계약을 수정, 갱신하는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경우 : 당초 방법에 따라 계속 납부

○ 종료후 새로 계약 : 신고, 납부방법 변경가능

- 신 계약에 대하여 3가지 중 하나를 선택가능



- 한 기업이 다수의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 통일
 - 하나의 계약에 대하여 공제신고방법, 혼합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등록하였다면 기타 여러 계약도 이에 따라 방법을 통일 하여야 함
- 유전, 가스전 탐사, 시추, 개발 및 채취 활동 추진을 위한 물품, 서비스를 공급
 - 등록증 발급 전 : 베트남 측 당사자가 원천징수
 - 등록증 발급 후 :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 납세자등록증을 발급 전 발생 매입 부가가치세 : 공제불가능

□ 베트남 국세청 주요 질의응답

- 하자보등기간과 내용을 포함한 경우(OL3342)
 - 하자보등금액은 총계약금액과 분리할 수 없다고 여겨지나, 외국에서 하자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인계약세제법리에 따라 면제됨
- 로열티가 포함된 기계장치(OL3748)
 - 기계장치를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포함하여 구매되었다면 소프트웨어 금액에 대하여 로열티로 10%로 원천징수해야함

□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 신고절차 복잡
 - 베트남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매월 또는 매번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움
 - 현재 기업들은 매월 20일 전월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합계를 공제한 부분을 산출세액으로 납부하고 있고, 수출업체의 경우 매입세액이 더 많아 환급을 받아야 하나, 이 경우 추가제출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사실상 환급이 어려움



- 법보다는 자의적인 공무원의 판단이 우선
 - 정상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세법보다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법인세는 손실 발생해도 납부세액 발생
 - 법인세는 소득이 아니라 수익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서 손실이 발생해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 있음

5 - 외국인계약자세제 관련 사례 -

- <사례1> (현지 수출입) 외국에 있는 기업 X는 베트남 기업 A로부터 직물을 구입하는 계약에 서명하고, 동시에 기업 A로 하여금 베트남 기업 B에 현지 수출입 형식으로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정하였다면 외국계약자세 납부대상이 되는가?
 - ☞ 기업 X는 기업 B 사이에 서명된 계약을 기초로 직물을 판매하여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 따라서, 기업 X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고, 기업 B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업 X를 대신하여 신고, 공제 및 납세의 책임이 있음.
- <사례2> (현지 수출입) 외국에 있는 기업 Y는 베트남 기업 C와 직물을 임가공 하는 계약에 서명하고, 동시에 기업 C로 하여금 베트남 기업 D에 현지 수출입 형식으로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정하였다면 외국계약자세 납부대상이 되는가?
 - ☞ 기업 Y는 기업 D 사이에 서명된 계약을 기초로 물품을 판매하여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 따라서, 기업 Y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고, 기업 D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업 Y를 대신하여 신고, 공제 및 납세의 책임이 있음.

□ <사례3> (임가공 수출입) 외국에 있는 기업 Z는 베트남 기업 E와 직물을 임가공 또는 구매 하는 계약(기업 Z는 기업 E가 임가공할 수 있도록 원자재를 공급한다)에 서명하고, 기업 E로 하여금 베트남 기업 G가 계속 임가공 할 수 있도록 그에 현지 수출입 형식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지정하였다. 임가공 종료된 후, 기업 G는 임가공 계약에 따라 기업 Z에 물품을 재수출 하고, 기업 Z는 임가공료를 지급하였다면 외국계약자세 납부대상이 되는가?

☞ 이 경우, 임가공 무역에 해당되어 기업 Z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외국계약자세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음.

□ <사례4> (베트남 역외 비즈니스) 홍콩 기업 H는 홍콩 항에서 베트남 기업 A의 국제운송 선단을 위해 물품 정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A는 기업 H에 홍콩항에서의 물품 정리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외국 계약자세 납부대상이 되는가?

☞ 이 Case의 경우, 홍콩 항에서의 물품 정리 서비스는 홍콩에서 공급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이므로 베트남에서 세를 부담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음.

□ <사례5> (베트남 역외 비즈니스) 외국 법인이 베트남 기업 A를 위해 기업 A가 GDR(글로벌 예탁증서) 및 국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서 관련 전문서비스, 채권 관리 및 발행, 법률자문, 예탁 대리, 로드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외국계약자세 납부대상이 되는가?

☞ 이 경우, 외국 법인에 의한 이 서비스는 베트남 역외 비즈니스 이므로 이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음



제 3 장 세목별 조세제도⁹⁾

1 법인세

□ 납세의무자

-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또는 없는 외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외국기업)
 - ▶ 고정사업장은 다음과 같음
 - 지점, 관리사무소, 공장, 작업장, 운송수단, 유전, 가스전, 광산 또는 천연자원 개발장소
 - 건설, 건설공사, 설치, 조립장소
 - 서비스 공급장소(종업원, 기타 단체, 개인을 통한 자문서비스 포함)
 - 외국기업을 위한 대리점
 - 외국기업의 이름하에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대표 등
-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위, 소득 있는 생산, 판매활동을 하는 기타 단체

□ 사업년도

- 원칙 : 역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 변동욱 영사, “최신 베트남 세법”, 문커뮤니케이션(2015.6), 이정희계법인 Vietnam Taxation & Investment Guide(2017), 국세청,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2016 참고



- 예외 : 재무부장관의 승인시 별도 신고 가능

* 법인세 및 회계목적으로 예외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는 역년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가 이뤄져야 함

□ 과세소득의 계산

- 과세소득은 소득원천지를 불문하고 총매출에서 손금산입비용을 차감하고 기타수익을 가산하여 계산. 베트남에는 한국과 같은 세무조정절차 및 조정계산서제도가 없이 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비용을 가감하는 신고서만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세금계산의 근거 자료가 됨

① 기타 수익

- 상표권,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 소득
- 자산 양도소득(부동산 이외) : 유가증권 포함
- 수입이자, 수입수수료 등(지급이자 차감 후)
- 외환차익(외환차손 차감 후)
- 부채성 충당금 환입액
- 상각채권 추심이익
- 채무면제이익 / 채권자 불분명 채무
- 전기손익수정이익
- 계약 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액(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급액 차감)
- 자산 재평가 차액(현물출자, 합병, 분할 등)
- 기부, 증여로 인한 수입
- 공장 이전 보상금
- 수입 배당금
- 부산물, 불량품, 잡자재 매각(제조원가 차감 후)
- 기타 법령이 정하는 수입

② 손금산입비용

- 손금불산입비용을 제외하고는 a) 기업의 생산, 판매 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실제 비용으로서 b)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면 원칙적 손금산입



- 손금산입비용 예시
 - 도서관, 유치원, 스포츠 시설 및 이와 유사한 복리후생 목적의 건축물과 부속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 현물로 지급하는 종업원의 피복구입비(한도 없음), 현금 지급시 1인당 연간 5백만동 한도
 -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국내 및 해외 출장경비(일일 한도 폐지)
 - 종업원을 위한 생명보험, 기타 사회 보장성 기금 납입액(월간 손금 산입 한도 폐지)
 - 직접적 복리 후생적 비용(1인당 합계액이 연평균 1개월 급여 한도)
 - 광고비와 판매촉진비(2015년부터 한도 폐지)
 - 현금지급이 아닌 계좌이체 영수증과 같은 적절한 증빙을 갖춘 경우 해당 구입대가(매 건별 구입대가가 2천만동 이상인 경우)

③ 손금불산입 비용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 소유권 증명서류가 미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2009. 1. 1. 이후 등록된 차량 중 9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 원가가 16억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여행업 등 제외)
 -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원·부재료비
 - 표준원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부재료비
- 인건비
 -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또는 노동계약서/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및 노동법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
 - 개인기업/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에 대한 급여, 또는 BOM 멤버에 대한 보수 등



- 종업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복리후생비의 합계액 중 세법상 한도(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실제 연평균 1개월 급여)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 현금으로 지급 시 1인당 연간 5백만동을 초과하는 조업원 피복구입비
- 규정을 초과한 사회보험, 의료보험, 노조지원비
- 경비
 - 전기세, 수도세, 등의 청구서가 사업자가 아닌 건물 소유주 명의로 발행된 경우
- 금융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
 -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15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
 - EBITDA의 2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
 - 미납된 정관자본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
 - 규정을 초과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등 제 부채성 충당금 설정액
 - 적정한 규정에 맞지 않는 R&D 관련 충당금
 - 해외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배부된 본사의 간접비용 중 법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초과액
 - 기간 미도래 선급비용
 - 외화표시부채의 기말평가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이외의 외화환산손실
 - 비지정기부금
 - 벌과금 및 과태료, 지연납부 이자
 - 주식의 발행, 구입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비용
 - 환급 또는 공제신청이 가능한 매입부가세, 법인세, 원천징수한 개인소득세



□ 비과세 소득

- 협동조합의 농산, 축산, 수산 양식으로부터의 소득
- 농업에 직접 사용목적인 기술서비스로부터의 소득
-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계약수행, 시험생산 기간 중에 있는 생산품, 베트남에서 처음 적용되는 신기술로부터 제작된 생산품으로부터의 소득
- 장애인 마약경력자, (HIV/AIDS)감염자를 년평균 근로자수의 30%이상 또는 연평균 근로자 20인 이상 가진 기업의 물품, 서비스의 생산, 판매활동으로부터의 소득(금융, 부동산업 제외)
- 소수민족, 장애인, 특별 애로환경 어린이, 사회약 대상을 위해 유보된 기능 교육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국내기업과 자본납입, 합작, 연합 활동을 위해 분할되는 소득.
- 베트남 내의 교육, 과학연구, 문화, 예술, 자선, 인도적 활동 및 기타 사회 활동을 위해 수령한 지원금
- 탄소배출권 발급된 기업의 탄소배출권 인증서 양도로부터의 소득
- 베트남 개발은행의 개발투자금융, 수출금융 활동 가운데 국가위임업무 수행으로부터의 소득
- 사업자의 개발투자를 위해 교육훈련, 의료분야 및 기타 사회화 분야의 사회화 이행사업자의 비분리 소득
- 경제 사회 특별애로 지역 단체, 개인에 대한 우선 이전분야에 속하는 기술 이전으로 생기는 소득

□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

- 대상기업 : 베트남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 조 건 : 베트남 내에서 기술개발·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것

- 설정한도 : 법인세과세표준 10%한도
- 사용기간 : 설정연도 5년 이내에 설정금액의 70%이상 사용
- 별과규정 : 법인세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세로 납부함

□ 결손금 이월공제

- 공제기간 : 5년간 공제 허용
- 상계 : 경우에 따라 감면/면세혜택이 주어지는 영업활동과 주어지지 않는 영업활동의 손익을 서로 상계 가능. 부동산 및 프로젝트의 처분에 따른 손실도 다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 가능
- 연결납세신고나 동일기업그룹의 그룹 내 손실공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음
- 소급공제 : 허용되지 않음

□ 세율

- 법인세율은 투자규모, 지역 및 업종 등에 따라 일반세율, 우대세율 및 기타세율로 구분함

① 일반세율

- ▶ 세율 : 20%
- ▶ 적용 : 베트남국내법인, 우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투자법인, 우대세율 기간경과 후의 외국인 투자법인, 외국인투자법에 의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 중 베트남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② 우대세율

- ▶ 세율 : 10% 또는 17%
- ▶ 우대세율

③ 석유, 가스 산업

- ▶ 세율 : 32% ~ 50%(지역에 따라 다름)



④ 광물자원(금, 은, 보석) 탐광, 탐사 회사

- ▶ 세율 : 40% 또는 50%(지역에 따라 다름)

□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¹⁰⁾

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 적용기간 (우대기간 종료 후 20% 적용)	완전 면제기간	50% 감면기간
20% (표준 단일 세율)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법인	전 기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공단지역에 설립된 법인(Type 1 도시 지역 공단 제외)	전 기간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기간 종료 후 4년간
17%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신규프로젝트 사업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기간 종료 후 4년간
	고품질철강 생산 신규 프로젝트, 에너지절감 생산품투자 등			
15%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 등에 특정산업	전 기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지역 기준 시행령에 나열된 사회적으로 특히 낙후된 지역, 경제구역, 첨단경제 구역에 대한 투자 등 ○ 투자업종 기준 하이테크 연구 기술개발, 하이테크 기술개발기업 및 시설등의 건설 및 운영관련 투자 등 ○ 투자규모 기준 (특소세 부과대상 업종 또는 광물 채취업은 제외)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기간 종료 후 9년간

10) 이정회계법인, Vietnam Taxation & Investment Guide(2017)

법인세 율	대상	우대세율 적용기간 (우대기간 종료 후 20% 적용)	완전 면제기간	50% 감면기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동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이내에 10조동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동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이내에 상시 종업원 3천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 총 투자금액이 12조동 이상이고, 과학기술법에 의해 평가된 기술을 사용하고, 5년 이내에 등록된 투자금이 투자되는 경우 등 <p>○ 환경보호관련 업종 투자</p> <p>○ 우대소재산업 관련 투자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테크기술법에 의한 하이테크 소재 산업 · 섬유 및 봉제, 가죽제품, 신발, IT, 자동차부품 등으로 국내 미생산되는 산업소재의 생산 또는 국내 생산되는 제품이지만 EU나 그와 동등한 품질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소재의 생산 · 사회화 활동 관련 투자 : 교육, 직업훈련, 의료산업, 문화, 스포츠 등 · 출판법에 따른 출판 관련 업종 수익 · 신문법에 따른 신문 관련 업종 수익 · 주택법에 의한 서민주택의 판매, 임대, 재임대 관련 수익 등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기간 종료 후 9년간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외의 사회화 관련 투자는 면제기간 종료 후 5년간)



□ 신고 및 납부

- 가결산 : 투자기업은 매 분기별 가결산을 수행하여 산출된 분기별 법인세를 다음달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최종결산 : 회계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최종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함
- 지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
 - 원칙 : 한 곳에서 합산신고해야 함
 - 예외 : 제조기업은 각 지역에 있는 지점별 해당 지역세무 관서에 신고 가능

□ 이익의 송금

- 이익의 송금 : 회계연도말 또는 투자 종료시에 이익을 송금할 수 있음
 - 회사가 결손인 경우에는 송금할 수 없음
 - 세무서 통지일로부터 7일 이후에 송금 가능

2 부가가치세

□ 납세의무자

- 사업자 : VAT 과세대상 물품,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개인·단체
- 수입자 : VAT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개인·단체

□ 과세대상

- 생산, 판매 및 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서비스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 제외

□ 비과세 대상

- 미가공 농축수산물
- 종란, 종모, 종자, 씨앗, 정액, 배아
- 관개, 배수, 토지 경운, 농업생산 목적 내륙 운하, 수로 준설, 농업생산물 수확 서비스
- 천연소금
- 국가소유 주택
- 토지사용권의 양도
- 생명보험, 건강보험, 교육보험, 각종 농업보험, 설비용구보험, 재보험
- 금융서비스
- 의료서비스, 수의서비스
- 우편, 인터넷서비스
- 동물원, 식물원, 공원의 유지, 거리 녹화, 공공 조명 서비스, 장례서비스
- 국민 기부, 인도적 지원에 의한 문화예술 시설, 공공업무 시설, 인프라 및 사회정책 대상자의 주택에 대한 유지, 보수, 건설
- 법률 규정에 따른 교육서비스
-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 신문, 잡지, 참고서, 법률서적, 출판
- 버스, 전차에 의한 공공승객운송
- 과학연구, 기술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계, 설비, 부품, 물자로서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석유, 가스 유전 탐사, 시추, 개발 활동을 위한 기계, 설비, 부품, 전용 운송수단 및 물자로서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사업활동에 공하기 위하여 수입, 리스, 재리스하는 항공기, 시추선, 선박 등으로서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 국방, 안보업무 전용 무기, 탄약
- 인도적 원조, 무상원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물품
- 국경관문변경 베트남 영토국경통과 물품



- 기술이전법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 미가공 수입 금
- 미가공 개발자원, 광물인 수출물품
- 환자신체조직을 대신하기 위한 인조제품(의족 등)
- 연간 100백만동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계, 사업자의 물품, 서비스

□ 세율¹¹⁾

○ 영세율

- 수출재화 및 용역의 공급, 국제운송, 면제재화로서 수출에 공하는 것
- 용역의 공급(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외국의 회사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을 것
 - 외국의 회사가 베트남에서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 외국 회사와 직접 체결한 계약서가 있을 것
 - 서비스의 제공 및 소비가 해외에서 이루어 질 것
 - 대금의 결제가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 질 것(채권 채무 상계 등 예외 조항 있음)

○ 5% 세율

- 산업 및 생활용수, 비료; 비료 생산용 광석; 농약 및 동물용 성장촉진제
- 가축, 가금류, 기타 동물, 채굴, 경작용역, 농업용 수로, 도랑, 연못, 호수 등의 준설, 묘목, 농약살포, 농작물의 예비가공 및 보존
- 면세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제품
- 고무, 송진, 그물, 밧줄, 그물생산에 사용하는 직물 등
- 생식료품, 나무, 대나무가지 등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가공되지 아니한 목재제품
- 설탕류 ; 설탕줄기, 사탕수수 등 설탕제조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11) 이징회계법인, 베트남 회계 세무환경



- 마, 사초(잔디), 대나무, 줄기, 짚, 코코넛섬유, 코코넛껍질, 수생식물로 만들어진 제품, 농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수공예품, 면화, 인쇄용지
- 쟁기, 쇄토기, 파종기, 수확기계, 탈곡기, 살충분무기계 및 펌프 등 농경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장비
- 의료장비 및 기구; 의료위생면 및 밴드; 예방 및 치료약품류; 의약기기 및 의약품 생산기계 등
- 모형, 도면, 칠판, 분필, 자, 콤팩스 등 교육용기자재, 교육, 연구, 과학 실험용 기자재
- 문화활동, 전시, 체육 및 스포츠활동, 예술공연, 영화제작, 영화수입, 배급, 상영
- 아동용 게임, 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서적 종류
- 과학기술법에서 정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
-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사회주택의 판매, 임대, 리스구매

○ 10%

- 표준세율 : 면세, 0%, 5% 세율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

□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매입세액공제법

$$\text{산출세액} = \text{매출세액} - (\text{공제가능})\text{매입세액}$$

- 적용대상 : 국영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개인 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 연간 10억동 이상인 사업장
 - 규정에 맞게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기장을 하고,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사업장
 - 공제방식을 적용하기로 자진 신고한 특정 사업장



○ 직접법

$$\text{산출세액} = \text{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times \text{부가율}$$

- 적용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 연간 10억동 미만인 사업장
- 개인 및 가내사업자
- 적합한 장부기장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 및 해외기관이나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자형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 금, 은, 보석을 매매하는 사업장

- (이월공제 불가) 금, 은, 보석류의 무역업자가 결혼이 있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의 양(+)의 수입금액과 상쇄가 가능하나, 다음연도로는 이월해서 공제받지 못함

* 주의사항 : 위의 매입세액공제법과 직접법 중 어느 한 가지 계산방법을 채택하면 2년 연속 기 채택한 계산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함

□ 신고 및 납부

○ 신고 및 납부기한 : 다음달 20일

- 단 직전사업연도말 연간매출액이 VND 500억 미만이면 분기별로 신고 납부 가능(기한은 분기말의 다음달 30일)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공제 대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매입이 회사의 생산 활동 또는 영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이어야 함



○ 매입세액공제 요건

- 물품, 서비스를 매입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것
- 각 건당 2,000만동 미만 매입에 해당하는 물품, 서비스는 제외하고, 매입물품, 서비스에 대하여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것
- 수출물품, 서비스의 경우 위 조건 외에 물품판매, 임가공, 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외국측과 체결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결제한 영수증,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가지고 있을 것

□ 환급

○ 환급 일반

사업자는 당월/당분기에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익월/익분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특정한 경우(예를 들면, 3억동을 초과하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수출업자의 경우) 매월/매분기마다 환급신청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대상

- 수출기업의 경우 환급대상 금액이 3억동을 초과할 경우
- 3억동 이하인 경우 익월(또는 익분기)로 이월하여 환급
- 내수를 병행하고 있는 수출기업은 수출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환급. 단, 수출기업은 환급대상기간의 수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부인되며, 다음 기로 이월하여 관리
- 부가가치세를 공제법으로 신고하는 신규프로젝트 회사 중 영업개시 이전인 투자기간이면서 환급대상금액이 3억동을 초과하는 경우
- 투자기간에 발생한 투자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사용권, 건축, 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세로서, 동 투자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즉, 영업개시 이전)에 환급신청이 가능



- 청산, 파산, 기업 소유권 이전, 법인형태 전환, 법인간 합병, 사업부의 병합, 법인 분할, 사업부 분할 등에 해당되는 기업은 환급이 가능
 - 일부 ODA 프로젝트, 해외공관 등 외교 관련 면세대상인 경우로서 해외 소비 목적으로 베트남 내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
 - 환급이 가능한 기업을 제외한 기타의 기업은 매출부가세와 상계만 가능
 - 환급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부인됨
 - 재화를 수입한 후 추가가공 없이 바로 해외로 판매하는 증계무역 형태의 기업은 수출업체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Circular 99-2016)
- 세무서 E-Tax System 또는 메일 등에 의해서도 부가세 환급신청 가능
 - 선환급 후조사 적용이 가능 : 납세자가 최근연도에 세금이나 관세 위반이 없었던 경우, 1 영업일 이내에 검토하여 요구사항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검토
 - 선조사 후환급의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검토함
 - 신청서류가 시스템에서 승인된 경우 환급결정문은 선환급 후조사의 경우 6 영업일 이내에 발행, 선조사 후환급의 경우 40 영업일 이내에 발행함
 - 국가 자금부서 : 환급결정문이 발급된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
- 세금계산서의 사용 및 관리
- 베트남에 소재한 기업은 사전에 인쇄된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가 직접 인쇄한 세금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에는 필수항목이 누락없이 기재되어야 하고, 지역 과세당국에 등록되어야 함.
 - 수출 상품의 경우 상업송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시행령 119/2018/ND-DP¹²⁾

2018년 9월 18일에 공표된 시행령 119/2018/ND-CP은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모든 기업, 경제 단체 및 기타 단체는 세무당국의 코드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평균적으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전과세기간에 30억동 이상 매출이 발생하거나 또는 100억동 이상(무역 서비스업의 경우)의 매출이 발생하는 가내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함
- 전기, 석유, 우편 및 통신, 운송, 정수, 금융, 보험, 건강 관리, 전자 상거래, 슈퍼마켓 분야의 기업은 세무서 코드 없이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음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세무서 코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동 시행령에서 명시한 01 양식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한 이후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시점부터, 잔여 종이 세금계산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기해야 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로 전환하는 작업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 따라서, 시행령 51/2010 / ND-CP 및 시행령 04/2014 / ND-CP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여전히 유효
-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세관과 협력하여 세관서류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환급의 적절성을 검토 예정
- 조세탈루나 회피의 경우에 세무당국은 경찰에 해당건을 수사의뢰함

12) KOCHAM 베트남 전문가 칼럼(2018.11.22.), 이정희계법인 서우정회계사



3 소득세

□ 납세의무자 및 과세방법

- 베트남 영토 내외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 소득 있는 거주자와 과세대상 소득 있는 비거주자
- (거주자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 1역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한 자
 - 베트남에 상시 거소를 둔 경우로서, 상주 등록거소를 둔 경우 또는 기한부 임대차계약에 따라 베트남에 체재하기 위해 임차주택을 둔 경우
- 거주자에 대한 과세(내, 외국인 동일)
 - 전세계소득에 대해 모두 합산하여 베트남에서 과세
 -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조건표에 의해 누진과세
 - 분리과세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과세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베트남 원천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20% 단일 세율 적용
 - 분리과세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과세

□ 과세대상소득 및 세액계산 소득의 확정

- 사업소득
 - 물품, 서비스의 생산, 판매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 법률 규정에 따른 전문직 라이선스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독립적인 직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
 - 과세대상 사업소득은 매출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함



- 근로소득
 - 급여, 임금, 수당, 상여금 등 일체의 수령액을 모두 포함함
 - 회사가 직접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용 중 개인에게 귀속이 가능한 것은 모두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임
- 자본투자소득
 - 대출이자, 주식 배당금, 기타 각종 명목 하의 자본투자소득 등의 총액으로 정부발행 채권 이자소득은 제외함
 - 자본투자 소득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인, 개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시점 또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을 받은 시점임
- 자본양도 소득
 - 각 경제조직 내의 지분양도소득, 증권양도소득
 - 과세대상 소득 = 판매가격 - 구매가격 - 관련비용
 - 구매가격과 증권양도관련 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은 증권판매가격으로 확정됨
 - 자본양도 소득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자본양도 거래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완성되는 시점임
- 부동산양도 소득
 - 과세대상 소득 = 부동산 양도가격 - 구매가격 - 관련 제반비용
 -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소득은 부동산 양도가격으로 확정됨
 - 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계약이 효력을 갖는 시점임
- 포상 건별 1,000만동 초과하는 포상 소득
- 특허권 소득
 - 지적재산소유권 대상의 이전, 사용권 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 시 납세의무자가 받는 1,000만동 초과하는 소득



- 프랜차이즈권 실시 계약에 따라 받는 1,000만동 초과하는 소득
- 매 발생 건별로 받은 상속, 증여재산가치가 1,000만동을 초과하는 소득

□ 면세대상 소득

-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부동산 양도소득
- 개인이 하나의 주택, 유일 택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및 택지 (사용료)의 양도소득
- 국가가 개인에게 분배한 토지 사용권의 소득
-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부동산 상속, 증여소득
- 농업 등의 소득
 - 농업, 임업, 제염(製鹽), 양식, 수산 어로(漁撈)로 직접 생산하였으나 각종 타 생산품으로 아직 가공하지 않은 또는 통상적 조제(粗製)에 그치는데 종사하는 가계(Household), 개인의 소득.
- 국가가 가계, 개인에 분배한 농업용 토지의 용도변경 소득
- 금융기관 예금이자, 생명보험 계약의 이자 소득
- 외화송금 환전 소득
- 법률규정보다 더 높게 지급되는 야간근무, 시간 외 근무분 급여
- 사회보험기금이 지급하는 퇴직연금, 개인퇴직기금이 지급하는 퇴직연금
- 장학금 소득
- 보험 등의 배상소득
 -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계약에 의한 배상, 근로자 재해보상금, 국가배상 등
- 자선기금 소득
- 외국원조자금 소득

□ 내·외국인 모두 비과세 근로소득

- 시간외 근무수당 중 할증수당 지급액



- 현물로 제공하는 교대 식사비용(현금 지급액은 1인당 월 730,000VND 한도)
- 직원교육훈련비
- 일정한도내의 출장경비, 통신료
- 현금 지급 피복비 1인당 연간 5백만동(현물은 한도 없음)
- 베트남 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자녀의 학비나 해외근무 베트남인의 해외에서 지급한 자녀 학비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현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비
- 출퇴근 차량 제공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에 부합하는 직원 경조사비
- 1인 유한책임 회사의 무상증자

□ **외국인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 1회에 한한 해외 이주비용
- 연1회 모국 방문 항공료
-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비
- 사택 임차료(총 과세소득의 15% 한도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나머지는 비과세)

□ **세액계산 대상기간**

- 연단위 세액계산방식
 - 사업소득, 근로소득
- 소득발생건별 세액계산방식
 - 자본투자 소득, 자본양도 소득(단 증권 양도 소득 제외), 부동산양도 소득, 포상 소득, 특허권 소득, 프랜차이즈권 실시 소득, 상속 소득, 증여 소득
- 양도건별 또는 연단위세액계산방식
 - 증권양도소득



□ 세율

- 종합과세소득(근로소득) 구간별 누진세율표

구분	과세표준	세율
1	60백만 VND이하(월 5백만 VND)	5%
2	60백만 VND초과~120백만VND이하(월 10백만 VND)	10%
3	120백만 VND초과~216백만VND이하(월 18백만 VND)	15%
4	216백만 VND초과~384백만VND이하(월 32백만 VND)	20%
5	384백만 VND초과~624백만VND이하(월 52백만 VND)	25%
6	624백만 VND초과~960백만VND이하(월 80백만 VND)	30%
7	960백만 VND 초과	35%

- 분리과세소득(사업, 자본투자, 자본양도, 부동산양도, 포상, 특허권, 프랜차이즈 실시, 상속, 증여소득) 전구간 (동일)세율표

소득의 종류	세율
사업소득(연간 1억동 초과)	0.5%-5%
자본투자소득	5%
특허권, 프랜차이즈권 실시 소득	5%
포상소득	10%
상속, 증여소득	10%
자본양도소득	20
증권양도소득(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각대금의 0.1%
부동산양도 소득	25%
부동산양도 소득(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각대금의 2%

□ 과세연도

- 역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개인소득세 납부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소득세신고 및 납부는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매월 한차례하며, 다음달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거주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자본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함

□ 비거주자 세액계산

○ 사업소득

- 산출세액 : 매출수익 × 업종별 세율
- 매출 수익 : 물품, 서비스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액 전체
- 업종별 세율
 - a) 물품 판매활동 1%
 - b) 서비스 판매활동 5%
 - c) 생산, 건설, 운송 및 기타 사업활동 2%

○ 근로소득

- 산출세액 : 급여(임금) × 20%

○ 자본투자소득

- 산출세액 : 자본투자로 받은 총금액 × 5%

○ 자본양도소득

- 산출세액 : 양도금액 × 0.1%
- *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불문함

○ 부동산양도소득

- 산출세액 : 양도금액 × 2%



- 특허권, 프랜차이즈권 실시 소득
 - 산출세액 : 일정 초과소득 × 5%
 - * 계약건별로 1,000만동을 초과하는 소득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 포상, 상속, 증여소득
 - 산출세액 : 과세대상 소득 × 10%
 - * 소득 발생 건별로 1,000만동을 초과하는 소득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4 환경보호세, 특별소비세, 자원세¹³⁾

가 환경보호세

-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생산물, 물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간접세임
- 과세 대상
 - 휘발유, 오일 그리이스
 - 석탄
 - 수소염화불화탄소 용액
 - 비닐포장재
 - 제초제
 - 살충제
 - 임산물 보관제
 - 창고소독제
- 비과세 대상
 - 베트남 국경통과 또는 베트남 국경세관, 국경에서 환적하는 운송물품으로서, 수입수속 또는 수출수속을 하지 아니하는 수출국으로부터 베트남 국경세관을 지나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물품

13) 변동욱 영사, “최신 베트남 세법”, 문커뮤니케이션(2015.6)

- 일시수입 - 재수출 물품
- 생산자가 직접 수출 또는 수출위탁물품

○ 납세의무자

- 납세대상 물품을 생산, 수입하는 단체, 가계, 개인
- 물품수입을 위탁한 경우, 수입위탁을 받은 자
- 단체구매책임자인 단체, 가계, 개인
 - ☞ 단체구매 책임자인 단체, 가계, 개인이 영세하고 소매하고 있어 환경보호세가 납부된 물품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 세율표

번호	물 품	계산단위	세액수준 (동/물품 1단위)
I	휘발유, 오일, 그리이스		
1	휘발유 · 에탄올을 제외한다	리터	1,000 ~ 4,000
2	항공유	리터	1,000 ~ 3,000
3	디젤유	리터	500 ~ 2,000
4	석 유	리터	300 ~ 2,000
5	연료유	리터	300 ~ 2,000
6	윤활유	리터	300 ~ 2,000
7	그리이스	kg	300 ~ 2,000
II	석 탄		
1	갈 탄	톤	10,000 ~ 30,000
2	무연탄(Anthracite)	톤	20,000 ~ 50,000
3	유연탄	톤	10,000 ~ 30,000
4	기타 석탄	톤	10,000 ~ 30,000
III	수소염화불화탄호 용액(HCFC)	kg	1,000 ~ 5,000
IV	과세대상 비닐포장재	kg	30,000 ~ 50,000
V	사용제한 대상 제초제	kg	500 ~ 2,000
VI	사용제한 대상 살충제	kg	1,000 ~ 3,000
VII	사용제한 대상 임신물 보관제	kg	1,000 ~ 3,000
VIII	사용제한 대상 창고 소독제	kg	1,000 ~ 3,000



○ 과세시기

- 수출판매, 교환물품 : 물품 소유권 또는 사용권 양도시점
- 내부 소비 생산물품 : 물품을 공급한 시점
- 수입 물품 : 세관신고서 등록한 시점
- 석유류 : 석유사가 판매하는 시점

○ 납부 및 신고

- 생산판매, 교환, 내부소비, 기증물품 : 월별로 이행
- 수입물품 : 납세신고 및 수입세 납부시점에 함께 이행
- 납부시기 : 생산 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1회만 납부

나. 특별소비세

- 특정 재화의 생산이나 수입, 특정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 세율표¹⁴⁾

제품/서비스	세 율(%)
시가/담배 -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 2019. 1. 1.부터	70 75
스피릿(증류주)/와인 알콜 함유량(ABV) 20% 이상 -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 2018. 1. 1.부터	55 60 65
알콜 함유량(ABV) 20% 미만 -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 2018. 1. 1.부터	30 35

14) PWC, Vietnam Pocket Tax Book 2017



제품/서비스	세율(%)
맥 주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55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60
2018 1. 1.부터	65
24인승 미만 자동차	
2018. 1. 1.이전	10-70
2018. 1. 1.이후	10-150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20
보 트	30
석 유	7-10
에어컨(90,000BTU 이내)	10
카드놀이용 카드	40
부 적	70
디스코텍	40
마사지, 가라오케	30
카지노, 슬롯머신 등	35
베팅 요소가 포함된 오락	30
골 프	20
복 권	15

다. 자원세

○ 과세 대상

- 금속 광산물
- 비금속 광산물
- 원유
- 천연가스, 석탄가스
- 자연산림 생산물
- 자연해산물



- 자연 수자원
- 자연산 제비집

○ 납세의무자

- 자원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자원을 채취하는 단체, 개인
- 합작설립 자원채취 기업 : 합작기업
- 베트남측과 외국측이 자원채취사업 합작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 합작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됨

○ 면세, 감세

- 신고, 납세한 자원에 손실을 야기하는 불의의 천재, 화재, 사고를 만난 경우 면세, 감세
- 자연해산물은 면세
- 개인이 일상생활 용도로 채취허가 받은 나뭇가지 등 면세
- 가계가족, 개인의 수력전기 생산을 위한 자원수자원은 면세
- 가계가족, 개인이 일상생활용으로 개발하는 자연수자원은 면세
- 임대된 토지면적 내에서 개발 및 사용되는 토, 안보, 군사, 제방용 땅 고르기, 공사장을 위한 채취토의 경우 면세
- 기타 국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는 면세, 감세

○ 세율

번호	자원 그룹, 품목	세율(%)
I	금속 광산물	
1	철, 망간	7-20
2	티탄	7-20
3	금	9-25
4	희토류	12-25
5	백금, 은, 주석	7-25
6	중석(텅스텐), 안티몬	7-25
7	연(鉛), 아연,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동, 니켈	7-25
8	코발트, 몰리브덴, 수은, 마그네슘, 바나듐	7-25
9	기타 금속 광산물	5-25



번호	자원 그룹, 품목	세율(%)
II	비금속 광산물	
1	땅고르기, 공사장요 채취 토(土)	3-10
2	소석회 및 시멘트 생산을 위한 돌(石)을 제외한, 석재; 자갈; 크리스탈(水晶) 제조용 모래를 제외한 모래	5-15
3	벽돌 제조용 토(土)	5-15
4	화강석, 내화 토(土)	7-20
5	백운석(dolomite), 규석(quartzite)	7-20
6	고령토, 운모(mica), 테크니컬 석영, 크리스탈(水晶) 제조용 모래	7-15
7	황철토(pirite), 인회토(phosphorite), 소석회 및 시멘트 생산을 위한 돌(石)	5-15
8	인회석(燐灰石), 사문석(蛇紋石)	3-10
9	난로용 무연탄	4-20
10	노천 무연탄	6-20
11	갈탄, 지탄(指炭)	6-20
12	기타 석탄	4-20
13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16-30
14	에머랄드, 알렉산드라이트(금록석), 흑색 오팔	16-30
15	Adrite, Rodolite, 홍석류석, 녹주석, 침정석, 황옥(Topaz)	12-25
16	자녹색, 황록색, 오렌지색 수정결정체; 크리올라이트; 백색, 적주색 오팔, 장석, 비루사(Birusa) ; 네프라이트(Nefrite)	12-25
17	기타 비금속 광산물	4-25
III	원유	6-40
IV	천연가스, 석탄가스	1-30
V	자연산림 생산물	
1	목재 제 I 군	25-35
2	목재 제 II 군	20-30
3	목재 III 군, 제 IV 군	15-20
4	목재 제 V 군, 제 VI 군, 제 VII 군, 제 VIII 군 및 기타 각종 목재	10-15
5	가지, 끝단, 그루터기, 뿌리	10-20
6	화목(火木)	1- 5
7	대나무, 가는 대나무, 코르크, 매화, 장나무, 갈대, 등아무, 꽃피는 대나무	10-15



번호	자원 그룹, 품목	세율(%)
8	침향, 끼남	25-30
9	호이, 계피, 생강나무, 초과(菓果)	10-15
10	자연산림으로부터의 기타 생산물	5-15
VI	자연 해산물	
1	진주조개, 전복, 해삼	6-10
2	기타 자연해산물	1- 5
VII	자연 수자원	
1	병입, 통입 여과 천연 광천수, 천연 온천수, 천연수	8-10
2	수력전기 생산에 사용하는 자연 수자원	2- 5
3	이 군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저원을 제외한 생산,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자연 수자원	
3.1	지표수	1- 3
3.2	지하수	3- 8
VIII	자연산 제비집(巢)	10-20
IX	기타 자원	1-20

투자 인센티브 제도

IV

제 1 장 투자환경 / 106

제 2 장 투자 인센티브 제도 / 115

제 3 장 주요 투자법 내용 / 122



제 1장 투자환경

1 - 최근 투자환경

□ 외국인 신규 투자 크게 확대

- 정상가격원칙(The arm's length principle)에 관한 법령
 - 외국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허용된 이후 베트남 투자는 2013년을 기준으로 급등, 최근까지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 2017년 11월 누계 기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총 24,580건, 3,169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국가별로는 2015년 9월 한국이 투자금액에서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섰고, 2017년 말 누계기준 한국(575억 달러), 일본(491억 달러), 싱가포르(419억 달러), 대만(308억 달러)이 뒤따르고 있음.
 - 한국은 누계 투자 6,477건으로 건수 기준에서도 對베트남 최대 투자국임

□ 투자 비용 급등

- 인건비 및 임차료 급등 추세
 - 인건비와 공단 임차료 등 투자 비용이 급등하는 추세이며,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공기업의 최저 임금이 2008년부터 매년 10% 이상 인상됐으며, 공단 임차료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017년 12월 기준 베트남 남부 지역의 공단임차료는 호치민시 60~260달러(sq, 30~40년 토지사용권), 동나이성 65~120달러(sq, 35년~50년 토지사용권), 빈중성 60~100달러(sq, 40~50년 토지사용권), 롱안성 75~130달러(sq, 40~45년 토지사용권)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하이테크 기업 선호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 여건 악화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식 변화
 - 외국인 투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관대했던 공단관리 위원회나 지방 정부의 자세도 변화하고 있음.
 - 자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입대체를 위한 부품소재 산업 분야로의 중점적인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변화하고 있음.
- 기술집약적 분야에 대한 투자 격극 유도
 - 베트남 정부도 하이테크법 시행령을 통해 기술집약적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즉 전기, 전자 등 IT 산업 및 부품소재, 친환경 제품 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자유치 확대와 산업 체질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전자, KEFICO 베트남, 크루셜텍 베트남, 대영전자 등 54개사가 하이테크 인증을 획득했으며 최근 하이테크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기업이 하이테크 업종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음.

□ 베트남의 투자환경 개선

- 꾸준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
 -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은 아세안 주요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조사대상 189개국 중 90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인도네시아(109위), 캄보디아(127위), 라오스(134위), 미얀마(167위) 등 경쟁 국가보다 높은 순위이며, 건축허가(12위),登記제도(58위), 은행대출(28위)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창업(119위), 분쟁해결(123위), 세금(168위) 에서는 낮은 순위를 차지함

2 - 일반 투자환경



□ 중국을 대체할수 있는 투자적격지로 각광

- 베트남은 최근 세계적 생산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적격지로 각광받고 있어 각 기업들의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과 관심 높아졌음.
 - 베트남의 투자 환경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중국에 비해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으나,
 -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투자 유망국으로의 입지가 다소 좁아졌음.
 - 또한 베트남은 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미래의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정치사회적 안정성, ASEAN 회원국으로서의 입지상의 장점을 갖고 있음.

□ 정치사회적 안정성

- 베트남은 중국, 인도 및 ASEAN 국가 중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돼 있는 국가로 평가되며 베트남 공산당 1당 체제인 반면, 유교문화권 국가로 종교적인 갈등이 거의 없음.

□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9천만명에 달하는 인구나 30세 이하 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적 인구구조를 가졌으며, 문맹율이 10% 미만으로 낮은 편이며, 생산직 초임이 인근 국가에 비해 저렴한 편임.



□ China Risk 회피를 위한 대체 생산거점

-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국가적, 경제적 위험 발생시 안정적인 상품공급을 받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베트남이 각광받고 있음.
 - 일본기업들의 경우 캐논 등 전자/부품회사들이 베트남에 대거 진출했으며, 우리기업들도 중국에서의 생산비용 상승과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비우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체지로서 베트남을 우선 검토하고 있음

3 - 베트남 투자환경의 변화



□ 긍정적 환경 변화

- 무역업, 도·소매업 외국인 투자 개방
 - 베트남 투자법 상 무역업과 도·소매업은 ‘조건부’ 투자 허가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대형 할인매장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가 이루어졌음.
 - 베트남 시장 개방에 따라 무역, 유통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조건부 허가의 성격이 강하며, 품목 제한이 있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상사들은 대표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통합 투자법과 기업법 발효로 인한 투자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
 -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해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 신규 투자법과 기업법을 2006년 7월 1일부로 발효하여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고, 2015년 신규 투자법과 기업법 시행을 통해 투자절차 효율성을 한층 발전시키고 있음.

○ 베트남의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

- 베트남은 현재까지 ASEAN 회원국 내 적용되는 AFTA, 한-아세안 FTA, 중-아세안 FTA, 이외에 일본과의 개별 경제연대협정, 베트남-칠레 FTA 등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양자, 다자를 포함하여 총 8개 협정이 발효 중이며 2014년 12월 10일 한베 FTA가 실질 타결됐으며, 2015년 12월 발효됐음.
- 특히 ASEAN 역내국 수출 시 적용되는 수입 관세는 최대 5%로, ASEAN 시장을 커버할 생산기지로서 베트남 활용 시 관세 인하 효과가 가능함.

○ 외국인 근로자 3% 할당제 폐지

- 외국인 근로자 3% 할당제가 폐지되면서, 투자 초기 한국인 파견자의 비중이 높은 경우 발생하던 문제가 해결됐음.

□ 부정적 환경 변화(투자시 애로사항)

○ 행정체제 미비로 비효율성 존재

- 제도 및 규정이 미흡해 공무원 해석에 의존하고 권한도 과도한 경우가 많아 부정부패 가능성이 있음. 전반적인 비즈니스 마인드 부족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특히 합작 투자를 위한 파트너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함.

○ 투자비용 급등 추세

- 인건비와 공단 임차료 등 투자비용이 급등 추세이며. 베트남 정부는 매년 총리령으로 최저 임금을 10% 가량 인상하고 있음. 주로 가파른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음.
- 2017,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상당 둔화돼 평균 7.3%, 6.5% 인상됐음.



<국내·외투기업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내역>

(단위 : 만 동, %)

구 분	2018년적용	2017년 적용	인상금액	인상률
1지역	398	375	23	6.1
2지역	353	332	21	6.3
3지역	309	290	19	6.6
4지역	276	258	18	7.0
2018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6.5

<자료원 : MOLISA ; 베트남 노동사회부>

-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
 - 도로, 철도, 항만 시설 부족으로 운송 시간 및 운송료 등 부대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 기간 내에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내 육상운송의 경우 전체 물동량의 65%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나, 대부분 50인 이하의 열악한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며, 10년 이상 낙후된 장비 운행으로 인한 잦은 고장 등 서비스 수준은 떨어짐
- 고급 인력 부족
 - 대도시 지역 일자리 선호로 인해 하노이 및 호치민시 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영어가 가능한 사무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상대적으로 교통비 등이 포함된 높은 급여를 주어야만 확보가 가능함.
 - 고급 기술 인력도 부족해 채용 후 자체 교육을 통해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베트남의 산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 숙련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곤란함.
 - 베트남의 전체 노동력 가운데 고급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대 졸업자 이상의 노동인력은 약 6%에 불과함.
- 소비계층의 분화 미비
 - 낮은 구매력과 내수 시장 미발달로 내수 시장 진출 투자는 세밀한 투자 계획 및 일정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구매력과 FTA로 인한 주변국들로부터 저렴한 상품이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의 주된 구매 결정 요인은 가격임.

- 소비 계층 분화도 최상류층과 일반 계층의 2단계로 우리 상품의 주 고객인 중상류층 소비자의 형성이 미흡한 상태임.

○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 2017년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7.14~7.5% 인상률을 보이며 하노이, 호치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1지역의 최저 임금은 375만 동임. 2017.1.1.부터는 최저임금이 1지역 375만 동, 2지역 332만 동, 3지역 290만 동, 4지역 258만 동으로 증가했음.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질 시장 임금 상승률을 감안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급작스런 인상은 외투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2016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7%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12.4% 인상률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7년에는 평균 7.3%인상, 2018년에는 평균 6.5% 인상 예정으로 인상률이 상당히 완화됐음.
- 한국 투자 기업의 대부분이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 투자 기업의 경우, 실질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중소 투자기업의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함.

○ 높은 소득세율

-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183일 이상 베트남 체류 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현행법상 개인 소득세는 5%에서 35%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월 소득이 최고 기준인 8천만 동 이상인 경우가 최고 구간에 해당함.
- 거주자는 베트남 내의 원천소득 및 국외 원천소득도 모두 합하여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베트남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됨.



○ 외투 기업의 유통업 진출 제한

- 도소매업의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WTO 개방 스케줄에 따라 외국인의 단독투자 진출이 가능해졌으나, 실제 시장개방 이후에도 자국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투자허가서 발급 시 조건부 투자허용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했고, 현지 매장 추가 설치 시 개별 경제적 수요 심사(ENT : Economic Needs Test)를 요구하는 등 실제 허가 발급이 쉽지 않은 분야임.
- 2013년 8월 소매업 허가 시 실시되는 경제적 수요심사 관련해 500㎡이하 소매점, 성이나 직할시에 의해 상거래 활동지역으로 계획된 지역, 매장 건물의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 경제적 수요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소매점포 건설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관련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매업 진출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소자본 창업 분야 진출 곤란

- 소자본 창업의 경우 주로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데, 이 영역은 베트남 정부의 비권장 업종임. WTO 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에 의거 개방이 이루어진 분야, 예컨대 유통업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제약이나 실무적으로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임.
- WTO 양허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의 경우는 베트남 정부가 개방을 약속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가해야 할 의무가 없음.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량으로 허가를 내줄 여지는 있으나,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해 줄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제시돼야 함.
- 또한 자본금 액수가 너무 적은 경우 허가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음. 실제 부동산, 금융 등 일부 분야에만 최저자본금이 규정돼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적은 액수를 자본금으로 규정하는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다수 목격되고 있음. 교육, 출판, 콘텐츠 분야에서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허가가 쉽지 않음.

○ 환경 유해 프로젝트 규제 강화

- 최근 Ba Ria Vung Tau성(省), Dong Nai성(省), Bac Ninh성(省), Thai Binh성(省)을 포함한 여러 지방성들은 특정 산업 신규 프로젝트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규제대상이 된 산업들의 베트남 신규 진입이 어렵게 됐다는 것과 동시에 산업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됐음을 의미함. 각 지방성의 이러한 신규 투자 규제는 201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금지 또는 제한 투자 프로젝트>

구분	지방성	금지 투자프로젝트	제한 투자 프로젝트
1	Ba Ria Vung Tau	건설용 철강, 강철 빌렛 등을 포함한 철강 제조, 카사버 녹말 (Cassava Starch) 가공, 기초 화학 제품 생산(산업 폐수 배출), 염색과 태닝, 모든 종류의 제지 생산 등에 관련된 투자	해산물 가공, 페인트 제조, 산업용 세정 화학품, 낮은 부가가치와 비숙련 노동자를 이용한 프로젝트,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많은 산업 폐기물을 양산하는 프로젝트, 낙후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2	Dong Nai	건설용 철강과 강철 빌렛, 카사버 녹말 가공, 고무 가공, 기초 화학품 생산(공업 용수를 생산하는), 염색과 태닝, 모든 종류의 용지 생산 등에 관련된 투자	산업용 세정 화학품의 생산은 조건부 투자 허가
3	Bac Ninh	철, 강철 생산, 건설용 자재 생산, 종이, 화학품, 섬유, 의류	현재 가동중인 공장이라 하더라도 저부가가치와 환경오염 유발 산업에 해당이 된다면 향후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업 확장 허가가 불투명
4	Thai Binh	-	모든 종류의 제지 생산, 담배 생산, 시멘트와 철강 생산 등
6	Binh Duong	직조, 염색	염색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조와 염색을 할 300헥타르 규모의 사유 공업 단지를 Bau Bang Town에 건설할 계획

<자료원 : www.baodautu.vn>



제 2 장 투자 인센티브 제도

1 주요 우대조치 요약

□ 우대조치 내용 요약

우대 대상	적용 법규	법 조항
법인소득세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에 따라 하기 내용 적용 - 법인세 우대 - 법인세 우대 기간 제공 - 법인세 면제 기간 제공 - 법인세 감면 등 	투자법 시행령 제25조 법인세법 시행령 35조
수출입관세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법에 따른 세금 감면 - 투자 우대 분야 또는 투자 우대 지역에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고정자산, 원부자재, 부품 등의 수입 시 면세 가능 	투자법 시행령 제25조 수출입법 제16조
토지사용료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우대 분야 및 우대 지역에 속한 프로젝트는 토지법에 의거 다음 우대를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사용세 면제 및 삭감 · 토지 사용료 면제 및 삭감 · 토지 임차료 면제 및 삭감 · 양식용 해수면 사용료 면제 및 삭감 	투자법 시행령 제26조 토지법

- 투자 우대 분야의 투자자는 우대 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우대 세율의 적용 기간, 면세 기간, 세금 감면 기간 등은 세법의 규정에 따름.
- 투자 우대 분야의 투자 기업이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했다면 세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지분 매입, 자본 출자로부터 수취한 배당수익에 대해 우대 세율 혜택을 받음.



- 투자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 자재, 운송 수단,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법과 수입 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되며, 투자 우대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들에서 기술 이전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음.

2 투자 인센티브 목적 및 지원대상

□ 목적

분 류	목 적
지역개발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및 주변지역 인프라 개발 촉진
산업투자	국가 경제, 사회 개발전략에 따른 주요 거점 산업분야 투자유치
수출가공활동 지원	베트남을 수출 경쟁력 향상 및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수출입가공 기업 전용구역 지정거점 마련
하이테크산업 (R&D투자)	하이테크, R&D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통한 국내 산업 역량 강화 및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의 체질개선
부품소재산업 (기술이전)	선진기술 도입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개발

- 대상

- 베트남 투자법 및 Decision 1049/QD-TTg에 따른 사회-경제적 낙후지역 및 특수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베트남 중앙정부의 사회, 경제 발전 지표 지수 따름



- 지원내용

- (사회-경제 낙후지역) 법인세 최초 2년 면제, 4년 50% 감면, 총 10년간 17% 우대 세율 적용
- (특수 사회-경제 낙후지역)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 (고용창출) 낙후지역 내 5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기업은 전 사업기간 동안 법인세 10 ~ 15% 적용

* 투자 낙후지역 분류에 따라 3~15년간 토지사용세 면제

○ 산업투자

- 대상

- 고품질 철강 생산 신규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 생산품 투자, 에너지 사업, 총리가 지정한 SOC 사업 투자(항만, 철도, 도로 등)

- 지원내용

- (고품질 철강 생산, 에너지 절감 생산품 등) 법인세 최초 2년 면제, 4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0년간 17% 우대 법인세율 적용
- (에너지사업, 총리 지정 SOC 사업)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 투자 우대업종 분류에 따라 3~15년간 토지사용세 면제

○ 수출가공 활동지원

- 대상

- 수출가공구 내에서 설립되고 활동하는 기업 또는 공업구, 경제특구 내에서 활동하며 생산품 전량을 수출하는 기업

* 정해진 수출가공구역(EPZ) 이외에도 개별 기업의 투자 부지만을 구역으로 인정가능

- 지원내용

- 생산 활동을 위해 수입되는 원부자재,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음



- 하이테크산업(R&D투자)
 - 대상(1~4 모두 충족해야 함)
 - (1) Decision No. 66/2014/ QD-TTg, No.13/2017/ QD-TTg 에 따른 하이테크 투자 우대분야(62개) 및 제품(130개)에 속하는 기업
 - (2) 품질/환경관리 : ISO 9001 : 2008, ISO 14000 인증기업
 - (3) 연구개발인력 : 종합대학 졸업 이상학력 전체 직원의 5% 이상 유지 기업
 - (4) 연구 개발비 : 매출액 1% 이상 R&D 비용 지출 기업
 - 지원내용
 - (법인세)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 (부가세, 수입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품 부가세, 수입세 면제
- 투자 규모
 - 대상
 -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6조동(약 2.6억불) 이상 투자 및 3년 이내 10조동 이상의 매출 발생 or 3년 이내 3천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 지원내용
 -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 부품소재산업(기술이전)
 - 대상
 - 정부가 지정한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및 자국 기업으로
 - 1) 기계공학분야 2)전자정보기술 분야 3) 자동차 조립 및 생산 4) 섬유, 의류분야 5) 신발, 가죽분야 6) 첨단기술 분야 등 총 6개 분야 제조 투자 또는 기술이전 형식의 투자 희망 기업(Decree 111/2015/ND-CP, Circular 55/2015/TT-BCT 부품소재산업 지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 지원내용

- (법인세)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 (수입세) 24인승 차량, 부속품, 몰드, 액세서리, 국내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및 건축자재 등에 대한 수입세 면제
- (투자금지원)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저리로 투자금의 70% 대출 지원.
- (기술이전특별지원) 부품소재 산업 시험 생산 비용 50% 보조금 지원, 금속/비금속/석유화학물을 85%이상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75%까지 기술이전 비용 정부 지원

<베트남 부품·소재산업 관련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구 분	세부내용
법인세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4년간 면세 및 이후 9년간 50% 적용 ○ 투자기간 15년간 10% 적용
수입세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류 수입세 면제(24인승 차량, 부속품, 몰드, 액세서리, 베트남 국내 미생산 원자재 및 건축자재 등
부가가치세 (VAT)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산업 품목 관련 수입소득에 대해서는 월/년 단위 부가가치세 신고(월/분기별 신고가 일반적)
신용대출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투자재원으로부터의 대출금리와 상응하는 금리 적용 ○ 베트남 중앙은행이 고시한 상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중 현지 은행 또는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베트남 동화 단기 대출금리 적용 가능
환경보호산업 관련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산업 프로젝트 내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환경보호 펀드를 통한 특혜 대출 지원
중소기업 추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의 70% 대출 지원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감면 및 면제



구 분	세부내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산업 개발프로그램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산업 시험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정부 재정 지원 - R&D 시설 설립을 위한 토지임대료 인센티브 제공 - 부품·소재산업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R&D 장비 구매를 위한 자금의 최대 50%까지 재정 지원 ○ 기술이전 및 적용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합동 프로젝트에 대해 부분적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산업 시험 생산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보조금 지원 ○ 인적지원 개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산업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적지원 훈련 보조금 지원 - 과학기술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부품·소재산업 인력 개발기관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시장 개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무역진흥프로그램 우선 참가 - 부품·소재산업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상표권 등록,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시장정보이용 비용 관련 보조금 지원

<자료 : Decree 111/2015/ND-CP, Circular 55/2015/TT-BCT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 개발특구

○ 하이테크산업단지

- 대상

- 베트남 국가가 개발한 하노이, 다낭, 호치민에 위치한 총 3개의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하이테크 산업분야 투자기업(국내외 기업 차별 없음, 업종에 따른 차별 없음)



- 지원내용

- (법인세)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 (부가세, 수입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품 부가세, 수입세 면제

□ 경제특구(Economic Zone)

○ 하이테크산업단지

- 대상

- 베트남 내 17개 경제특구에 포함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국내외 기업 차별 없음, 업종에 따른 차별 없음)

- 지원내용

-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경제특구 내 근무하는 모든 내,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50% 감면. (부가세, 수입세) 보세구역에 준하는 혜택

제 3 장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관련 법률 및 규정

□ 개요

-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를 규율하는 법률은 투자법 및 기업법, 그리고 그 하위에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음. 베트남 정부는 내·외국인에 공통 적용되는 최초의 투자법을 2005년 11월 베트남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발효하였음.
- 투자법의 제정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베트남 투자 환경의 정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해서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투자법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음.

2 개정투자법 주요내용

□ 개요

- 베트남 국회는 2014년 11월 26일 개정 투자법, 기업법 등 18개의 법률, 11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기존 투자법보다 13개 조항이 감소된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투자 형식, 투자 분야, 투자 지역, 투자 우대 및 지원, 직접 투자 활동, 해외 투자,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베트남 투자 여건에 대한 큰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있음



- 개정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 개념 정의, 금지 분야와 업종의 명확화로 인한 투자 절차 간소화이다. 기업법 개정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상거래에서 법인 인감 등록 절차 완화, 사업 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2015년 7월 1일부터이며, 초기 시행 당시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 현재 관련 시행령 등 주요 하위법령이 발표되어 안정화된 상태임.

□ 외국인 투자법인 정의 명확화

- 개정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개인,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 중 외국인의 지분이 51% 이상인 기업과 이들 기업들이 향후 51% 이상 투자한 기업 역시 외국투자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구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는 투자허가서(IC)를 발급받았으나 2015년 이후 설립되거나 투자허가서를 갱신한 기업은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IRC)를 발급받게 됨.
 - 외국인출자지분율이 51% 이상일 경우 ERC와 IRC를 모두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미만일 경우는 베트남 현지 투자자와 동일하게 ERC만 신청함으로써 법인설립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됨.

□ 투자금지분야 축소 및 조건부투자분야 정의

- 개정 투자법에서는 이전에 금지됐던 51개의 사업 분야에 비해 단 6개의 사업 분야(6조 마취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등) 거래만이 금지됐으며, 조건부 투자 분야의 경우는 267개 업종이 규정(7조 마사지서비스, 보안 서비스, 경매, 회계서비스, 보세창고서비스, 보안서비스, 보험서비스, 재보험 서비스, 프랜차이즈서비스, 부동산서비스, 통신서비스, 인쇄서비스 등)됨.

-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가 보호와 보안을 위한 세이프가드, 사회 질서와 안전, 사회 윤리와 공공 위생을 위한 조건부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설명했으며, 정부는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부 사업 분야의 목록에 근거해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음.
- 그동안 금지 또는 조건부 허용 사업 활동이 한 가지 법령상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으나, 투자법 개정안에는 모두 명기됨.
- 개정법의 애초 취지에 의하면 조건부 허용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국가투자포털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해야 하나, 국가투자포털도 아직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므로 WTO 양허안, 각종 특별법, 그리고 개별 FTA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2016년 11월 자동차 제조 등 일부 업종은 추가로 조건부 허가업종으로 지정하는 기업법 일부 수정안이 통과돼 2017년 초 발효됨.

□ 투자 유치 분야

- 베트남 투자 분야는 크게 투자 가능 분야, 투자 금지 분야로 나눌 수 있음. 투자 가능 분야는 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분야로 간주하면 됨. 하지만 투자 가능 분야에도 일반 투자 분야, 투자 우대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등으로 구분되니, 투자 관심업체는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투자 우대 산업, 업종 및 투자 우대 지역

- 투자 우대 산업, 업종
 - 하이테크 기술활동, 하이테크 기술지원 공업제품, R&D 활동
 - 신물질, 신에너지, 클린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부가가치 30% 이상, 에너지절약 제품 생산
 - 전자제품, 중점 기계제품, 농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생산, 조선



- 섬유봉제/신발 산업 지원산업
 - 정보기술 제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생산
 -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재배/양식/가공, 산림조성 및 보호, 제염, 수산 개발 및 어업 지원 서비스, 바이오 기술 제품 생산
 - 폐기물 수집, 처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
 - 인프라 시설의 개발 및 운영, 관리, 대중 여객운송 개발 투자
 - 취학전 교육, 의무 교육, 직업 교육
 - 검진, 진료, 의약 원료, 의약, 질병/성병 예방, 치료 의약, 백신, 생약, 신약 생산을 위한 제약기술, 바이오 기술에 관한 연구
 - 장애인 또는 전문가를 위한 체육, 스포츠 연습, 운동 시설 투자, 문화 유산에 대한 보호 및 부가가치 실현
 - 노인병, 정신병, 고엽제 환자 치료 센터, 고령자/장애인/고아 돌봄센터
 - 인민 신용금고, 미소 금융기관
- 투자 우대 지역
- 사회경제적 낙후 지역, 특별 사회경제적 낙후 지역(투자 인센티브편 참고)
 - 공단(IZ), 수출가공공단(EPZ), 하이테크공단(HTZ), 경제특구(EZ)

□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

-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는 베트남 국방, 안보, 사회 질서, 도덕, 국민 건강의 이유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산업으로 총 243개 업종임. 유통, 식음료, 부동산사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일부 민감한 제조업도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에 속함.
- 투자법에 의하면 각 사업투자 조건은 국가 기업등록 정보포털 상에 등재되어야 함. 단, 완벽히 정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각 지방성마다 허가 요건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므로 투자 대상 사업이 이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투자청 혹은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상의 하는 것이 좋음.

□ 투자 금지 분야

○ 투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활동이 금지됩니다.

(1) 특정 마약물질 사업, (2) 특정 화학물질 또는 광물 사업,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 관련 사업, (4) 성매매, (5) 인신매매, (6) 인체 조직 또는 부위 매매사업, 무성생식 관련 활동 등.

다만 위 (1)의 경우 약품사업 중 마약물질 및 원료물질 목록을 공포하는 시행령, 기타 관련 국제협약 등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조 및 이용을 승인 받은 경우,

위 (2)의 경우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승인(PIC)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조 및 이용을 승인 받은 경우, 그리고 위 (3)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가 가능함.

□ 총리 허가 필요 분야

- 산간지역에서 10,000인 이상, 기타 각 지역에서 20,000인 이상의 이주
- 공항의 건설 및 운영
- 국가항만의 건설 및 운영
- 석유가스 탐사, 개발 및 처리가공
- 도박, 카지노 사업
- 담배 생산
- 공단, 수출가공공단, 경제특구 인프라 개발
- 골프장 건설 및 운영
- 기타 5조동(약 2500억원) 이상 자본금 규모를 갖는 프로젝트
- 해상운송사업,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원거리통신 서비스, 산림조성, 출판/신문/잡지, 외국인투자 100%인 과학기술 단체/기업 설립
-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타 프로젝트



□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조건

-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조건이란 베트남 법령 및 국제조약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가 조건부로 허용된 분야의 투자 활동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을 의미함. 참고로 이러한 투자 조건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신규 설립, 출자지분 매수, 사업협력계약(BCC)의 이행, 투자프로젝트 양수 등의 투자 활동에 적용됨
-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 투자 형태, 투자 활동의 범위, 합작투자 시 베트남 당사자에 관한 조건, 기타 투자 관련 법령이나 국제조약에 명시된 조건을 의미함
-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조건은 사업 분야별로 상이하며, 여러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각 분야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일반적으로 베트남 법령이 외국인투자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WTO 양허안 등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외국인 투자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만약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들이 서로 다른 투자조건을 규정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부록

V

1. 베트남 관련 주요 예규 및 심판례 / 130
2. 한·베트남 조세조약 / 133
3. 베트남 APA 규정 / 157
4. 베트남 투자법 / 179
5. DECREE No. 20/2017/ND-CP 이전가격 과세규정 / 228
6. 이전가격 보고서식 / 258
7. 2018.9.17. 베트남 국세청 간담회 자료 / 274
8. 베트남 주요 웹사이트 / 287
9. 참고문헌(웹사이트) / 290



1 베트남 관련 주요 예규 및 심판례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및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
-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세액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현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 한베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한 외국법인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월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조심-2018-구-0319, 2018.03.09)



□ 베트남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 2013.08.02)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 일부개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동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임(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7, 2014.08.21))
-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2013.04.18.)

□ 베트남 파견직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 내국법인의 베트남 파견 직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서면-2015-국제세원-0527, 2015.05.12.)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탐-2108, 2004.10.18)

□ 기부금의 손금 여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설립되는 베트남 하노이한국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공립학교 기부금 및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인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탐-1963, 2006.09.29)
-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 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법인46012-4059, 1993.12.23)



2 한 · 베트남 조세조약

[1994.09.09]

1994. 5. 20 하노이에서 서명

1994. 9. 9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인적범위】 [1994.09.09]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대상조세】 [1994.09.09]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임금 또는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및
 - (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어서는,

- (1) 개인소득세
- (2) 이윤세 및
- (3) 이윤송금세(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 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 3 조 【일반적 정의】 [1994.09.09]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 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베트남”이라 함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개념으로 쓰여질 때에는 베트남의 영해와 베트남법과 국제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수중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하여 베트남이 주권을 가지는 영해밖의 수역을 포함하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국가 영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베트남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베트남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 (2) 베트남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 4 조 【거주자】 [1994.09.09]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居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5 조 【고정사업장】 [1994.09.09]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
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바. “가”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 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안에서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고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기업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 6 조 【부동산 소득】 [1994.09.09]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채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제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인 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7 조 【사업이윤】 [1994.09.09]

1. 일방채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채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채약국의 기업이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채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채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해운 및 항공운수】 [1994.09.09]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9 조 【특수관계기업】 [1994.09.09]

-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 【배당】 [1994.09.0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994.09.0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 (1) 한국은행
-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나. 베트남의 경우

- (1) 국립 베트남 은행
- (2) 대외무역은행(Vietcombank)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6.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994.09.0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특허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5%
 -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5%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 작품 (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관련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994.09.09]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계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 계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계약국의 기업이 타방계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계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계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계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994.09.0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994.09.09]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수취인이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 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1994.09.09]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994.09.09]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연금】 [1994.09.09]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994.09.09]

1.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의 기관

나. 베트남의 경우

국립베트남은행, 대외무역은행(Vietcombank) 및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양 체결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의 기관

제20조 【학생】 [1994.09.09]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국외에 원천을 둔 것일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학습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교수 및 교사】 [1994.09.09]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동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 또는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2조 【기타소득】 [1994.09.09]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994.09.09]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베트남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의 베트남 조세에 대한 공제허용과 관련되는 베트남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거주자가한국내의 원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베트남의 조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베트남법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을 베트남의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1987년에 제정되어 수시로 개정되는 외국인투자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과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이거나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경미하게 개정되는 관련 규칙
 - 나. 기타 베트남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하여 이후 현행법에 수정 또는 추가하여 도입되어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되는 특별 유인조치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 가.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
 - 나.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5. 이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된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10년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제24조 【무차별】 [1994.09.09]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베트남의 이윤송금세(어떠한 경우에도 이윤송금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와 석유채취 또는 생산활동이나 농업생산 활동에 관한 베트남의 과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어떤 내용도 각 체약국에 대하여 조세목적상 자국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인적공제, 조세목적의 구제 및 경감을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부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대상조세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994.09.09]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조치가 일방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 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양 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그러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994.09.09]

1. 양 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계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계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강제 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조세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계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1994.09.09]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효】 [1994.09.09]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이루어진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제되는 금액부터
 -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제29조 【종료】 [1994.09.09]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제되는 금액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의 정 서

(1994.09.09) [I] [1994.09.09]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1. 제2조(대상조세) 제3항 “나”(3)의 이윤송금세와 관련하여, 베트남에 이윤 송금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이윤의 송금에 대하여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11조(이자) 제4항 “가”(2) 및 제19조(정부용역) 제4항 “가”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자 은행이며, 한국정부의 통제 및 감독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산업의 개발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소유은행이며, 한국정부의 통제 및 감독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아가 위의 두 은행은 일반으로부터의 수신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위의 두 은행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며, 상업적 은행과는 이러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됨을 양해한다.
3. 제24조(무차별)와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이 제3국과 이 협정의 무차별 규정보다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상 보다 덜 차별적인 무차별 규정이 포함된 조세조약을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체결하는 경우, 전자의 규정을 대체하여 후자의 규정이 즉시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정에 포함된 것과 동등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호 테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3 베트남 APA 규정



- No. 201/2013/TT-BTC, 2013.12.20 베트남 APA 규정(시행규칙 과세 당국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적용지침서)

제 I 장 총 칙

제 1 조 규정범위

본 시행규칙은 세무당국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의 적용에 관련된 지침서이다.

제 2 조 적용대상

1.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제조업, 판매업 및 서비스업자(이하 “납세자”)중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14/2008/QH12(지불해야하는 법인세액은 과세되는 수입을 세율로 곱한 금액임)의 방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며, 특수관계자와 사업거래를 영위하고, APA 신청을 희망하는 기간(“적용기간”) 중 첫 해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전 APA신청서를 제출한 회사가 적용대상이 된다.
2. 납세자란 본 시행규칙의 제3조 제3절에 언급되어 있는 APA가 적용되는 자를 말한다.
3. 과세당국 : 국세청(the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지방세무서(Departments of Taxations of provinces).
4. APA의 적용과 연관된 국가기관, 조직 및 개인.

제 3 조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1. APA란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혹은 베트남 과세당국, 납세자 및 베트남과 조세조약을 맺은 상대국 과세당국 간의 서면 약정서로서, 세액계산근거, 가격산정 방법, 혹은 시장가격을 정의한 협약서이다. 혹은 APA는 납세자가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2. APA의 유형
 - a) 일방 APA란 베트남 과세당국과 APA신청인(“신청인”)간의 APA이다.
 - b) 쌍방 APA 및 다자간의 APA란 베트남 과세당국, 납세자 그리고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신청인의 1개 이상의 상대방 과세당국 간의 APA이다.
3. APA가 적용되는 자는 아래와 같다.
 - a) 여러 지역 (다른 국가 및 영토 포함)에서 운영되는 회사 또는 법인과 관련된 조직 및 부서
 - b) 회사의 사무소 또는 주사무소인 조직 및 부서. 이경우에는 모든 사무소가 각각의 회사(납세자)로 간주되며 회사의 주사무소 또는 다른 사무소와 독립적 으로 취급된다.
4. APA가 적용되는 거래
 - a) 정부차원의 가격 안정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용역의 이전을 제외한 특수관계자 간의 영업 중의 매출, 교환, 임차, 물품 및 용역 이전 (사업거래라고 불림).
 - b) 납세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특수관계거래에 대해서 APA를 신청 할 수 있다.

납세자는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는 특수관계자 간의 사업거래에 대한 시장 가격결정 관련하여 사업관행 및 객관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호 의존적인 여러 개의 특수관계거래를 결합할 수 있다.

그러한 거래는 이전가격규정(Circular 66)에 의할 경우 당사자 간의 기능, 자산 및 위험이 유사하여야 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시장가격”, “물품”, “특수관계자”, “사분위 범위”의 정의는 특수관계자 간의 사업거래의 시장가격결정에 대한 이전가격규정(Circular 66)의 정의와 비슷하다.
2. “조세조역”은 베트남에서 적용되는 수입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서의 간추린 말이다. “외국 과세당국”의 뜻은 베트남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 또는 영토의 과세당국을 말한다.
3. “중요도”는 APA 신청서 상 그리고 APA를 시행할 때 특정 정보(데이터)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하나의 정보라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입하여 APA 관련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 해당 정보는 중요하다고 취급된다.

정보의 중요도는 베트남의 간사기준 320, “감사의 계획과 실시에 대한 중요도 레벨”과 함께 공포된 재무부의 2012.12.06 일자 시행규칙 214/2012/TT-BTC에 따라 양적 및 질적인 측면들이 고려된다.

제 5 조 APA승인에 대한 규칙

1. APA는 과세당국과(APA가 적용되는) 납세자 간 또는 베트남 과세당국, 조세조약을 맺은 외국의 과세당국 및 납세자간의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특수관계거래의 법인세 납부에 관련된 법률의 적용에 대한 협상에 이를 때 승인된다.
2. APA는 세무의 효과를 개선하고, 세법준수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시장가격을 결정하며, 세금 납부를 위한 적정이익을 산출하고, 이중과세 및 탈세를 방지하며, 특수관계거래의 시장가격에 대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한다. APA협상 기간 동안 납세자는 현행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3. APA규정내에서 특수관계거래의 시장가격결정방식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시장가격결정에 관련된 이전가격규정(Circular66)을 준수하여야 한

다. APA 상의 시장가격결정방식을 결정할 시, 방식의 본질과 산정 방식이 방식의 명칭보다 더 중요하다.

제 6 조 APA신청에 대한 권한

1. 재무부는 APA협상, 승인, 수정, 갱신, 철회 및 무효화에 대한 계획을 허락하여야 한다.
2. 국세청은 신청서를 수령하고, APA협상 진행, 승인, 수정, 갱신, 철회 및 무효화 하며, APA이행에 대한 감독 및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3. 지방세무서는 임무의 범위 내에서 APA협상 및 이에 대한 이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2 장 APA의 절차 및 내용

제 7 조 APA신청서 처리 절차

APA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되어야 한다.

- a) 신청서 공식 제출 전 상담
- b) 신청서 공식 제출
- c) APA신청서 심사
- d) APA협상
- dd) APA승인 및 이행

제 8 조 신청서 공식 제출 전 상담

1. 신청서 공식 제출 전 상담은 APA신청서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진행된다.
2. 신청서 공식 제출 전 상담 사례
 - a) 납세자가 APA체결을 의도 할 경우(최초 APA신청 또는 유효한 APA에 적용되는 추가거래 신청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문)



- b) 납세자는 현 APA의 만료일이 다가올 경우, 갱신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갱신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거나 납세자 스스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 c) 과세당국과 일방 APA에 서명한 납세자가 쌍방 APA 또는 다자간의 APA로 전환하고자 할시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d) 납세자가 APA승인에 관련된 과세당국의 제안에 동의할 경우
3. 납세자가 국세청에게 APA의 범위에 대한 상담을 서면으로 아래와 같이 요청할 경우
- a) 상담을 위한 서면 요청(본 시행규칙에 첨부된 서식 1/APA-TV)
 - b) 본 조항의 제4절에 따라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
4. 납세자는 과세당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납세자의 이름 및 주소, 특수관계거래 당사자의 이름 및 주소
 - b) APA의 유형 : 쌍방 APA 또는 다자간의 APA인 경우 관련된 국가 또는 영토의 이름
 - c)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 및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거래(해당하는 경우) : 특정거래 선정 및 기타 거래가 제외되는 사유
 - d) 특수관계거래의 가격범위
 - dd) 희망하는 APA 기간
 - e) APA 규정에 따른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기능, 자산 및 위험에 대한 분석
 - g) 비교가능성 분석, 데이터, 산정 방식, 사분위 범위 및 중요한 수정 사항 (해당하는 경우)을 포함한 시장가격결정을 위해 제안된 방식
 - h) APA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추정
 - I) 회사의 범위 및 납세자의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법인의 영업에 관련된 정보(사업의 종류, 자본, 구조, 사업범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그리고 APA가 적용되는 거래에 관련된 특수관계자
 - k) 납세자 사업구역 내에서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 요약

- l) 유사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해서 외국의 과세당국과 APA를 승인하였거나 신청한 경우(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거래
 - m) 해당 외국 과세당국의 의견(해당하는 경우)
 - n) 신청서 제출 시간, 연락처
 - o) APA실행에 영향을 주는 다른 문제들(시장분석, 사업전략, 정책, 다른 조세 채무에 끼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5. 상담 시, 납세자는 반드시 국세청이 APA신청서의 공식적인 제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 설명, 데이터 및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모든 상담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상담이 끝나고 30 영업일 이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상담자료 및 과세당국의 상황에 근거하여 APA신청서 공식 제출이 허락 되는 불허되었는지 공지해 주어야 한다.

제9조 신청서 공식 제출

1. APA 신청서는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서 공식 제출과 관련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국세청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서면으로 기한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연장 기간은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공식 APA 신청

신청서는 신고서(본 시행규칙에 첨부된 서식 2.APA-CT) 및 다음 자료로 구성된다.

 - a) 납세자 및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특수관계자 정보
 - a.1) 납세자 및 APA 당사자 성명 및 주소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인 경우 베트남이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및 영토의 과세당국을 포함함)
 - a.2) 납세자의 Tax codes (해당하는 경우 본점, 지점 및 부서의 tax codes 포함)



- a.3) 사업장 주소
- a.4)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의 주요 사업 종목에 대한 정보
- b) 특수관계거래, 특수관계거래 범위 및 기간
 - b.1)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 및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거래 특정거래 선정 사유(및 기타 거래가 제외되는 사유)
 - b.2) 특수관계거래의 가격범위
 - b.3) 적용되는 APA 유형
 - b.4) 적용기간
- c) 납세자 및 기업상태에 대한 정보
 - c.1) 기업의 연혁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 정보
 - c.2) 기업 및 납세자의 조직 구조
 - c.3) 가치사슬에 대한 개요 및 해당 가치사슬에서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가 속한 단계
 - c.4) APA 적용대상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흐름에 대한 상세 설명 및 (해당하는 경우) 다른 국가 또는 영토에서 이루어진 유사 특수관계 거래
 - c.5) 자본구성 및 관계(직·간접 투자, 대출, 구성원(partner)들 간의 투자 비율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c.6) 특수관계자의 사업 특성
 - c.7) 기업의 사업전략 개요 및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 c.8) 적용일 이후 5개년 사업계획 또는 경기순환 및 직전 3년간(APA 적용 연도와 다른 경우에 한함) 실적을 포함한 적용 기간 동안 납세자가 활용하는 사업전략 설명
- d) 산업 분석 정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납세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및 시장동향 분석

 - d.1) 납세자의 시장점유율

- d.2) 산업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기회 및 시장성장을 촉진하는 요소에 대한 기본 분석
- d.3) 다른 국가나 영토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 정책 및 규정과 같은 산업에 대한 기타 정보
- dd)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의 기능, 자산 및 위험 상세 분석
 - dd.1) 납세자 및 APA 거래상대방은 당사자들 간의 자원 및 인프라 배분을 포함하여(해당하는 경우), 기능, 자산 및 위험의 상세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자산이 지적 재산 및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자, 사용자,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한 등록 방법 및 등록시기, APA 적용대상 품목 혹은 서비스 가격산정구조 하에서의 무형 자산 가치를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 dd.2) 적용된 회계규정, 특수관계자 사용 통화(currency) 및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를 위해 사용된 통화
 - dd.3) 가치사슬(value chain), APA 적용 거래와 관련된 거래사슬 및 APA 적용 유사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
 - dd.4) APA 적용 및 비적용 거래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 공급 및 유통 과정
 - dd.5) APA 적용 및 비적용 거래와 관련된 납세자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세 설명
 - dd.6) 납세자의 주요 공급자 및 고객 정보
 - dd.7) (해당하는 경우) 기타 독립 당사자와의 거래 설명
- e) 재무정보
 - e.1) APA가 적용되지 직전 3년 간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납세자가 설립된 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영업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한 감사 받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수관계자는 (관련 있는 경우) APA가 적용되기 직전 3년 간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사업종목 또는 제품 결과를 반영하는 재무제표가 납세자 및 그 특수관계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감사 받은 재무제표 외에 해당 자료도 제출되어야 한다.

- e.2) 시장 및 재무 관련 기타 정보 및 계획(납세자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확장 계획 및 구조조정 계획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g) 시장가격결정 방식
-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와 관련된 시장가격결정을 위해 제안된 방식,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정보 출처, 제품가격 산정방식, 매출총이익률, 순이익률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g.1) APA 적용 거래에 적용된 시장가격결정을 위해 제안된 방식에 대한 상세 분석 선정 사유 및 해당 방식 사용이 어떻게 적절한 시장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입증
- g.2) 비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분석, 비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선택 사유, 가격결정을 위해 선정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와의 적합성 및 양립성 설명 (해당하는 경우) 비교를 위한 분석 시 본질적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정
- g.3) 특수관계거래 재무정보에 해당하는 APA 적용기간동안의(“적용기간”) 시장가격결정 방식 입증(가격, 매출총이익률, 순이익률,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에 관한 영수증 및 지출에 대한 수입금 및 지출금에 대한 추정된 영향력을 산정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g.4) 시장가격결정방식이 이전에 사용된 방식과 다른 경우, APA 적용기간 직전 3년 내지 5년동안 납세자의 재무정보에 적용한 시장가격결정방식에 대한 입증. 납세자가 설립된 지 3년 이하인 경우, 영업기간에 시장가격 결정방식을 적용한다.
- g.5)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에 의해 APA가 적용되는 거래와 유사한 기타 특수관계거래에 적용된 시장가격결정방식에 대한 일반정보

- g.6) 납세자가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유사한 사업 거래를 독립당사자와 수행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독립거래의 가격결정에 대한 규모 및 설명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독립거래가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h) APA 합의 및 시행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현저하게 변경시키는 중요한 추정.
- 주로 다음과 같다.
- h.1) APA 특수관계자의 기여비율 변동
 - h.2) 기능, 사업에 사용된 자산 및 사업하는 동안 납세자가 부담한 위험의 변동(무형자산, 지적 자산 등에 대한 추가 투자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회계방식 변동
 - h.3) 조세정책 및 외국환 관리에 대한 변동
 - h.4) 사업허가증 발급, 시장 및 납세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변동(제품 판매, 제품의 반품 또는 파손에 대한 금지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I) APA 적용거래와 관련 지역에서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정보 국내법 및 관련 조세조약간의 관계(이중과세 발생 또는, (해당하는 경우) 조세 채무 미발생 상황 포함)
- k) APA 적용거래와 유사하게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에 의한 특수관계 거래에 적용되는 APA 체결본의 복사본
- l) 소유권 계약, 서비스 사용, 판매, 유통권리, 개발연구 등, APA 적용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 간 계약서 및 법적합의서 복사본
- m)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기타 정보로서 조세, 세제인센티브 등과 같은 국제조세, 조사결과(이전가격조사 포함),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에 대한 결정 및 통지에 대한 기타 사안



3. APA신청서는 베트남어로 3부 작성된다 쌍방 APA 또는 다자가 APA는 베트남어로 작성되며 영문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기타의 언어로 작성된 원본 문서는(쌍방APA 또는 다자간 APA를 위해) 베트남어 및 영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납세자는 번역본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하고 번역 내용에 책임을 진다.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 외에 납세자는 또한 해당 문서의 소프트 카피를 제공해야 한다.

APA신청에 너무 많은 문서가 첨부되는 경우 (예를 들어, 비교가능성 분석 및 가격범위 결정을 위해 선정된 회사목록 등), 납세자는 그 내용을 요약 및 설명하고 과세당국이 필요 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문서가 보존되는 위치와 방식을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4. 납세자가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를 신청하는 경우, 베트남 과세당국 및 외국 과세당국에 제출된 문서 내 정보 및 데이터는 유사해야 하며 최소한 위에 언급된 정보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0조 APA 신청서 심사 절차

1. APA 신청서는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의해 심사된다. 심사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은 기간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과 납세자는 APA 신청 처리 관련 조치에 대한 계획 및 순서를 합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3. 국세청은 필요 시 APA 신청 심사 기간 중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a) APA 신청 관련 정보 및 데이터 확인을 위해 납세자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납세자와 협력하도록 요청한다.
 - b) 납세자 사업구역(다양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소 포함)에서 조사를 수행한다.

4. APA를 위한 APA신청서 심사는 과세당국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와 외국 과세 당국과의 협상을 위한 기초로서 시장가격결정방식을 심사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의 충분성과 객관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심사는 다음 사항으로 구성된다.
 - a)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 및 데이터와 사업, 자본투자, 회계 등에 관한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검색, 평가 및 수집
 - b) 기능, 자산 (사업, 자금할당, 일반영업비 지급 등에 기여하는 인프라의 사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사업기간 동안 납세자가 부담하는 위험 (범위 결정, 미판매 제품 위험, 신용 및 지급 위험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 및 증거 검색, 평가 및 수집
 - c) 비교가능성 분석 정보 및 증거 검색, 평가 및 수집(납세자의 고객, 공급자 및 경쟁자에 대한 정보 검색 포함); 납세자의 사업 성격에 적합한 시장가격 결정방식 검색 및 선정
 - d) 제3자로부터 수집한(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포함) 정보 및 데이터 검색, 확인 및 분석
 - dd) 중요한 추정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중요한 추정의 합리성 평가
5. 납세자 사업구역에서의 협의 또는 조사 내용은 과세당국 및 납세자가 기록한다.
6. 적용된 APA가 쌍방 APA 또는 다자가 APA이고, 외국 과세당국이 납세자로 하여금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정보가 최초 신청 또는 추가 신청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문) APA에 참여하는 과세당국의 모든 관할공무원이 APA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의 유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는 해당 문서를 과세당국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7. 신청을 처리하는 동안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조역의 정보교환조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납세자로부터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교환된 정보, APA협의 및 체결 기간 동안 문서 및 증거로 사용된 정보에 대해서 통지 받아야 한다.

제11조 APA 협상 및 논의

APA는 전화, 온라인 동영상 또는 우편을 사용한 직접 또는 간접 회의를 통해 협의 및 논의될 수 있다.

1. 일방 APA

협상은 과세당국이 작성한 APA 초안위주로 이루어진다. APA초안은 사전에 납세자에게 송부될 수 있다.

2.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

관할 공무원인 과세당국의 대표자는 외국 과세당국의 관할 공무원에게 관련 조세조역의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APA 협상 내용을 통지한다. 관련 과세당국 간 쌍방 APA 또는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할 공무원 및 과세당국에 의해 합의된 경우, 납세자는 대표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한 문서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협상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간략하게 알릴 수 있으며 납세자로 하여금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정보, 데이터 또는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APA 승인 및 사용

1.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거나 관련 과세당국이 동의한 APA 최종안이라 하며 체결된다.
2. APA 최종안은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a) APA 특수관계자 성명 및 주소
 - b)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 c) APA가 적용되는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세금, 가격, 매출총이익률, 순이익률 산정을 위한 기초로서 시장가격 결정방식(적합한 경우 사분위수 범위 포함)

- d) APA 시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추정 (분석 및 예상 포함)
 - dd) 납세자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규정
 - e) 과세당국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규정
 - g) 시행시기
 - h) APA 관련 조세채무 이행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기타 규정
 - I) 해당하는 경우, 부록(용어 해석, 추가 설명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3. 일방 APA인 경우, 공식 승인에 대한 서면 통지문과 함께 과세당국이 최종본을 송부한다. 납세자의 법률대리인은 APA 최종본에 서명 날인하고 과세당국에 이를 다시 송부한다.
 4.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인 경우, 국세청은 국세청과 외국 과세당국이 합의한 조건을 기초로 하여 최종본을 작성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송부하며 납세자로 하여금 최종본의 내용에 대한 승인을 기재한 서면 답변을 하도록 요청한다.
 관련 과세당국의 대표자와 납세자의 법률대리인은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에 서명날인한다. 국세청은 쌍방 및 다자간 APA를 발표한다.
 5. APA의 공식언어는 베트남어이다.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인 경우 영문본이 사용될 수 있다.

제13조 APA 유형의 선택

1. 납세자는 APA 신청서 제출시 APA가 일방 APA인지, 쌍방APA인지 다자간 APA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2. APA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쌍방 APA또는 다자간 APA를 일방 APA로 변경하거나 일방 APA를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로 변경할 수 있다. APA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b) 베트남 과세당국과 외국 과세당국이 소정의 관례적인 협상 기간 이후 APA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 c) 베트남 과세당국과 외국 과세당국의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 절차를 따르면서 납세자의 승인을 받아 일방 APA를 쌍방 또는 다자간 APA로 변경하기로 상호합의한 경우

제14조 사분위 범위 결정을 위한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해 선택된 자료 및 정보

1. 기준 시장가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해 선택된 자료 및 정보는 법률에 따라 공시된 자료로 다음과 같다.
 - a) 감사 받은 재무제표
 - b) 산업 관련 정보 증권 시장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공시된 정보
 - c) 국가가 인정한 국가기관, 리서치 기관, 협회 및 전문가 조직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거나 제공된 정보
 - d) 인가를 받은 정보 제공업체로부터 수령한 정보
 - dd) 기타 공식적 자료
2. 비교가능성 분석 및 사분위 범위 결정을 위해 독립적인 업체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따라야 한다.
 - a) 국내 업체
 - b) 유사한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현지 국가의 업체
 - c) 아세안(ASEAN) 가입국에 있는 업체
 - d)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업체
 - dd) 전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

제15조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APA내용에 적합한 기술 및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가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 협상 및 설명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를 초빙하거나 고용할 수 있다. 독립적인 전문가가 제공한 의견서는 과세당국이 참고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독립적인 전문가는 APA 신청서가 처리되고 있는 동안 문서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법률에 따라 또한 전문가와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해당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신청서 철회 및 APA 협상 종결

1. 신청서는 철회될 수 있고 APA 협상은 APA가 승인되기 전에 언제든지 종결될 수 있다.
2. 납세자는 신청서 철회 또는 협상 종결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협상 종결을 신청한다.
 - a) APA 및 조세 채무에 관련된 해당 거래가 세무에 관련된 행정상 위반으로 인해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b) APA에 관련된 해당 거래가 탈세, 조세회피 또는 조세조약 남용을 위한 거래인 경우
 - c)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충분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전혀 제공하지 못한 경우
 - d) 납세자가 조세 관리를 위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dd) 과세당국이 쌍방 APA 또는 다자가 APA 협상을 종결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국세청은(APA가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인 경우) 납세자와 외국 과세당국에 APA 협상의 종결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APA 및 기타 규칙의 준수 감독

제17조 APA 이행 시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1. 납세자는 APA에 대한 협상, 승인 및 이행에 관련된 문서를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과세당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APA 연례보고서
 - a) 납세자는 APA 연례보고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b) 납세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시장 가격 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재무부가 발간한 2010년 4월 22일자 시행규칙 66/2010/TT-BTC에 포함된 특수관계거래 신고서 서식 GCN-01/QLT를 APA 연례보고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c) APA 연례보고서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c.1) 신고서 시식 3/APA-BC

c.2) 서술정보

- 납세자 사업의 기능, 자산 및 위험 변경, 특수관계거래의 과세 표준으로 APA에서 명시된 방식을 이용한 가격, 매출총이익률, 순이익률(해당하는 경우) 산정에 대한 내용
- APA 준수에 관한 내용(중요한 추정의 업데이트 또는 변경 포함)
- 서명된 APA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 채무 변경 내용 및 조세 채무 증감을 가져온 지표의 변경에 대한 내용
- APA 조건 및 관련 사안(세금에 관한 새로운 사안, 관련 분쟁 등)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데 관한 납세자의 의견

3. 과세당국 요청에 따른 보고

납세자는 APA 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 문서 또는 설명을 과세당국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비정기적 보고

APA의 지속이나 납세자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APA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사안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즉, 비정기적 보고) 보고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이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APA의 수정이나 종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하도록 지시한다.

5. 일방 APA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외국 과세당국의 결정에 의해 이중과세 또는 과세소득 변경이 발생되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당국의 해당 공무원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과세당국의 의무 및 권리

1. 과세당국은 위험 관리 규칙에 따라 납세자에 의한 APA 이행을 감독 하여야 한다. 감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a) 서명된 APA의 규정(시장 가격의 결정 방식 포함) 준수
 - b) APA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신고, 세금 납부 및 조정
 - c) 납세자가 제출한 정기적 및 비정기적 보고 내용 검토 및 확인
2. 과세당국에 의한 감독은 APA를 재심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제19조 상호합의 절차

1. 베트남 거주자로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를 체결하고자 하고 과세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한 상호합의 절차 개시신청서(서식 4/APA-MAP)를 제출하여야 한다.
 - a) APA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납세자의 이름, 주소, (해당하는 경우) Tax codes, APA당사자들간의 관계(조직도 포함)
 - b) 외국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외국 과세당국의 명칭 및 주소
 - c)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 신청에 대한 설명
 - d)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요약 설명
 - dd) 외국 과세당국이 회람한 관련 문서(체납세 징수 결정 및 특수관계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세 채무 결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APA 신청서는 해당 설명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국세청에 송부되어야 한다.
2. 상호합의 절차 및 공식적인 APA 신청 개시 신청 수 30일 이내에 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은 해당 조세조약에서의 상호합의 절차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의 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답변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과세당국은 해당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납세자에게 상호 합의한 요건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베트남 과세당국의 해당 공무원은 재무부 장관 및 조세조약에 따라 장관이 승인한자로 한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가 수리되고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의 집행을 감독하는 동안 베트남 과세당국과 외국 과세당국간의 연락망(문서 및 통지를 수령하고 송부하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0조 비밀유지

1.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세무법(Law on Tax administration) 제6조 제3항에 따라 APA의 절차 전반(문서 평가, 논의, 협상 및 APA 이행에 관한 모든 절차 포함)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비밀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2. APA 협상이 종료되면, APA 신청서는 철회되거나 취소되며, 공식적인 APA신청서 상 혹은 정보요청에 의해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 APA 연례보고서 및 비정기적 보고서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금 부과를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1조 APA가 이행되는 동안 과세소득 조정

1. APA가 이행되고 있는 동안 납세자는 과세소득을 APA에 명시된 가격, 매출총이익률이나 순이익률로 조정하여야 한다.
2. APA에 서명하기 전에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납세자는 과세당국이나 관할당국이 세무조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APA가 서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소득을 가격, 매출총이익률 및 순이익률로 조정하기 위해 추가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로 인해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차액과 가장 낮은 세율로 산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로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로 인해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은 정해진 바에 따라 환급된다.

3. 납세자가 APA 조건을 준수하지만, 분기 또는 연간 납부할 세금이 새로운 지출발생으로 인해 감소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지출 발생일 후 30일 이내에 해당 건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의견을 제시한 후 법인세 신고서를 변경해야 한다.
4. 납세자가 APA 적용대상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APA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거래를 하고, 해당 거래가 시장 가격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법 제34조(추가 세금신고서)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조정하기 위해 APA 상 과세소득산정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자의 정보 제공 책임

납세자는 APA의 협상, 체결 및 시행 처리 기간 동안 과세당국에 충분하고, 사실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납세자는 그러한 정보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4 장 APA의 효과

제23조 APA의 효과

1. 승인된 APA는 APA의 조건을 납세자가 엄격하게 준수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2. APA는 최대 5년간 유효하다. APA의 효력은 납세자가 APA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발생한다.

제24조 APA 연장

1. APA는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2. APA는 다음의 경우 연장될 수 있다.
 - a) 특수관계거래의 범위 및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 b) 중요한 추정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 c)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사분위 범위 또는 매출총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연장 기간 동안 안정된 경우

3. APA 연장 절차

- a) 납세자는 서명된 APA 만기일 최소 6개월 이전에 과세당국에 APA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b) APA 연장 신청은 APA 신청과 비슷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25조 APA 변경

1. APA는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APA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중요한 추정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변경된 경우
 - b) 법률 변경이 APA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c) 외국 과세당국의 해당 공무원이 APA 변경을 요청하고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국세청이 동의한 경우
 - d) 기타(APA 당사들이 합의하는 경우 등)

제26조 APA 취소

1. APA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납세자 또는 해당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가 APA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b) 납세자가 APA 신청서, APA 연례보고서 또는 비정기적 보고서에서 중대한 실수를 한 경우
 - c)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연례보고서 또는 비정기적 보고서에서 충분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d)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APA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경우
 - dd) 외국 과세당국이 APA 취소를 요청하고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국세청이 동의한 경우
 - e) 납세자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APA 취소를 신청한다.

2. 국세청은 다음을 포함하여 APA 취소 내용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 a) 취소 사유
 - b) 취소일
3. 취소일로부터 납세자는 특수관계거래의 시장 가격 결정에 대하여 현재 유효한 규정에 따라 취소된 APA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 APA 철회

1. APA가 철회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납세자가 APA 변경을 신고하거나 요청할 때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b) 외국 과세당국이 APA 철회를 요청하고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국세청이 동의한 경우
2. 국세청은 다음을 포함하여 APA 철회 내용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 a) 철회 사유
 - b) 철회일(해당 기간의 첫 날부터)
3. 철회일로부터 납세자는 철회된 APA 대상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거래의 시장 가격결정에 대한 현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행

제28조 조세 관련 행정적 조치 위반에 대한 벌금

APA 기간 동안 납세자가 조세 관련 행정적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29조 효력

본 시행규칙은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기관이나 개인은 본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이를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베트남 투자법



베트남 투자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국회는 투자법을 공포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범위

이 법은 베트남 내에서의 사업 투자와 해외에서의 사업투자를 다룬다.

제2조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투자에 관련된 투자자, 다른 조직과 개인(앞으로 사업실체 라고 부른다)에게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아래 단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등록사무소(Register office) 는 투자 등록 허가서를 발행하고 변경하고 취소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뜻한다.
2. 투자 프로젝트는 특정한 행정구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에 중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자본투자를 하겠다는 제안의 집합물을 뜻한다.
3. 확대 프로젝트는 규모를 확대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용하고, 오염을 감소시키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뜻한다.
4.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최초로 실행되는 프로젝트 또는 현재 가동 중인 다른 프로젝트와는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뜻한다.

5. 사업투자는 사업조직을 설립하거나; 자본을 출자하거나; 사업 조직의 주식을 사거나 사업조직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계약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투자자의 자본 투자를 뜻한다.
6. 투자 등록 증명서는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등록된 정보를 담고 있는 종이 또는 전자문서를 뜻한다.
7. 국가 투자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경영업무에 이바지하고 투자자의 투자 진행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전반적인 투자의 검색, 평가 그리고 분석을 위한 전문적 정보 체계를 뜻한다.
8. 공공기관과 사인간의 조합계약(앞으로 PPP계약이라 부른다)은 이 법 제27조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과 투자자 혹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9. 업무협동계약은 새로운 사업 조직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 협력과 이익, 물품의 분배를 위하여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10. 수출가공지역(Export-processing zone)은 수출되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생산되는 물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데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특화된 산업공단을 뜻한다.
11. 산업공단(Industrial park)이란 특정한 지리적 경계를 가진, 산업적 생산과 산업적 생산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특화된 지역을 뜻한다.
12. 경제지역은 투자를 유치하고 사회경제를 발전시키며 국방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복수의 섹타로 구성된 특정한 지리적 경계를 가진 지역을 뜻한다.
13. 투자자는 사업투자를 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뜻한다. 투자자는 베트남 투자자, 외국 투자자, 외국에서 투자된 사업조직을 포함한다.
14. 외국 투자자는 베트남 내에서 사업투자를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률 하에서 설립된 조직을 뜻한다.
15. 베트남 투자자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그 구성원이나 주식 소유자가 외국 투자자가 아닌 사업조직을 뜻한다.



16. 사업조직은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되고 활동하는 조직을 뜻한다. 사업 조직은 회사, 합작사, 합작 연합, 기타 사업투자를 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17. 외국 투자 기업조직은 그 구성원이나 주식 소유자가 외국 투자자인 사업을 뜻한다.
18. 자본은 사업에 투자된 금전 기타 자산을 뜻한다.

제 4 조 투자법, 관련 법률과 국제 조약의 적용

1. 베트남 영토 내에서 행하여 지는 투자는 이 법과 관련 법률과 부합하여야 한다.
2. 이 법의 금지된 사업분야, 조건부 사업분야 또는 투자절차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률과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안보법, 신용조직법, 보험법, 석유법에 규정된 투자절차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이 법의 규정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한 국제 조약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적어도 일방당사자가 이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 투자자이거나 사업조직인 계약에 관하여, 각 당사자는 합의가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외국 법률 혹은 국제관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 5 조 사업투자에 관한 정책

1. 투자자는 이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사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이 법 및 관련된 법률에 따라 자주적으로 사업투자를 결정할 수 있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여 자금, 지원 기금, 토지와 기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3. 자산, 자본, 소득, 기타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해관계는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호된다.
4. 국가는 투자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투자자들의 사업투자를 장려하거나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 섹터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소개하여야 한다.

5.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사업투자에 관한 국제조약은 국가에 의해 지지된다.

제6 조 금지 사업분야

1. 아래 활동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 a) 부록 1에 규정된 마약물질의 거래
 - b) 이 법의 부록 2에 규정된 화학물질과 미네랄의 거래
 - c) 멸종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부록 1에 규정된 야생 동식물 종의 거래; 이 협약의 부록 3의 1 그룹에 있는 희귀 혹은 멸종 동식물종의 거래
 - d) 매춘
 - dd) 인신매매; 사람의 조직이나 장기의 거래
 - e) 인간 복제에 관한 사업
2. 정부의 규정은 분석, 시험, 과학적 연구, 의학적 연구, 의약품의 생산, 범죄의 수사, 국방과 안보의 기간 동안에 이 조의 제1항의 a), b), c) 목에 언급된 생산과 그 생산물의 이용에 적용된다.

제6 조 조건부 사업분야

1. 조건부 사업분야는 국방과 안보, 사회질서와 안녕, 사회 도덕 또는 공공의 건강의 이유 때문에 투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사업 분야이다.
2. 조건부 사업분야의 목록은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3. 이 조의 2항에 언급된 사업분야에 투자하는 조건은 법률, 훈령(Ordinances), 명령(Decrees),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에 명시된다. 부처와 부처 기관, 인민회의(the People's Council),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s), 그리고 기타 사업실체는 사업투자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



4. 사업투자의 조건은 이 조의 제1항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투자자들의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5. 조건부 사업분야와 그에 상응하는 조건은 국가 회사 등록 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사업투자 조건의 공고와 통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 8 조 금지 사업분야의 목록과 조건부 사업분야의 목록의 수정

각 시기의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국가 경영 필요에 따라, 정부는 금지 사업분야와 조건부 사업분야를 검토하고 국회에 제6조와 제7조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 2 장 투자 보장

제 9 조 자산 소유권의 보장

1. 투자자의 합법적인 자산은 국유화되거나 행정조치로서 몰수되지 않는다.
2. 국방과 안보, 국가적 이해, 국가 긴급사태, 자연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이유로 자산이 국가에 매도되거나 징발될 경우에는, 투자자는 재산징발법의 규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받거나 보상받는다.

제10조 사업투자의 보장

1. 국가는 투자자에게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것을 요청할 수 없다.
 - a) 국내 재화나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 사용케 하거나, 베트남 생산자나 용역제공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만을 구매, 사용하는 것
 - b) 어떤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거나, 베트남에서 수출되거나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양, 질, 형태를 제안하는 것

- c) 수출된 물건의 양, 질과 동등한 양, 질의 재화를 수입하거나 수출로 인하여 벌어들인 외화를 수입 소요와 수지를 맞추는 것
 - d) 일정한 비율의 수입대체를 달성하는 것
 - dd) 국내 연구와 개발의 일정한 수준/수치를 달성하는 것
 - e) 베트남 내의 또는 해외의 특정한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것
 - g)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의거, 어느 장소에 주사무소를 갖는 것
2. 사회 경제 개발의 방향, 외환 운용정책과 각 시기의 외환 거래에서 수지를 맞추는 능력에 따라. 수상은 국회, 수상의 투자정책에 대한 결정에 따라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와 기타 기반시설의 개발(infrastructural development)에 대한 중요 투자 프로젝트의 외국 통화에 대한 수요의 이행을 보장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 투자자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보장

베트남 정부에 대한 모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뒤, 외국 투자자는 다음 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 1. 자본금과 청산금;
- 2. 사업투자로부터의 수입;
- 3. 투자자의 합법적 소유하에 있는 금전, 기타 자산

제12조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보증

- 1. 수상은 국회, 수상의 투자 정책에 대한 결정에 따라야 하는 투자프로젝트와 기타 기반시설의 개발(infrastructural development)에 대한 중요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권한 있는 당국이나 국가 소유 회사에 의하여 집행되는 계약에 대한 보증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13조 법률변경에 관한 사업투자의 보장

1. 현재 투자자가 향유하는 것보다 유리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법이 공표될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프로젝트가 인센티브를 향유하는 남은 기간동안 신규의 인센티브를 계속 향유한다.
2. 현재 투자자가 향유하는 것보다 불리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법이 공표될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프로젝트가 인센티브를 향유하는 남은 기간 동안 현행의 인센티브를 계속 향유한다.
3. 법의 규정이 국방과 안보, 사회질서와 보안, 사회 도덕, 공공의 건강이나 환경보호의 이유로 변경되었을 때는 이 조의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만일 이 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더 이상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음 해결방법의 하나 또는 몇 개를 채택한다.
 - a) 투자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투자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 b) 투자 프로젝트의 대상을 조정한다.
 - c) 투자자가 손해에서 회복하는 것을 지원한다.
5. 이 조의 제4항이 규정하는 투자 보장수단에 관하여, 투자자는 신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투자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

1. 베트남에서의 사업투자를 둘러싼 분쟁은 협상과 보정으로 해결한다. 만일 분쟁이 협상과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은 이 조의 제2, 3, 4항에 따라 중재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베트남 투자자와 외국 투자 사업조직 사이의, 또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의 사업투자에 대한 베트남 투자자, 외국 투자 사업조직과 규제 당국 사이의 각 분쟁은 이 조의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의 중재 또는 법원에 의하여 해결한다.
3. 어느 일방이 외국 투자자이거나 이 법의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조직인 투자자들 간의 각 분쟁은 다음의 기관/조직의 하나에 의하여 해결한다.

- a) 베트남 법원
 - b) 베트남의 중재기관
 - c) 외국 중재기관
 - d) 국제 중재기관
 - dd) 분쟁 당사자에 의하여 설립된 중재기관
4. 베트남의 영토 내에서의 사업투자에 대한 외국 투자자와 규제 당국 사이의 각 분쟁은, 달리 합의되거나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에 서 달리 규정하니 않는 한, 베트남의 중재기관 또는 베트남 법원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3 장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

제 1 부 : 투자 인센티브

제15조 투자 인센티브의 형태와 수익자

1. 인센티브의 형태
 - a) 일정한 기간 또는 프로젝트 집행 동안 일반보다 낮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 법인세의 면제, 공제
 - b) 고정자산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 감축하는 것;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원자재, 필수용품, 부품
 - c)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의 면제, 감축
2. 투자 인센티브의 수익자
 - a) 이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업분야에 하는 프로젝트 투자;
 - b) 이 법 제 16조 제2항에 규정된 투자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행정부분에 하는 투자;
 - c) 자본 투자금이 최소한 6조 베트남 동이거나, 적어도 6조 베트남 동이 투자등록허가서 또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이 발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출되는 프로젝트



- d) 적어도 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촌지역에서의 투자 프로젝트;
 - dd) 하이 테크 회사, 과학 기술 회사, 그리고 과학 기술 조직
3. 투자 인센티브는 신규의 프로젝트와 확대 프로젝트에 제공된다. 각 형태의 인센티브 수준은 세금과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명시된다.
4. 이 조 제2항의 b, c, d 목의 규정은 광물 채굴 프로젝트, 차량 제조를 제외한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재화의 제조/판매프로젝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업분야 와 행정부문

1.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업분야
- a) 하이테크 활동, 하이테크 부수 생산품; 연구와 개발
 - b) 새로운 물질, 새로운 에너지, 청정(clean) 에너지, 재생 에너지의 생산; 최소한 30%의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의 생산; 에너지 절약 상품
 - c) 핵심 전자, 기계 상품, 농업용 기계류, 차량, 차량 부품의 생산; 선박 건조
 - d) 직물과 섬유산업, 가죽과 신발류 산업에 이용되는 부수 상품의 생산, 이항의 c목에 있는 상품
 - dd) IT 상품, 소프트웨어 상품, 디지털 콘텐츠(contentens)의 생산
 - e)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경작과 가공; 조림과 산림보호; 소금의 생산; 어업과 어업에 부수적인 용역; 식물 개량품종, 가축사료(animal breads), 생물공학적인 상품의 생산
 - g) 집수, 수처리, 물의 재활용
 - h)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운용, 관리에의 투자; 도시지역에서의 공중 승객 운송의 개발;
 - i) 취학전 교육, 의무교육, 여가 교육
 - k) 의학 실험과 처치;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의 성분, 필수 의약품, 성교로 전염되는 질병의 방지와 처치에 대한 약품, 백신, 생물학적인 약제,

약초(herbal)과 약품, 한약, 신약 발명에 이용되는 예비기술(preparation technology)과/또는 생물공학에 대한 과학연구

- l) 장애인 또는 전문 체육인을 위한 체육시설에의 투자;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
 - m) 노인(병) 센터, 정신건강 센터, 고엽제 환자의 처치에의 투자; 노인, 장애인, 고아, 유랑아를 위한 치료센터
 - n) 국민의 신용기금, 소액대출 기구
2.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정부부문
 - a) 불리한 지역에 있거나 극도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행정부문
 - b) 산업공단, 수출가공 구역, 하이테크 구역, 경제구역
 3.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업 분야의 목록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정부부문의 목록을 집계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투자 인센티브의 절차

1. 프로젝트의 투자등록허가가 승인되면,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허가서에 투자 인센티브, 근거, 그리고 투자인센티브 제공의 조건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만일 투자등록허가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투자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 투자자에게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 경우에 투자자는 투자 인센티브를 결정하고, 이 법의 제15조, 제16조의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조건따라 세무당국, 재정당국 또는 관세당국에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 투자 인센티브의 확대

특히 중요한 분야나 행정-경제 단위가 필요로 할 때 정부는 국회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있는 것과 다른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2 부 : 투자지원

제19조 투자지원의 형태

1. 투자지원의 형태

- a) 프로젝트의 외곽지역을 넘어서까지 기술적 기반시설, 사회적 기반 시설의 개발에 대한 지원;
- b) 인적자원의 훈련과 개발에 대한 지원;
- c) 신용지원;
- d) 사업 부동산에의 접근에 대한 지원; 제조설비의 도시지역으로부터 재배치 하는 것에 대한 지원;
- dd) 과학적 기술적 연구,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
- e) 시장개발, 정보제공에 대한 지원
- g) 기술과 개발에 대한 지원

2. 정부는 중소기업, 하이테크 회사, 과학기술 회사와 과학기술 조직, 농업에 투자하거나 농촌에 투자하는 회사, 교육, 법률의 보급에 투자 하는 회사, 기타 각 시기에서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부합하는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이 조의 제1항의 투자지원 형태를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의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지원

1.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의 개발에 대한 승인된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에 따라, 각 부처, 부처 기관, 지역 인민위원회는 투자개발계획을 세우고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 구역의 특별한 섹터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기술적 기반시설, 사회적 기반시설의 건설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불리한 지역 또는 극도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공업단지의 외곽 지역 안팎으로 기술적 기반시설, 사회적 기반시설을 일원적으로 개발 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과 무료 자본 대출을 통한 개발에의 자본 투자 부분을 지원하여야한다.

3. 국가는 경제구역과 하이테크구역에서의 기술적 기반시설, 사회적 기반 시설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과 무료 자본 대출을 통한 개발에의 자본투자 부분을 지원하고, 기타 자본 유동화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업단지,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에서의 근로자를 위한 주거, 공공시설, 오락시설의 개발

1.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가된 공업단지,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의 개발에 대한 승인된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에 따라, 지역 인민위원회는 투자 개발계획을 세우고 공업단지,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 공공시설, 오락시설의 개발을 위한 토지를 준비하여야 한다.
2. 만일 공업단지,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 공공시설, 오락시설의 개발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때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주거, 공공시설, 오락시설의 개발을 위한 토지 면적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업단지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베트남 내에서의 투자

제1부 : 투자의 형태

제22조 사업조직의 설립에의 투자

1. 투자자는 법에 따라 사업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사업조직을 설립하기 전에 외국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법 제37조의 절차에 따른 투자등록허가서를 신청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이 조 제3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투자자의 정관자본금
 - b) 투자 형태, 활동범위, 베트남 파트너, 기타 다른 사항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자 자본을 매입하거나 계약에 따른 투자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직을 통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외국 투자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업조직에 투자된 불확정적인 양의 정관 자본금을 소유할 수 있다.
 - a) 목록에 있는 회사, 공공 회사, 보험 거래 조직과 보험투자 펀드에 있는 외국 투자자의 재산(holdings)은 보험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b) 지분화되거나(equitized) 전환된 국가소유의 회사에 있는 외국 투자자의 재산은 국가 소유 회사의 지분화와 전환에 관한 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c) 이 항의 a목, b목에서 말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외국 투자자의 재산에 관하여는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제23조 외국투자 사업조직에 위한 투자

1. 사업조직을 설립하고, 자본을 출자하고, 주식 또는 사업조직의 출자 자본을 구매하거나, 아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협력계약 하에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에는 외국투자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외국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절차를 따라야 한다.
 - a)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이 외국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사업조직이 조합(partnership)이라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일 때
 - b)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이 이 항의 a목에서 언급한 사업조직이 소유한 경우
 - c)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이 이 항의 a목에서 언급한 외국인과 사업조직이 소유한 경우
2. 이 항의 a, b, c에서 언급한 경우와 다른 경우에 있는 외국 투자 사업조직은 베트남 투자자가 사업조직을 설립할 때, 자본을 출자할 때,

주식 또는 사업조직의 출자 자본을 구매할 때, 사업협력계약 하에서 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투자절차를 따라야 한다.

3. 베트남에 설립되어 있는 외국투자 사업조직이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가질 때, 그러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는 새로운 사업조직을 설립함이 없이 진행된다.
4. 외국 투자자와 외국투자 사업조직의 투자 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업조직을 설립하는데에 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기업조직의 출자자본을 매입함으로써 투자하기

1. 투자자는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사업조직의 출자자본을 매입할 권리가 있다.
2.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사업조직의 출자자본을 매입함으로써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는 이 법의 제25조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사업조직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기업조직의 출자자본을 매입하는 방법과 조건

1. 외국 투자자는 다음 방법으로 사업조직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다.
 - a) 기업공개(IPOs) 또는 추가 발행을 통한 주식회사 주식의 매입
 - b) 유한책임회사와 조합에의 자본 출자
 - c) 이 조의 a목과 b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업조직에의 자본 출자
2. 외국투자자는 다음 방법으로 사업조직의 주식 또는 출자자본을 구입할 수 있다.
 - a) 회사나 주주로부터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
 - b) 사원으로부터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본을 구입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
 - c)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출자자본을 구입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



- d) 이 조의 a, b, c목에서 언급한 것과 다른 사업조직에의 출자를 그 구성원으로부터 매입하는 것
3. 외국인이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서의 방법으로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기업조직의 출자 자본을 매입하는 것은 이 법의 제22조 제1항의 a목과 b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6조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기업조직의 출자 자본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절차

1. 투자자는 다음 경우에 자본 출자, 주식이나 출자 자본의 매수를 등록하여야 한다.
 - a) 투자자가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조직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자본을 매수할 때
 - b) 자본금이 출자되거나 주식/출자 자본이 매수된 이후 사업조직의 정관 자본금의 51% 이상이 외국투자자 그리고/또는 이 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한 사업조직이 소유한 때
2. 자본 출자 또는 주식/출자자본 매수의 등록 신청
 - a) 자본 출자 또는 주식/출자자본 매수의 등록에 대한 서면 신청. 투자가 이루어 지는 사업조직, 투자가 이루어진 후의 외국 투자자의 소유에 관한 정보를 명기하여야 한다.
 - b) 신분증(ID)카드 또는 여권의 사본(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설립허가증의 사본 혹은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그와 동등한 서류 (투자자가 조직일 경우)
3. 자본 출자 또는 주식/출자자본 매수의 등록 절차
 - a) 투자자는 사업조직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계획투자부서에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b) 만일 자본 출자 또는 주식/출자자본 매수가 이 법 제22조 제1항 a목과 b목의 조건을 충족하면, 계획투자부서는 투자자가 법에 규정된 주주/사원 변경절차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적법한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서면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만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획투자부서는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4. 이 조에서 언급한 경우 이외에는 투자자는 자본을 출자하거나 또는 주식/출자자본을 매수할 때 법이 규정한대로 주주/사원 변경을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만일 그러한 투자자가 자본 출자 또는 주식/출자자본 매수의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이 조 제3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7조 PPP계약 하의 투자

1. 투자자와 프로젝트 운영 회사는 신규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건설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하고, 운영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권한있는 관청과 PPP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정부는 PPP계약하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위한 분야, 조건,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업무협력계약하에서의 투자

1. 베트남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력계약은 사법에 따라 집행된다.
2. 이 법 제37조의 투자등록증명서의 발급절차는 베트남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 혹은 외국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력계약에 적용된다.
3. 업무협력계약의 당사자는 업무협력계약을 집행할 조종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조종위원회의 기능, 업무, 권한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다.

제29조 업무협력계약의 내용

1. 업무협력계약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a)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소, 권한 있는 대표자; 사업주소 또는 프로젝트 주소
 - b) 목적과 사업의 범위



- c) 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공헌과 이익의 분배
 - d) 계약의 스케줄과 기간
 - dd) 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e) 계약의 조정, 이전, 종료
 - g) 계약 위반의 책임; 분쟁해결의 방법
2. 업무협력계약의 집행 중에 당사자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업무협력으로부터 파생한 자산 사용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3. 업무협력계약의 당사자는 법에 위반하지 않는 기타 합의를 할 수 있다.

제 2 부 : 투자 정책의 결정에 관한 절차

제30조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국회의 권한

공공투자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국회는 아래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한다.

1.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에 잠재적으로 심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 다음을 포함한다.
 - a) 핵발전소
 - b)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경관 보호구역, 50헥타 이상의 시험림; 50헥타 이상의 상류 보호림; 500헥타 이상의 바람, 모래, 파도, 토지 개간, 환경보호를 위한 보호림, 1,000헥타 이상의 생산림에 있는 토지의 목적을 변경하는 프로젝트
2. 500헥타 이상의 쌀이나 두가지 이상의 작물의 재배를 위한 토지의 목적을 변경하는 프로젝트.
3. 고지에서의 20,000명 이상, 다른 지역에서는 50,000명 이상 사람의 이주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4. 국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별한 정책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제31조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수상의 권한

공공투자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수상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프로젝트와 이 법 제30조에서 말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수상은 아래 프로젝트의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한다.

1. 자본금 출처와 관계없이 다음의 프로젝트
 - a) 고지에서의 10,000명 이상, 다른 지역에서는 20,000명 이상 사람의 이주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 b) 공항, 항공운송의 건설과 운영
 - c) 국가 항만의 건설과 운영
 - d) 석유탐사, 채굴과 정제
 - dd) 도박과 카지노 서비스
 - e) 담배 제조
 - g) 산업공단, 수출가공지역 그리고 경제구역 내 특화된 섹터의 사회기반 시설의 개발
 - h) 골프 코스의 건설과 운영
2. 투자가 5,000,000,000동 이상으로서, 이 조 제1항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프로젝트
3. 해상운송,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통신서비스의 제공; 조립, 출판, 신문, 전적으로 외국이 투자하는 과학 기술 조직이나 과학 기술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외국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
4. 법의 규정에 따라 수상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기타 프로젝트

제32조 지역 인민위원회의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권한

1. 공공투자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인민위원회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프로젝트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서 말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지역 인민위원회는 아래 프로젝트의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한다.



- a) 경매나 청구나 이전 없이 국가에 의하여 할당되거나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프로젝트;
 - b) 기술이전에 관한 법에 규정된 이전이 제한된 기술 목록에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2.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하여 승인된 계획에 부합하는 공업단지, 수출가공 구역, 하이테크 구역 그리고 경제구역에서 집행되는 이 조 제1항에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정책은 지역 인민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제33조 지역 인민위원회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

1. 프로젝트 서류는 아래 것들을 포함한다 :

- a) 투자 프로젝트의 집행허가에 대한 서면의 요청서
- b) 신분증(ID) 카드 또는 여권의 사본(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설립허가증의 사본 혹은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그와 동등한 서류 (투자자가 조직일 경우)
- c) 프로젝트의 투자자, 투자대상, 투자규모, 투자 자본금,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법, 투자의 위치와 기간, 노동 수요, 투자 인센티브의 요구, 프로젝트의 사회 경제적 효과의 평가를 명시한 투자 제안
- d) 다음 서류 중 하나의 사본 : 투자자의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모회사의 약속;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재정기관의 약속; 투자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보증; 투자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설명
- dd) 토지사용에 대한 요구; 만일 프로젝트가 국가에 의하여 할당되거나 임대한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국가에 의하여 토지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혹은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위한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타 서류의 사본.
- e) 이 법 제32조 제1항 b목에서 언급한 프로젝트에의 기술적용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은 기술의 명칭, 원천, 기술 과정 도표, 주된 사양, 기계 장비류의 조건, 주요 기술 라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g) 업무협력계약(프로젝트가 업무협력계약 하에서 집행되는 경우)

2. 투자자는 이 조 제항에 규정된 문서를 등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투자자에게 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적법한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이 조 제6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요청받은 기관은 등록 사무소에 서면 회신을 보내야 한다.
5. 등록사무소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대로 평가하는 데에 대한 기초로서 토지당국은 지도 사본을 제공하고 계획당국은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투자 프로젝트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지역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a)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 프로젝트의 투자자, 업종, 규모, 위치와 기간에 관한 정보
 - b)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조건(만일 있다면)의 실천에 관한 평가
 - c) 투자 프로젝트의 기본 사회경제적 개발계획, 산업계획 그리고 투지 계획과의 일치성에 대한 평가; 프로젝트의 사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
 - d) 투자 인센티브와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조건(만일 있다면)의 실천에 대한 평가
 - dd) 투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투자자의 권리의 법적 기처에 대한 평가; 만일 토지의 할당, 토지의 임대, 토지 용도의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토지 사용,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투자자의 조건의 실천 여부가 토지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 되어야 한다.



- e) 투자 플젝트에 적용된 기술의 평가(만일 프로젝트가 이 법 제32조 제1항b목에 언급된 기술의 하나일 경우)
- 7. 프로젝트 문서와 평가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역 인민위원회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하여야 한다. 거절할 경우, 설명을 제공한 서면 답변을 하여야 한다.
- 8. 지역 인민위원회가 발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은 다음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 a) 프로젝트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름
 - b) 프로젝트의 명칭, 업종, 규모, 투자 자본과 기간
 - c) 프로젝트의 위치
 - d) 프로젝트 집행의 일정 : 자본 출자와 자본 조달에 대한 일정; 사회기반시설의 개발과 착공식(만일 있다면)에 대한 일정; 각 단계의 일정 (만일 프로젝트가 복수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면)
 - dd) 적용된 기술
 - e) 투자 인센티브, 지원과 조건(만일 있다면)
 - g)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유효한 기간
- 9. 정부는 그 투자정책이 지역 인민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문서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상에 의한 투자정책의 결정에 대한 서류와 절차

1. 투자자는 투자 문서를 등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는 다음 것들로 구성된다.
 - a) 이 법 제33조 제1항에 언급된 서류
 - b) 토지 정리(clearance)와 이주 계획(만일 있다면)
 - c) 환경영향과 환경보호대책의 예비 평가
 - d) 프로젝트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2. 합법적인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그것을 계획투자부에 송부하고, 이 조 제6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기관은 등록사무소와 계획투자부에 서면 회신을 송부하여야 한다.
4.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지역인민위원회에 프로젝트 문서의 평가를 요청하고,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대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에게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투자부는 투자문서를 평가하고 이 법 제33조 제5항에 규정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에게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다.
6. 수상은 이 법 제33조 제8항에 규정된 투자정책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정부는 그 투자정책이 수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문서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 국회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대한 서류와 절차

1. 투자자는 투자 문서를 등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는 다음 것들로 구성된다.
 - a) 이 법 제33조 제1항에 언급된 서류
 - b) 토지 정리(clearance)와 이주 계획(만일 있다면)
 - c) 환경영향과 환경보호대책의 예비 평가
 - d) 프로젝트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 dd) 제안된 특별 정책(만일 있다면)
2. 합법적인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그것을 계획투자부에 송부하고, 계획투자부는 보고서를 수상에게 보내어 평가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는 프로젝트 문서를 평가하고 이 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회의 총회가 열리기 적어도 60일 이전에 정부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국회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은 다음 것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 a) 정부의 보고서
 - b)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프로젝트 문서
 - c) 평가위원회에서 작성된 평가보고서
 - d) 관련 서류
6. 평가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 a) 국회에 의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프로젝트 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의 충족
 - b) 프로젝트의 필요성
 - c) 프로젝트가 기본적 사회 경제적인 개발계획, 산업계획 그리고 토지 기타 자원계획과 일치한다는 것
 - d) 업종, 규모, 위치, 시간, 프로젝트 집행에 대한 일정; 토지사용에 대한 요구, 토지 정리와 이주계획, 일차적 기술의 선택, 환경 보호 해법;
 - dd) 자본투자와 자본조달 계획
 - e) 사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
 - g) 특별한 정책; 투자 인센티브, 지원과 조건(만일 있다면)
7. 정부와 관련실체들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국회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8. 국회는 투자정책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킬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결정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a) 프로젝트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름
 - b) 프로젝트의 명칭, 업종, 규모, 투자 자본과 기간, 자본출자와 자본조달 일정
 - c) 프로젝트의 위치

- d) 프로젝트의 일정 : 사회기반시설의 개발과 착공식(만일 있다면)에 대한 일정; 일차적 타켓과 아이템의 이행 일정; 각 단계의 타켓, 기간과 운영(만일 프로젝트가 복수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면)
 - dd) 적용된 기술
 - e) 특별한 정책; 투자 인센티브, 지원과 조건(만일 있다면)
 - g)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유효한 기간
9. 정부는 평가위원회가 행하는 프로젝트 문서의 평가에 대한 서류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3 부 : 투자 등록

제36조 투자등록증이 요구되는 경우

1. 다음경우에 투자등록증이 요구된다.
 - a) 외국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
 - b) 이 법의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조직의 투자 프로젝트
2. 투자등록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 a) 베트남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
 - b) 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조직의 투자 프로젝트
 - c)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사업조직의 출자 자본을 구매함으로써 투자하는 경우
3. 베트남 투자자와 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조직은 투자정책이 결정된 뒤 이법 제 30조, 제31조, 그리고 제32조에 규정된 프로젝트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제2항 a목과 b목에 규정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등록증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이 법의 제37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 투자등록증 발행의 절차

1. 프로젝트가 이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규정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것이면, 등록사무소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투자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2. 프로젝트가 이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규정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면, 투자자는 아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a) 투자자는 이 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등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b) 적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거절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거절하는 설명이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투자등록증을 발행, 변경, 조정하는 권한

1.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는 그 안에 위치한 투자프로젝트의 투자등록증을 수령하고, 발행하고, 변경하고 취소한다.
2. 계획투자국은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 밖에 있는 투자프로젝트의 투자등록증을 수령하고, 발행하고, 변경하고 취소한다. 다만 이 조의 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위하여 본점 사무소 또는 운영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의 계획투자국은 다음의 투자등록증을 수령하고 발행하고 변경하고 취소한다 :
 - a) 복수의 지역에 걸쳐 있는 투자 프로젝트
 - b)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의 안과 밖에서 집행되는 투자 프로젝트

제39조 투자등록증의 내용

1. 프로젝트의 코드
2.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3. 프로젝트의 이름
4. 프로젝트의 위치와 면적
5. 프로젝트의 업종과 규모
6. 프로젝트에의 자본 투자(투자자의 자본과 조달한 자본을 포함한다), 자본출자와 자본조달의 일정
7. 프로젝트의 기간
8. 프로젝트 집행 일정 : 사회기반시설의 개발과 착공(만일 있다면) 일정; 일차적 타켓과 아이템의 수행 일정; 각 단계에 있어서의 타켓, 기간, 작업 (만일 프로젝트가 복수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면)
9. 투자 인센티브, 지원과 조건(만일 있다면)
10.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만일 있다면)

제40조 투자등록증의 변경

1. 투자등록증이 변경되어야 할 때, 투자자는 투자등록증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2. 투자등록증 변경에 대한 신청은 아래 사항으로 구성된다 :
 - a) 투자등록증 변경에 대한 서면 요청
 - b) 프로젝트 변경시까지의 프로젝트 집행에 대한 보고서
 - c) 투자프로젝트 변경에 관한 결정
 - d) 변경에 관한 이 법 제33조 제1항 b, c, d, dd, e목에 규정된 서류
3. 이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적법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한다. 거절할 경우에는 설명이 제공된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만일 프로젝트가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면, 그 변경이 프로젝트의 업종, 타켓, 일차적 기술, 10% 이상의 자본투자의 증감, 프로젝트 기간, 투자자 또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만일 있다면)의 변경에 관련된 것일 때에는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증을 변경하기 전에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만일 투자등록증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프로젝트가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된다면,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증을 변경하기 전에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1조 투자등록증의 취소

1. 등록사무소는 프로젝트가 이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된 경우 투자등록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투자등록증의 취소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4 부 : 프로젝트 집행

제42조 프로젝트 집행의 보장

1. 투자자는 만일 그의 프로젝트가 국가로부터 할당되거나 임대된 토지를 사용할 때 혹은 국가에 의하여 토지용도 변경이 허용될 때, 프로젝트 집행의 보장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보증금은 프로젝트의 규모, 성격, 집행 일정에 따라 자본 투자의 1%~3%와 같다.
3. 보증금은 그것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이 조를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제43조 투자 프로젝트의 기간

1. 경제구역 내의 투자 프로젝트의 기간은 70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경제구역 밖의 투자 프로젝트의 기간은 50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여건이 불리하거나 극도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프로젝트 혹은 자본 회수율이 낮은 프로젝트는 50년을 넘을 수는 있으나 70년을 넘을 수는 없다.
3. 만일 프로젝트가 국가에 의하여 할당되거나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나 토지 이전이 지체될 경우, 지체기간은 프로젝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4조 기계, 장비와 기술 라인의 평가

1. 투자자는 법에 규정된 대로 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와 기술 라인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과학 기술의 국가적 관리 또는 과세 기초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권한 있는 관리기관은 기계, 장비와 기술라인의 품질과 가치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 프로젝트의 이전

1.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
 - a) 프로젝트가 이 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종료되지 않을 것
 - b) 외국인 투자자가 조건부 업종에 대한 투자프로젝트를 받았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된 투자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 c) 프로젝트 이전이 토지의 이전과 관련될 경우 토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할 것
 - d) 투자등록증에 있는 조건 또는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것
2. 프로젝트의 이전이 투자등록증의 발행에 따라야 한다면, 투자자는 이 법제33조 제1항에서 언급한 서류와 투자자를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 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프로젝트 일정의 연기

1. 만일 투자등록증이나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이 발행되었다면, 자본투자 일정, 건설일정과 착공식 일정(만일 있다면); 타켓에 대한 일정을 연기 하고자할 때에는 투자자는 서면 제안서를 등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의 내용
 - a) 투자등록증 또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이 발행된 날로부터 연기하는 날까지 프로젝트의 과정과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의 이행
 - b) 연기에 대한 설명과 기간



- c) 자본 출자 계획, 사회기반시설 개발 일정과 착공식 일정을 포함한 프로젝트 수행 계획
 - d)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투자자의 약속
3. 연기는 2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회복되는 시간은 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7조 프로젝트 연기와 종결

1. 프로젝트를 연기할 때에는 투자자는 서면으로 등록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프로젝트가 불가항력으로 연기되어야 할 때에는, 투자자는 불가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필요한 연기기간 동안 토지임차료의 지급을 면제 받는다.
2. 투자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a)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적인 유적, 유물, 골동품, 국가 보물의 보호를 위하여
 - b) 환경당국의 요청에 따른 환경복구를 위하여
 - c) 노동당국의 요청에 따른 직업적 안전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 d) 프로젝트는 법원이나 중재법정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연기된다.
 - dd) 투자자가 투자등록증을 고수하지 못하고 벌칙을 부과 받고 난 뒤 재차 행정위반을 했을 경우
3. 수상은 프로젝트 집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계획투자부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연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 프로젝트의 종료

1. 프로젝트는 다음의 경우 종료된다 :
 - a)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를 결정한 때
 - b) 프로젝트는 계약이나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료된다.
 - c) 프로젝트 기간이 종료된 때
 - d) 이 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프로젝트 연기를 야기시킨 곤경을 투자자가 극복하지 못 하였을 때
 - dd) 프로젝트 토지가 국가에 의하여 환수되거나 투자자가 계속하여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지 못하고 토지/부동산 환수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의 위치변경에 대한 절차를 완결하지 못 하였을 때
 - e) 등록사무소는 프로젝트를 연기한 날로부터 12개월을 지난 뒤에는 투자자나 투자자의 법적 대표자를 접촉할 수 없다.
 - g)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등록사무소에 등록된 일정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이 법 제46조에 규정된 대로 프로젝트 집행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허가받지 못하였을 때
 - h) 프로젝트는 법원이나 중재법정의 결정에 따라 종료된다.
2. 등록사무소는 이 조 제1항 d, dd, e, g와 h목에 언급된 경우에 프로젝트 종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투자자는 자산청산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청산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토지가 국가에 의하여 환수되었으나 투자자가 환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토지에 있는 자산을 청산하지 못 하였을 때, 토지환승 관한 명령을 발한 기관은 그 자산을 청산하여야 한다.

제49조 업무협력계약 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사무소의 설치

1. 업무협력계약 하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내에 영업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영업사무소의 위치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업무협력계약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사무소는 그 자신의 인장을 갖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계약에 서명하고 업무협력계약과 영업사무소의 등록증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다.
3. 외국인 투자자는 영업사무소가 위치하려는 곳에 있는 등록사무소에 영업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서는 다음 내용으로 이루어 진다 :
 - a) 신청서 양식. 양식은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만일 있다면)의 이름과 주소; 영업사무소의 이름과 주소; 영업사무소의 내용, 기간과 영업 범위; 영업사무소 대표자의 성명, 주소, 신분증 번호나 여권번호를 명시한다.
 - b) 영업사무소를 개설한다는 외국인 투자자의 결정
 - c) 영업사무소의 대표자를 임명하는 결정의 사본
 - d) 업무협력계약의 사본
5.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등록 사무소는 영업사무소의 등록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제50조 업무협력계약 하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영업사무소의 폐쇄

1. 영업사무소를 폐쇄한다는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자는 영업사무소가 위치한 등록사무소에 인쇄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쇄물은 다음 내용으로 구성된다 :
 - a) 일정에 앞서 영업사무소를 폐쇄한다는 결정
 - b) 채권과 확정된 부채의 목록
 - c) 고용주와 고용주에게 제공된 급여의 목록
 - d)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세무당국의 증명서
 - dd) 사회보험의무를 완납하였다는 사회보험당국의 증명서
 - e) 공안당국의 인장 파괴 증명서
 - h) 투자등록증의 사본
 - l) 업무협력계약의 사본



3. 접법한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등록사무소는 영업 사무소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5 장 해외 투자

제 1 부 : 일반 규정

제51조 해외 투자를 하는 규칙

1. 투자자들은 시장을 개척하고, 상품/용역의 수출과 외국환의 수취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현대 기술에의 접근을 향상시키고 경영능력을 높이고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해외 투자를 하도록 지원을 받는다.
2. 해외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이 법, 기타 법률의 규정, 투자가 행해지는 국가 또는 영토(이후 주된 국가라고 한다)의 법률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자신이 하는 해외투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52조 해외투자의 형태

1.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해외투자
 - a) 주된 국사의 법률에 따라 기업조직을 설립하는 것
 - b) 해외에서 업무협력계약을 집행하는 것
 - c) 해외 경영 및 사업 투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 사업조직의 정관 자본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매수하는 것
 - d) 채권이나 유가증권의 거래 또는 채권투자기금이나 기타 해외 간접 재정기구를 통한 투자
 - dd) 주된 국가의 법에 규정된 기타 투자형태
2. 정부는 이 조 제1항 d목에 언급된 투자의 형태를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제53조 해외투자를 위한 자원(자본의 원천)

1. 투자자는 해외투자를 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하거나 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외국환을 차입하거나 외국환 자금을 송금하는 조건과 절차는 은행, 신용기관과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 통화정책, 각 시기에 있어서의 외국환 관리정책의 목표에 따라, 베트남 국가은행은 해외투자를 하기 위하여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환 차입을 승인하는 베트남 내에서의 신용기관과 외국은행의 지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 2 부 : 해외투자정책의 결정에 관한 절차

제54조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권한

1. 국회는 아래 사항에 대한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한다 :
 - a) 해외 투자 자본금이 20조 베트남 동 이상의 프로젝트
 - b) 국회에 의하여 결정해야할 특별한 정책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2. 이 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이 아래 사항에 대한 해외투자 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한다 :
 - a) 해외투자 자본금이 4,000억 베트남 동 이상인 은행, 보험, 채권, 신문, 방송과 통신 프로젝트;
 - b) 해외투자 자본금이 8,000억 베트남 동 이상인 프로젝트서 이 조 제1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것;

제55조 수상이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하는 서류와 절차

1. 투자자는 계획투자부에 프로젝트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는 아래 사항으로 구성된다 :
 - a) 해외투자등록 양식
 - b)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설립증명서 또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동등한 서류(투자자가 조직일 경우)

- c) 프로젝트 제안 : 프로젝트의 업종, 규모, 형식과 위치;초기 자본금, 자본조달계획, 자본구조, 프로젝트 집행일정, 투자 단계(만일 있다면); 그리고 프로젝트 효율성에 대한 일차적 분석
 - d) 투자자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들 중 하나의 사본 : 투자자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모회사의 약속;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재정기관의 약속; 투자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보증; 투자자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 dd) 외국환 재원을 수지균형을 이루겠다는 약속 또는 투자자에게 외국환을 공급하겠다는 허가된 신용기구의 약속
 - e) 이 법 제57조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된 해외투자에 관한 결정
 - g) 은행, 채권, 과학과 기술에의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관하여, 투자자는 신용기관법, 채권법, 과학기술법 그리고 보험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해외투자에 대한 조건의 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서면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프로젝트 문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계획투자부는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그 문서를 관련 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기관은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획투자부는 평가를 수행하고 수상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 a) 이 법 제58조에 규정된 해외투자등록증 발행의 조건
 - b) 투자자의 법적 지위
 - c) 해외투자의 필요성
 - d) 프로젝트가 이 법 제51조 제1항과 일치함
 - dd) 프로젝트의 내용 : 규모, 투자의 형태, 위치, 기간, 일정의 집행, 자본과 자본의 재원
 - e) 주된 국가에서의 위험요소의 재평가



5. 수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해외투자정책의 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 투자자
 - 프로젝트의 업종과 위치
 - 자본과 자본의 재원; 자본출자와 자본조달 일정; 해외투자 일정
 - 투자 인센티브와 지원(만일 있다면)

제56조 국회가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할 문서와 절차

- 투자자는 이 법 제55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계획투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법한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계획투자부는 수상에게 평가 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하고 이 법 제55조 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국회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적어도 60일 전에 정부는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국회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는 다음 것들로 이루어 진다 :
 - 정부의 보고서
 - 이 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프로젝트 문서
 - 평가위원회에서 만든 평가보고서
 - 관련 서류
- 국회는 해외투자정책, 이법 제55조 제5항에 규정된 내용에 관한 결정을 통과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부 : 해외투자등록증의 발행, 조정 그리고 취소에 대한 절차

제57조 해외투자를 결정할 권한

- 국가가 소유한 회사는 기타 사업에서 국가 자본의 관리와 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외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해외투자는 이 법과 회사법 그리고 관련된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투자자와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기타 사업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은 해외투자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58조 해외투자등록증 발행의 요청

1. 해외투자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해외투자는 이 법 제6조에 규정된 금지된 사업종류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3. 투자자 또는 승인된 신용기구는 외국환 또는 해외투자를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외국환으로 표시된 자본금이 200억 베트남동이상 외국으로 송금되고 이법 제54조에 규정된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을 경우, 계획투자부는 베트남 국가은행에 서면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이 법 제57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해외투자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5. 프로젝트 문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투자자가 납세의무를 완수하였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제59조. 해외투자등록증 발행에 대한 절차

1. 프로젝트가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에 따라야 하는 경우, 계획 투자부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해외투자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투자자는 계획투자부에 해외투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 사항으로 이루어 진다 :
 - a) 해외투자등록 양식
 - b)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만일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설립증명서 또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할 동등한 서류의 사본(만일 투자자가 조직일 경우)



- c) 이 법 제57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해외투자에 관한 결정
 - d) 외국환 재원의 수지균형에 대한 약속 또는 이 법 제5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대로 투자자에게 외국환을 제공하겠다는 승인된 보증기구의 약속
 - dd) 은행, 채권, 과학과 기술에의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관하여, 투자자는 신용기관법, 채권법, 과학기술법 그리고 보험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해외투자에 대한 조건을 완수하였다는 투자자의 서면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계획투자부는 해외투자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만일 신청이 거절되면, 투자자는 설명이 제공된 서면으로 통지를 받는다.
 4. 정부는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평가, 해외투자등록증의 발행, 조저, 무효에 대한 절차를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제60조 해외투자등록증의 내용

1. 투자 프로젝트의 코드
2.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3. 투자 프로젝트의 명칭
4. 프로젝트의 업종과 위치
5. 자본과 자본의 재원; 자본 출자자 자본조달 일정; 해외투자 일정
6.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7. 인센티브와 지원(만일 있다면)

제61조 해외투자등록증의 조정

1. 투자자, 위치, 업종, 규모, 자본금, 자본금 재원, 투자일정, 투자 인센티브, 해외 프로젝트 집행에 대한 이익의 사용에 관하여 해외투자프로젝트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는 계획투자부에 해외투자등록증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투자등록증에 대한 변경신청은 다음 것들로 구성된다 :
 - a) 해외투자등록증에 대한 서면 변경 요청
 - b)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설립증명서 또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동등한 서류의 사본(투자자가 조직일 경우)
 - c) 해외투자등록증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프로젝트의 운영에 관한 보고서
 - d) 이 법 제57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해외투자프로젝트 변경에 관한 결정
 - dd) 해외투자등록증 사본
 - e) 투자자가 프로젝트 문서를 제출할 때까지 조세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명서
3. 계획투자부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충분한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해외투자등록증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만일 프로젝트가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면, 계획투자부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해외투자등록증을 조정하기 전에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해외투자등록증에 대한 투자자의 조정 요구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계획투자부는 해외투자등록증을 조정하기 전에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2조 해외투자프로젝트의 종료

1. 해외투자프로젝트는 아래 경우에 종료된다 :
 - a)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때
 - b) 프로젝트 기간이 지난 때
 - c) 프로젝트가 계약의 규정 또는 회사 정관에 따라 종료되는 때
 - d) 투자자가 해외 자본금 전부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때



- dd) 프로젝트가 해외투자등록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 호스트 국가로부터 승인받지 못 하거나 프로젝트가 호스트 국가의 유관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 시작되지 아니하는 경우
 - e)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투자등록증의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 등록된 일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못하고 투자일정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g) 투자자가 연간 조세신고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 프로젝트의 운영에 관한 서면 보고서 또는 호스트 국가의 법에 규정된 동등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h) 해외 사업조직이 호스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산되거나 파산한 경우
 - i) 프로젝트가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2. 계획투자부는 이 조 제1항의 경우에 해외투자등록증을 무효화하여야 한다.

제 4 부 : 해외투자의 개시

제63조 해외투자 자본금 계정의 개설

해외투자에 따른 베트남으로부터 해외로의, 해외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송금은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국내 허용된 증권기관에 개설 되고 베트남 국가은행에 등록된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64조 해외투자자본금의 이전

1. 투자자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해외투자를 이전할 수 있다.
 - a) 이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투자등록증이 인가된 때
 - b) 호스트 국가의 유관당국에 의하여 투자가 승인되거나 허가가 난 때.
만일 호스트 국가의 법률이 투자허가나 투자승인을 다루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그 국가에서 투자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c) 이 법 제63조에 규정된 자본금계정이 있을 것
- 2. 해외투자자본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 수출, 기술이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3. 투자자는 시장조사, 연구 기타 정부가 규정한 투자준비를 위하여 외국환, 상품, 기계류와 장비를 외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제65조 이익의 베트남으로의 이전

- 1. 연간 조세신고 또는 동등한 서류가 호스트국가의 법률의 규정대로 이용가능한 날로부터 06개월 이내에, 투자자는 그 이익이 이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투자에 사용되지 않는 한, 해외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기타 수입을 베트남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 2. 만일 이익과 기타 수입이 이 조 제1항의 규정대로 기한 내에 베트남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투자계획부와 베트남 국가은행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익을 베트남에 이전하는 기한은 두번 이상 연장될 수 없으며, 각 연장은 0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계획 투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 해외투자에 대한 이익의 사용

- 1. 해외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해외투자를 확대하는데 사용하는 투자자는 해외투자등록증을 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베트남 국가은행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만일 해외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해외투자에 사용되는 경우, 투자자는 그 프로젝트의 해외투자등록증에 대한 절차를 밟고, 베트남 국가은행에 자본금 계정과 금전 자본금 이전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장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제67조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의 내용

1. 투자에 관한 법률 문건들의 공포, 보급과 이행 지도
2.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에 관한 전략, 계획, 정책의 개발과 이행 지도
3. 투자활동의 개발과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4.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와 운영
5. 이 법에 따른 투자등록증, 해외투자등록증,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과 해외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발행, 조정, 취소
6.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 구역, 경제구역과 관련된 국가관리 과업의 수행
7. 투자장려의 조직과 이행
8. 투자행위의 조사와 감독; 투자관리과업의 조정
9.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과 애로사항의 해결; 진정, 고소사건의 해결; 포상과 징계처분의 결정
10. 투자에 관한 국제 협약의 교섭과 결론

제68조 투자관리에 대한 규제기관의 책임

1. 정부는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에 있어 투자관리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제정한다.
2. 계획투자부는 정부가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에 있어 투자관리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지원한다.
3. 계획투자부는 다음의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
 - a) 정부와 수상에게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에 대한 전략, 계획과 정책의 승인을 심사할 것을 요청
 - b)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에 관한 법률문건을 제정하거나 유관 당국에게 제정할 것을 요청
 - c)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에 대한 절차에 이바지하는 문건양식의 제공

- d) 투자에 관한 법률문건의 이행에 관한 지시, 조직, 감독, 조사, 평가를 제공
 - dd)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의 진도를 평가, 보고
 - e)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을 개발, 관리, 운영
 - g) 베트남 국내와 해외 투자에를 감독, 평가, 조사하는 것을 책임지며, 이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
 - h) 유관당국에게 권한을 넘어서 또는 투자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되거나 조정된 프로젝트의 중지를 결정하도록 요청
 - i)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에 관련된 국가관리과업의 수행
 - k) 베트남 국내의 해외에서 투자촉진에 관한 국가관리과업을 수행
 - l) 투자에 관한 국제 협약을 교섭하고 결론
 - m) 정부와 수상에 의하여 부여된 투자관리에 관한 기타 책임과 권리
4. 기타 부와 부처 기관의 책임, 권리
- a) 투자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제정함에 있어 계획투자부, 기타 부와 부처기관과의 협력
 - b) 법률, 정책, 표준, 기술적 규정과 지시를 제정함에 있어 책임을 지며, 기타부와 부처 기관과의 협력
 - c) 이 법 제7조에 언급된 업종에서의 투자에 대한 조건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
 - d) 투자유치 계획을 제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함을 책임지고, 그에 관하여 계획투자부와 협력; 투자촉진의 수행
 - dd) 이 법의 규정대로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을 발행하여야 하는 프로젝트의 평가에의 참여
 - e) 그 관리 하에 있는 프로젝트의 투자조건의 이행에 대한 감독, 평가와 조사 실시
 - g) 국가관리에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에 있어 책임을 지는 한편, 도 인민위원회, 기타 부, 부처기관과 협력; 그 안의 국가관리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 구역과 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에 권한분배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권한을 위임;
- h) 자기 관리하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기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수행하고 계획투자부에 보고서 송부
 - l) 자기 관리하에 있는 관리정보시스템을 유지, 업데이트; 그것들을 국가투자 정보시스템에 통합
5. 도 인민위원회, 계획투자국,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의 책임과 권리
- a) 투자를 유치하는 지역 프로젝트의 목록을 작성하고 발행함에 있어 부, 부처기관과 협력
 - b) 투자등록증의 발행, 조정과 취소 절차를 이행
 - c) 자기 관리하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단속기구로서 권리행사
 - d) 투자자의 애로사항의 해결 또는 유관당국에게 해결을 요청
 - dd) 지역 프로젝트의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계획투자국에 송부
 - e) 관할 하에 있는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을 유지, 업데이트
 - g) 조직, 감독, 보고서 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
6. 해외에 있는 베트남의 대표기구는 호스트 국가에 있는 베트남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관찰하고, 지원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69조 투자에 대한 감독과 평가

1. 투자에 대한 감독과 평가는 다음 것들을 포함한다;
 - a)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평가
 - b) 전반적 규모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감독과 평가
2. 투자에 대한 감독과 평가에 대한 책임
 - a) 국회와 인민 위원회는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를 감독할 권리를 행사한다.

- b) 투자당국과 전문당국은 전반적 규모에 있어서 투자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각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실시한다.
 - c) 등록사무소는 자신이 투자등록증을 인가한 투자프로젝트를 감독하고 평가한다.
 - d) 베트남조국전선은 그들의 권한내에서 공동체의 투자를 감독한다.
3.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평가
- a) 국가 자본금이 제공된 프로젝트에 관하여, 투자당국과 전문당국은 투자에 관한 결정 내용에 따라 감독과 평가를 실시한다.
 - b) 기타 재원이 제공된 프로젝트에 관하여, 투자당국과 전문당국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관당국이 인가한 계획과 투자정책, 투자일정, 환경보호요건의 이행, 토지와 기타 자원의 사용에 대한 일치여부를 감독하고 평가한다.
 - c)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증과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의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4. 투자에 대한 전반적 감독과 평가의 내용
- a) 투자법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법률문건의 제정
 - b) 프로젝트 집행의 과정
 - c) 국가전체의, 각 부처의, 각 부처기관의, 지방당국의 투자결과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 d) 애로행위에 대한 해결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같은 수준의 단속 기관과 투자 당국에 제안
5. 조직과 기관은 평가를 스스로 시행하거나 능력있는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자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이 조문을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제70조 국가투자정보시스템

- 1. 국가투자시스템은 다음 것들로 구성된다 :
 - a) 국내투자에 대한 국가투자시스템
 - b) 내국으로의, 외국으로의 투자에 대한 국가투자시스템



2. 계획투자부는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영함에 있어 책임을 지며,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중앙과 지방 투자당국의 그 시스템 운영을 평가하여야 한다.
3. 투자당국과 투자자는 국가투자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4. 국가투자정보시스템에 있는 투자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는 원본이고 합법적인 정보로 간주된다.

제71조 베트남 국내 투자에 관한 보고

1. 보고하는 실체 :
 - a) 각 부처, 각 부처기관, 도 인민위원회;
 - b) 등록사무소
 - c)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투자자와 사업조직
2. 정기보고
 - a)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투자자와 조직은 프로젝트 집행에 관하여 매달, 매분기, 연간 보고서를 등록사무소와 지역 통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자본금, 투자결과, 피고용인, 국가예산에의 지출, R&D에의 투자, 환경보호, 기타 전문적 지표를 명시하여야 한다.
 - b) 등록사무소는 투자등록증에 대한 신청서 접수, 발급, 조정과 취소,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프로젝트의 운영에 관하여 매달, 매분기, 연간 보고서를 계획 투자부와 도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c) 도 인민위원회는 지역 투자에 관하여 매분기, 연간 보고서를 계획 투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d) 각 부처와 각 부처기관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투자등록증과 그와 동등한 서류의 발행, 조정과 취소,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계획투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투자부는 요약보고서를 수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dd) 계획투자부는 국가 전체의 투자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실체가 투자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수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기관, 투자자, 사업조직은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기관, 투자자, 사업조직은 유관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일정에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5. 프로젝트가 투자등록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투자자는 프로젝트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사무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해외투자에 관한 보고

- 1. 보고 실체 :
 - a) 각 부처, 각 부처기관, 도 인민위원회
 - b) 해외투자가 등록된 등록사무소
 - c)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투자자
- 2. 각 부처, 각 부처기관, 도 인민위원회에 적용되는 보고규정
 - a) 각 부처, 각 부처기관, 도 인민위원회는 2년에 한번, 매년 자신의 권한 내에 있는 해외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계획투자부와 수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 계획투자부는 2년에 한번, 매년 국가 전체의 투자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실체의 투자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수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보고규정
 - a) 호스트국가의 법규정에 따라 프로젝트가 인가되거나 허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투자자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서면 인가 또는 호스트국가에서 직접 투자할 권리를 증명하는 문건의 사본이 첨부된 서면 해외투자통지서를 계획투자부, 베트남 국가은행과 호스트 국가에 있는 외교사절에 송부하여야 한다.



- b) 투자자는 프로젝트에 관한 분기, 연간 보고서를 계획투자부, 베트남 국가은행과 호스트 국가에 있는 외교사절에 송부하여야 한다.
 - c) 호스트국가의 법률규정에 따라 연간 조세신고 또는 동등한 서류가 이용가능한 날로부터 06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연간 세무신고, 또는 호스트국가의 법률규정에 따른 동등한 서류를 첨부한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계획투자부, 베트남 국가은행과 호스트 국가에 있는 외교사절과 이 법과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른 유관 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 d) 만일 해외투자프로젝트가 국가 자본금이 제공된 것이면, 이 항의 a, b, c목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 이외, 투자자는 기타 사업에서의 국가자본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이 조의 제2항, 제3항에서 언급한 보고서는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이 조 제1항에 있는 기관, 조직, 투자자는 유관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일정에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장 시 행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1. 이 법을 위반한 실체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행정 벌금 또는 형사소추를 받고, 야기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권한을 남용하여 투자활동을 방해하고, 투자자를 괴롭히거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위반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형사소추를 받는다.



제74조 경과 규정

1.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투자허가나 투자허가증을 인가받은 투자자는 인가된 투자허가나 투자허가증에 따라 투자프로젝트를 계속 집행할 수 있다. 등록사무소는 투자자가 요청하면 그것을 투자허가등록증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이 법이 효력을 갖기 전에 투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에 따라야 하는 프로젝트를 집행해 온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또는 투자정책에 관한 결정에 대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투자등록증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이 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이 법의 효력일 전에 제정된 법률문건에 있는 사업투자에 대한 조건으로서 이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4. 정부는 이 조 제1항, 제2항을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제75조 하이 테크롤로지법 No. 21/2008/QH12 제18조 제1항에 대한 수정

하이 테크롤로지법 No. 21/2008/QH12 제1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하이 테크놀로지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a) 이 법의 제6조에 규정된 우선순위가 주어진 하이테크 상품 목록에 있는 하이테크 상품의 생산;
 - b) 베트남 기술 규정과 표준(또는 베트남의 기술 규정과 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조에 대한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적인 해법의 적용과 품질 통제
 - c) 기타 수상이 정한 기준

제76조 효력

1. 이 법은 2015년 7월 1일 효력을 갖는다.



2. 투자법 No. 59/2005/HQ11과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와 과업에 관한 국회의 결정 No. 49/2010/QH12는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무효이다.
3. 정부와 유관당국은 맡겨진 조항을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 법은 2014. 12. 26.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13대 국회의 8 회기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응우옌 신흥



5

DECREE No. 20/2017/ND-CP 이전가격 과세규정



THE GOVERNMENT -----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 - Freedom - Happiness -----
No. 20/2017/ND-CP Hanoi, February 24, 2017

DECREE

PRESCRIBING TAX ADMINISTRATION FOR ENTERPRISES ENGAGED IN
TRANSFER PRICING

*Pursuant to the Law on Government Organization dated June 19, 2015;
Pursuant to the Law on Tax Administration dated November 29, 2006; the
Law on Revision of certain articles of the Law on Tax Administration dated
November 20, 2012;*

*Pursuant to the Law on Corporate Income Tax dated June 3, 2008; the Law
on Revision of certain articles of the Law on Corporate Income Tax dated
June 19, 2013;*

*Pursuant to the Law on Revision of certain articles of the Law on Tax dated
November 26, 2014;*

Pursuant to the Law on Investment dated November 26, 2014;

Pursuant to the Law on Enterprises dated November 26, 2014;

Pursuant to the Law on Accounting dated November 20, 2015;

After considering the request of the Minister of Finance;

*The Government hereby introduces the Decree prescribing tax administration
for enterprises engaged in transfer pricing.*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Scope

1. This Decree deals with principles, methods, processes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obligations of a taxpayer in declar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price of a related-party transaction, and tax declaration and payment; responsibilities of regulatory authorities for tax compliance management, check and audit for a taxpayer engaged in the transfer pricing.

2. Related-party transactions covered by this Decree are those arising from business activities of taxpayers engaged in the transfer pricing stipulated by Article 5 hereof, except trades in commodities or services subject to the Government's price adjustment that must comply with the legislation on price.

Article 2. Subjects of application

1. Commodity or service production and business ent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xpayers) that are entities paying corporate income tax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method and performing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5 hereof.

2. Tax authorities including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Department of Taxation and Subdepartment of Taxation.

3. Other state regulatory authorities, entities or individuals involved in application of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the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including tax authorities of the countries or territories that are parties to tax treaties with Vietnam still in force.

Article 3. Principles of application

1. Taxpayers engaged in transfer pricing must make declaration of their related-party transactions; eliminate factors causing reduction in tax

obligations that are controlled or affected by related-party relationships in order to define tax obligations imposed on related-party transactions which are comparable to independent transactions having the same requirements.

2. Tax authorities should manage, check and inspect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performed by taxpayers according to the arm's-length and substance-over-form principles in order to refuse to recognize related-party transactions reducing tax obligations of enterprises to the state budget and make adjustment to the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so as to correctly define tax obligations as prescribed by this Decree.

3. The arm's-length principle should be applied in the same manner as the principles applied to transactions between independent parties which do not have any related-party relationship in tax treaties in force in Vietnam.

Article 4. Definition

1. "Tax treaty" is the shortened term of the agreement on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tax evasion with respect to income taxes which is signed between Vietnam and other states, and the agreement on revision of the agreements currently in force in Vietnam.

2. "Party tax authority" is tax authorities of states which are parties to tax treaties with Vietnam.

3. "Related-party transaction" is transactions arising between parties having related-party relationships during their production and business process, including purchase, sale, exchange, hire and rent with(out) rental fee for, transfer, and assignment, of machinery, equipment and commodities, and providing services; borrowing, lending, financial service, financial guarantee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 purchase, sale, exchange, hire and rent with(out) rental fee for, transfer and assignment of tangible assets, intangible assets and agreement on joint use of resources such as synergies and cooperations in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sharing of costs between related parties.

4. "Independent transaction" is a transaction between unrelated parties.



5. "Independent comparable" is independent transactions or enterprises performing independent transactions that are selected on the basis of comparability analysis or determination of comparables acting in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to determine levels of prices, profit margins, profit allocation rates in order to assess taxpayers' tax amounts payable to the state budget and ensure compliance with provisions set forth in the Law on Tax Administration and the Law on Corporate Income Tax.
6. "Material difference" is differences in information or data that cause significant or substantial effects on levels of prices, profit margins and profit allocation rates of parties involved in transactions.
7. "Database of the Tax Authority" is information and/or data that are established and/or managed by the Tax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Tax Administration, relate to determination of tax obligations of taxpayers, and are collected, analyzed, stored, updated, and managed by tax authorities, from various sources, even inclusive of the databases and information exchanged with tax authorities and regulatory authorities of overseas countries.
8. "Substance-over-form principle" is the principle used to analyze business activities of taxpayers in order to indicate the nature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as the basis for comparison with independent transactions performed in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ensure that related-party transactions duly representing the commercial, economic and financial nature are performed between unrelated parties, or if performed between parties having related-party relationships, that these related-party relationships would not adversely influence tax obligations to the state budget incurred by taxpayers. This principle is based on data about and practical reality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to compare with independent transactions in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without reliance on forms of transactions expressed in contracts or arrangements between related parties. Identification of the nature of economic, financial or commercial relationship existing in related-party transactions is based on comparison

with independent transactions in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9. “Arm’s length range” is a range of values regarding levels of prices, profit margins, or profit allocation rates, of independent comparables that are selected by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with reference to the databases referred to in Article 9 hereof. Values in this range have the same or similar level of reliability comparability. Where necessary, the probability method would be used to identify the standard arm’s length range and the range of values between transactions having the typical, general and common natures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independent comparables.

10. “Ultimate parent company” is a term used to refer to a legal entity that holds both direct and indirect ownership interests in another legal entity of a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is not owned by any other legal entity. A consolidated account of an ultimate parent company of a corporation is not consolidated into any financial account of any other legal entity around the globe.

Chapter II

SPECIFIC PROVISIONS

Article 5. Related parties

1. Related parties are parties having relationships where :

- a) A party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equity of the other, or puts investment in the other;
- b) Partie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common management, control, or the capital of or put investment in, other parties.

2. Related parties referred to in Clause 1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specific provisions :

- a) An enterpris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at least 25% of equity of the other enterprise;



- b) Both enterprises own at least 25% of equity in which a third party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 c) An enterprise is the shareholder who has the greatest ownership of equity of the other enterprise, or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at least 10% of total share capital of the other enterprise;
- d) An enterprise guarantees or offers another enterprise a loan under any form (even including third-party loans guaranteed by financing sources of related parties and financial transactions of same or similar nature) to the extent that the loan amount equals at least 25% of equity of the borrowing enterprise and makes up for more than 50% of total medium and long term debts of the borrowing enterprise;
- dd) An enterprise appoints a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responsible for the leadership or control of another enterprise provided the number of members appointed by the former accounts for more than 50% of total number of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responsible for the leadership or control of the latter; or a member appointed by the former has the right to decide financial policies or business activities of the latter;
- e) Both enterprises appoint more than 50% of membership of the executive board or have one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authorized to decide financial policies or business activities who is appointed by a third party;
- g) Both enterprises are managed or controlled in terms of their personnel, financial and business activities by individuals, each of whom is in one of the following relationships with the others such as a wife, husband, natural/foster father, natural/foster child, natural/foster older/younger sibling, brother/sister-in-law, maternal/paternal grandfather/grandmother, maternal/paternal grandchild, and maternal/paternal aunt, uncle and nibling;
- h) Both business entities have transactions, either between their head offices and permanent establishments or between permanent establishments of overseas entities or individuals.
- i) One or more enterprises is/are put under control of one individual through either his/her capital participation into that enterprise or his direct involvement in administration of that enterprise;

k) In other cases where an enterprise is in reality under management of, or control of decision on, business activities of the other enterprise.

Article 6. Comparability analysis, selection of independent comparables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and determining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1. Arm's-length and substance-over-form doctrines shall be used for identifying the nature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which is the same as that of independent comparables.

a) The nature of transactions prescribed by legally binding agreements, documents or arrangements on transactions of related parties is compared to the reality of execution of these transactions by such parties. Where taxpayers have related-party transactions arising without entering into any agreement in writing or with agreements incompliant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or do not adhere to that principle of arm's length transactions between unrelated parties when performing these transactions in reality, related-party transactions must be defined by the very nature of business transactions between independent parties, i.e. the business transaction where related parties receiving sales revenue or income from related-party transactions with taxpayers shall have the right to own, and control risks in trading, assets, commodities, services and resources, and the right to create economic benefits and generate income from shares, equities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 and taxpayers incurring expenses from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must either directly receive economic benefits or values, or contribute to creating sales revenue, value added to business activities of taxpayers in conformity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b) The nature of transactions is defined by the method of collecting information, evidences and data on transactions or risks posed to related parties in the reality of business activities.

2. Comparability analysis must ensure comparability between independent comparables and related-party transactions, must not cause any difference



materially affecting the level of price, profit margin or profit distribution rate between parties. In case where there exists any difference materially affecting the level of price, profit margin or profit distribution rate, it is necessary to analyse, determine, correct and eliminate that material difference based on comparable factors, referred to in Clause 3 of this Article, and in conformity with specific transfer pricing methods, referred to in Article 7 hereof.

Comparability analysis serves the purpose of finding similar independent comparables :

a) Selection of internal independent comparables is a transaction between taxpayers and unrelated parties, ensures comparability and does not cause any difference materially affecting the level of price, profit margin or profit distribution rate. Where there is none of the internal independent comparables, selection of comparables shall be subject to Point b and c Clause 3 Article 9 hereof. Comparison between related-party and arm's length transactions shall be made on the basis that each transaction is compared with each comparable product. Where it is unlikely to make a comparison by specific products, aggregation of transactions must ensure conformity with the nature and reality of business activities, and application of the method of valuation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shall be subject to provisions laid down in Article 7 hereof;

b) Financial data of comparables must ensure reliability in order to be used for tax declaration and assessment purposes, and conformance to regulations on accounting, statistics and taxation. Time of transactions performed by independent comparables must coincide with time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or must be constituted by the financial year coinciding with the financial year of taxpayers, except for special cases in whic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ime frame of comparison under the provisions of Point d of this Clause. Data must be properly formatted as the basis for comparing or calculating levels of prices at the transaction time or within the same tax period; the comparability analysis data on profit margin or profit distribution

rate must be collected in three consecutive tax periods. Taxpayers shall round decimal values of ratios or comparative rates up to the nearest hundredth at their fractional parts. Where relative values derived from data released without attached absolute numbers and this rounding method is not used, the data released shall be accepted on conditions that reference sources thereof must be cited;

c) The minimum number of independent comparables shall be selected after completion of comparability analysis and adjustment for material differences as follows : One comparable selected in case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performed or taxpayers performing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independent comparables without any difference; three comparables selected in the event that there are certain differences existing in independent comparables and there are not sufficient information or data provided as the bases for eliminating all of the material differences, and over five comparables selected only when there is any information or data used as the basis for eliminating most of the material differences existing in these independent comparables;

In cases where selected comparables are not equally reliable, the statistical probability method shall be applied to determine the standard arm's length range and the value standing in the midst of the range shall be selected to adjust and re-determine the level of price, profit margin or profit distribution rate of taxpayers according to the transfer pricing methods prescribed by Article 7 hereof;

d) Where it is unlikely to find independent comparables with related-party transactions of particular or sole nature, the scope of comparability analysis in terms of the sector, geographical market and comparison time should be expanded so as to search for independent comparables. Expansion of the comparability analysis scope shall be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manner : Selecting independent comparables by economic subsectors that are of high comparability with subsectors in which taxpayers are operating in the same geographical market; expanding the geographical market to regional



countries that have similar sectoral condi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levels.

Where the scope of comparability analysis for selection of independent comparables is expanded to different geographical markets, it is necessary tha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comparability and material differences must be made under the provisions of Point e of this Clause and Clause 2 Article 7 hereof; or figures or data obtained from independent comparables in the previous year should be used and adjustment for material differences resulting from the time-related factor (if any) should be made.

Time of expanding the scope of collection of figures or data from independent comparables shall be restricted to one financial year in comparison with the financial year defined by taxpayers if the pricing method stipulated by Clause 2 Article 7 hereof is used.

dd) On the basis of the pricing method and selected independent comparables, adjustment for level of price, profit margin or profit distribution rate of taxpayers shall be made in order to determine corporate income tax obligations of taxpayers without making any reduction in tax obligations to the state budget.

3. Comparability analysis shall be made by using the method of comparing, reviewing and correcting material differences in comparability factors in order to select independent comparables.

a) Comparability factors include specifications of commodities, services and asse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duct specification); functions and assets, business risks; contractual terms and economic conditions in case of transactions occurring;

b) Analysis of functions and assets, business risks is required to determine main functions associated with use of types of assets, capital and expense, including cooperation in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sharing of cost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risks from investment in assets, capital as well as risks associated with profitability relating to business transactions.

Functional analysis is consider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and re-distributing risks incurred from actual business activities performed by related parties;

c) Analysis of particular comparability factors of intangible assets is required to review and analyze rights to generate economic benefits stipulated in contracts or agreements, and non-contractual relationships that generate economic benefits to parties. Analysis of intangible assets must be based on ownership of assets, potential profits earned from intangible assets, restrictions on the geographical coverage in use of the rights to intangible assets; life cycle of intangible assets; rights and relationships that generate economic benefits; assignment of the right to get involved in developing intangible assets and operating functions or capability of controlling actual business risks of each related party relating to the entire process of developing, increasing, maintaining, protecting and utilizing intangible assets;

d) Analysis of economic conditions under which transactions arise is required to cover cost advantages based on such factors as geographical positions, special functions; level of development of market and economic conditions of business industries or sectors in which taxpayers are operating;

dd) Comparability analysis for elimination of material differences is an analysis aimed at elimin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fferences that may exist in financial information or data materially influencing factors used as the benchmarks for determining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according to specific pricing methods referred to in Article 7 hereof. Determination of material differences is carried out 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basis, including the quantitative difference defined as the difference determined by absolute numbers in business cycle, number of year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enterprise or relative numbers representing differences in financial indicators according to particular investment sectors or operational functions, differences in current capital; the qualitative difference defined as information identified based on specific pricing methods.

Information is considered material, including the difference in product specifications, contractual terms, functions, assets and risks and business



sectors or activities and economic conditions of taxpayers and independent comparables; the differences in investment policies, environment and impacts of input costs in different geographical market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fferences need to be reviewed and adjusted in relation to comparability factors materially influencing the transfer pricing method referred to in Article 7 hereof.

e) The analytical result shall be considered the basis for selection of independent comparables in conformity with specific transfer pricing methods referred to Article 7 hereof.

4. Comparability analysis process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steps :

a) Identifying the nature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before making analysis of comparability with independent comparables;

b) Comparably analyzing, finding and selecting independent comparables in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on the basis of identifying comparison time, product specifications and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analyzing the sector, market and economic conditions whenever transactions arise; analyzing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taxpayers performing related-party transactions; database sources; transfer pricing method and adjustment for any potential material difference;

c) Identifying the level of price, profit margin or profit distribution rate,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independent comparables, as the basis for comparison or application to determin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obligations of taxpayers and avoidance of any reduction in tax obligations to the state budget. Calculation method must be identically applied in the operating and business cycle or stage in agreement with functions and business models as prescribed by Article 7 hereof.

Article 7. Transfer pricing methods

Comparison method for determination of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Decree, shortly referred to as transfer pricing method) shall be applied according to the arm's length principle, transaction

nature and functions of taxpayers to the extent that this method is assessed and applied in a consistent manner in the entire business cycle or stage; shall be applied with reference to financial data obtained from independent comparables selected according to comparability analysis principles referred to in Article 6 here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 is selected amongst the following methods, based on featur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data as well as the nature of the pricing method.

Transfer pricing methods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

1. The method for comparing the price of related-party transaction with that of independent transa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m's length price comparison method) :

a) The arm's length price comparison method is applied in either cases where taxpayers perform transfer pricing of specifically classified products, tangible assets or specified services subject to trading conditions, commonly sold on the market or assigned prices quoted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changes of commodities or services; make payment of royalties on use of intangible assets; pay loan interest when performing lending and borrowing activities; or perform independent and related-party transactions in products that are of similar product specifications and subject to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b) The arm's length price comparison method i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there is none of differences in product specifications and contractual conditions upon comparison between prices of independent transactions and these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which materially influence product prices. Where there are material differences in product prices, these material differences must be eliminated.

Such factors as product specifications and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which have material effects on product prices, encompass the followings : characteristics, quality, brands and trademarks of products, and transaction scale and volume; terms and conditions of agreements on supply and



transfer of products, including amount, duration of transfer of products, payment deadline and others; rights to distribute or consume commodities, services or assets that affect the economic value and the market where such transaction occurs and other factors affecting product prices such as economic conditions and operational functions of taxpayers.

c) Method of calculating the transfer price : Price of products in related-party transactions is adjusted based on the arm's length price or the value point within the standard arm's length range of independent comparables as prescribed by this Decree.

Where the product price is quoted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change of commodities or services, the price of products in the transfer pricing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ice of product quoted at the comparable time and in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Taxpayers purchasing machinery or equipment from foreign related parties must provide records or documents evidencing purchase prices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upon the purchase time. For new machinery or equipment, the price in the transfer pricing is the price on the invoice demonstrating that the related party has purchased such machinery or equipment from the independent party. For used machinery or equipment of which the invoice or original document evidencing purchase is issued on the purchase date, asset revaluation shall be subject to applicable legislation on guidance on management, use and setting-aside of fixed asset amortization.

d) The result achieved from the transfer pricing is the taxable price used for declaring and determining the corporate income tax amount payable but does not cause any reduction in taxpayers' tax obligations to the state budget.

2. Method for comparing the profit margin of taxpayers with that of independent comparab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fit-comparison method) :

a) The method for comparing the profit margin of taxpayers with that of independent comparables shall be applied in the cases where taxpayers do

not have database and information in order to apply the arm's length price comparison method referred to in Clause 1 of this Article; taxpayers cannot compare product-based transactions on the basis of specific transactions in specific products in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ggregation of transactions is carried out in order to ensure conformity to the business nature and reality, and successful selection of profit margins of appropriate independent comparables; or taxpayers fail to either exercise autonomy over the entire business chain or participate in execution of general or specific related-party transactions under the provisions of Clause 3 of this Article;

b) Application principle : Profit-comparison method shall be appl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there is none of differences in operational functions, assets and risks; economic conditions and accounting and bookkeeping method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 comparison thereof between taxpayers and independent comparables have material effects on the profit margin. Where there are material differences in profit margins, then these material differences must be eliminated.

Such factors as business functions, assets and risks and economic conditions that have material effects on profit margins include factors relating to assets, capital and costs; right to control and make a decision in reality to serve the purpose of performing main functions of taxpayers; nature of business industry and market for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roducts; accounting and bookkeeping method and cost structure of products; economic conditions in which transactions occur.

Other factors determined based on the reality of execution of transactions performed by related parties include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hip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echnical assistance, disclosure of trade secrets, know-how, utilization of employees working under single or dual employment regime and economic conditions of a business industry or sector in which taxpayers are operating. Comparability factors other than those mentioned above include product specifications and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Where taxpayers doing business by performing their routine functions, without performing strategic decision-making functions and engaging in transactions of low added value comprise production or distribution enterprises which are not exposed to inventory risk or market risk and do not have sales revenue or costs arising from uses of intangible assets, they shall not have to incur operating losses arising from these risks;

c) Method of calculating the transfer price : The profit-comparison method shall help identify the relevant gross or net profit margins of taxpayers by using the gross or net profit margins of selected arm's length comparables for comparison. Deciding on which profit margin where the gross profit or net profit is relative to such bases as total sales, costs or assets is selected shall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and economic conditions of transactions; functions of taxpayers and accounting or bookkeeping methods of related parties. The bases for determination of the profit margin including sales revenue, costs or assets are data included in accounting records of taxpayers which are not subject to control taken or decision on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made by related parties.

- The method for comparing the gross profit to sales (the resale price method) :

The purchase price (cost) of a commodity, service or asset sold by a related party shall equal (=) the resale price (net sales) of that commodity, service or asset resold to an independent party minus (-) the gross profit divided by the selling price (net sales) of a taxpayer less (-) certain other costs charged for the purchase price, such as import duties, customs fees, insurance costs or international shipping costs (if any).

The gross profit relative to the selling price (net sales) of a taxpayer, which is determined by comparing it with that of independent comparables, shall equal (=) the selling price (net sales) of a taxpayer multiplied (x) by the gross profit relative to the selling price (net sales) of selected independent comparables.

The gross profit relative to the selling price (net sales) of independent comparables shall be calculated as the value falling within the standard

arm's length range of the gross profit to the selling price (net sales) of independent comparables which are selected for adaptation to principles herein stipulated.

The purchase price (cost) of such commodity, service or asset sold by a related party, which is adjusted for independent comparables shall be the price for taxation or declaration of costs and determin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obligations which must be paid by taxpayers.

- The method for comparing the gross profit to the cost (the cost plus method) :

The selling price or net sales of a commodity, service or asset sold to a related party shall be calculated as the arm's length cost thereof plus (+) the gross profit relative to the cost of a taxpayer.

The gross profit relative to the cost of a taxpayer, which is determined by comparing it with that of independent comparables, shall equal (=) the cost paid by a taxpayer multiplied (x) by the ratio of gross profit to the cost paid by selected independent comparables.

The gross profit relative to the cost paid by selected independent comparables shall be calculated as the value falling within the standard arm's length range of the ratio of the gross profit to the cost paid by independent comparables which are selected for adaptation to principles herein stipulated.

The transfer selling price (or net sales) which is adjusted for independent comparables shall be the price for taxation, declaration of costs and determin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obligations which must be paid by a taxpayer.

- The net profit margin comparison method :

The margin ratio of net profit before interest and corporate income tax to sales revenue, costs or assets of a taxpayer engaged in the transfer pricing shall be adjusted for the margin ratio of net profit before interest to sales revenue, costs or assets of selected independent comparables, based on which tax obligations of the taxpayer is adjusted or determined.



Net profit excludes difference in sales revenue and costs of financial operations.

The net profit margin to be selected shall be the value falling within the standard arm's length range of the net profit margin of independent comparables which are selected for adjustment to or identification of taxable income and tax obligations of a taxpayer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herein stipulated.

Margin indicators of the net profit before interest and corporate income tax shall be computed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laid down in legislation on accounting, tax administration and corporate income tax.

3. Method for allocation of profits between related parties :

a) The method for allocation of profits between related parties shall be applied to either cases where a taxpayer engages in the transfer pricing which is of general, specific, sole or closed nature in a corporation, or develops new products, uses proprietary technologies, takes part in the value chain exclusively transacted within a corporation or the process of developing, increasing, maintaining, protecting and utilizing proprietary intangible assets in the absence of bases for determination of prices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or transactions closely connected or simultaneously performed, or complicated financial transactions that relate to multiple financial markets across the globe; or a taxpayer engages in the digital transfer pricing in the absence of bases for determination of prices of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or participates in creation of added value from synergies within a corporation, or performs its functions to exercise autonomy over the entire production and business process, and is not covered under the provisions of Clause 1 and 2 of this Article;

b) Application principles : This method is defined as the method for allocating total profit generated from related-party transactions in order to determine profit of a taxpayer. This method shall be applied to total actual and potential profit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referred to in Point a of this Clause which are calculated by using financial data obtained on the basis of

proper and valid evidencing documents; value and profit in the transfer pricing must be determined by using the same accounting method in the full time length of application of this method;

c) Calculation method : Adjusted profit of a taxpayer shall be allocated based on total profit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including actual or potential profits likely to be obtained by parties engaging in the transfer pricing.

Adjusted profit of a taxpayer is expressed as primary profit plus extra profit. The primary profit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ofit-comparison method referred to in Clause 2 of this Article. The extra profit is calculated on pro rata basis relative to one or certain factors such as sales, costs, assets or employees of related parties engaging in the transfer pricing and in conformity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Through lack of information or data for apportionment of the adjusted profit stipulated above, such apportionment can be based on one or certain factors such as sales, costs, assets or employees of related parties engaged in the transfer pricing and conform to the arm's length principle.

d) The adjusted profit of a taxpayer shall be consider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taxable income and corporate income tax amount payable, but shall not reduce tax obligations to the state budget.

Article 8. Determination of costs for assessment of tax in certain specific cases for enterprises engaged in particular related-party transactions

1. Related-party transactions which neither agree with the arm's length nature of transactions nor contribute to creating operating sales revenue or income of a taxpayer shall not incur any cost qualified as allowable tax deductions within a specified tax period, including :

a) Payments to a related parties that does not perform any business operations relating to the industry or business activities in which a taxpayer is operating;

b) Payments to a related party that performs business operations, but have the scale of assets, number of employees and operating functions



incommensurate with the transactional value that this related party has obtained from a taxpayer;

c) Payments to a related party that does not have any right or responsibility relating to assets, commodities or services rendered to a taxpayer;

d) Payments to a related party that is a resident entity within a country or territory that does not collect corporate income tax, and that does not contribute to creating sales revenue or added value from business activities of a taxpayer.

2. Transactions where services are rendered between related parties :

a) Except for payments referred to in Point b of this Clause, a taxpayer can claim deductions for its service costs from tax within a specified tax period when meeting the following requirements where its services rendered have commercial, financial and economic value and are directly used in business activities of a taxpayer; services rendered by related parties are confirmed as already supplied only in the same conditions under which independent parties pay for these services; the arm's length principle and transfer pricing method or the method of allocation of service costs between related parties must be consistently applied in the entire corporation to payment of costs of similar services of which a taxpayer must provide a contract, evidencing documents, invoices and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thod of calculation, factors of allocation and policies on prices within the corporation.

Where there is a connection with centers performing specialized functions and synergies in creating the added value for the corporation, a taxpayer must determine total value created from these functions and identify the level of profit allocation proportionate to value of participation by related parties from which relevant costs of services paid to a related party to perform coordination or service supply functions in arm's length transactions of same or similar nature have been deducted.

b) Service costs that are not qualified as deductions from taxable incomes encompass costs arising from services rendered for the sole purpose of providing other related parties with benefits or values; services rendered to

provide benefits for shareholders of related parties; services for which costs are repeatedly charged due to multiple related parties render the same services, or in which the added value offered to a taxpayer is unspecified; services which are, in nature, benefits obtained by a taxpayer as a member of a corporation and costs that a related party adds to third-party services rendered through a related intermediary without adding any value to these services.

3. Taxpayer's total loan interest cost arising within a specified tax period qualified as a deduction from income subject to corporate income tax shall not exceed 20% of total net profit generated from business activities plus loan interest costs and amortization costs arising within that period.

This regulation shall not apply to taxpayers who are subjects of application of the Law on Credit Institutions and the Law on Insurance Business.

Taxpayers shall declare proportion of loan interest cost arising within a specified tax period according to the Form No. 01 hereto appended.

Article 9. Database used in declaration, determination and management of transfer prices

1. Database used in declaration, determination and management of transfer prices includes :

a) Database provided by information business organizations, including financial information and corporate data collected by these organizations from information sources which are publicly released, retained, updated, managed or us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ercial database);

b) Corporate information or data publicly released on stock exchanges;

c) Information or data available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odity or service exchanges.

d)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ministries or sectoral departments, or other official information sources.

2. Database used in order for tax authorities to manage transfer prices includes :

a) Database referred to in Clause 1 of this Article;



- b) Information or data exchanged with counterparty tax authorities;
- c)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tax authorities by ministries or sectoral departments;
- d) Database owned by tax authorities.

Database owned by tax authorities shall be used for managing risks and setting transfer prices in the event that there is any violation against provisions set forth in Clause 3 Article 12 hereof.

3. Analyzing and selecting independent comparables in order to analyse and determine the arm's length range shall b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comparability analysis and the transfer pricing methods referred to herein, which follows the priority order in selecting comparison data as listed hereunder :

- a) Internal comparables of taxpayers;
- b) Resident comparables residing within the taxpayer's country or territory;
- c) Comparables of other regional states in the same or similar sectoral conditions and economic growth levels.

With regard to foreign comparables operating in different geographical markets, it is necessary to analyse comparability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aterial differences referred to in Point e Clause 3 Article 6 and Clause 2 Article 7 hereof.

Article 10. Rights and obligations of taxpayers in declaration and determination of transfer prices

1. Taxpayers engaged in the transfer pricing as covered by this Decree shall be accorded right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Tax Administration.

2. Taxpayers engaged in the transfer pricing as covered by this Decree shall be held responsible for declaring and determining transfer prices, and shall be exempted from taking on obligations to pay corporate income tax within the territory of Vietnam in accordance with this Decree.

Taxpayers shall assume responsibility for demonstrating their compliance with this Decree in selection of a pricing method at the request of regulatory authorities.

3. Taxpayers engaged in the transfer pricing as covered by this Decree shall be held responsible for declaring information about related-party relationships and transactions by using the Form No. 01 given in the Appendix to this Decree and submitting it together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finalization return.

4. Taxpayers shall be responsible for retaining and providing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including :

a) Local file prepared by using the Form No.02 given in the Appendix to this Decree;

b) Master file containing information relevant for global corporations, prepared by using the Form No.03 given in the Appendix to this Decree;

c) Country-by-Country report of an ultimate parent company prepared by using the Form No.04 given in the Appendix to this Decree.

If a taxpayer having an ultimate parent company operates within the territory of Vietnam and generates at least eighteen thousand billions of Vietnam dong in global consolidated revenue, then it takes responsibility for preparing a Country-by-Country report included in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prepared by using the Form No. 04 given in the Appendix to this Decree.

For a taxpayer having an overseas ultimate parent company, a taxpayer shall be responsible for submitting a copy of its ultimate parent company's Country-by-Country report where that ultimate parent company is required to submit this report to the host-country tax authority by using the declaration form given by that tax authority or the declaration form No. 04 given in the Appendix to this Decree. Where a taxpayer fails to provide a Country-by-Country report, that taxpayer is obligated to provide a written explanation letter in which reasons for such failure, legal bases, and references to specific legislative regulations of the counterparty country on prohibiting taxpayers from providing Country-by-Country reports, should be stated.

5.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must be prepared before the time of filing corporate income tax finalization returns each year, and must



be stored and presented to meet the demand for information requested by tax authorities. When a tax authority carries out transfer pricing audit, the time limit for provision of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shall not exceed 15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request from provision of information.

6.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and information materials or evidencing documents provided by taxpayers to the tax authority shall be subject to laws and regulations on tax administration. Sources of data, evidencing documents and materials used as the bases for comparability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must be clearly cited. Where data submitted by independent comparables are accounting figures, taxpayers shall be responsible for retaining and providing the tax authority with these data represented in a soft copy and in the spreadsheet format.

7. Taxpayers sha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in an sufficient and accurate manner, and bearing legal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and documents included in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at the request of the tax authority during the consultation procedures prior to the audit as prescribed by Article 12 hereof. The time limit for submission of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is no longer than 3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tax authority's request. Where sound reasons are provided by taxpayers, the submission deadline shall be extended only once to no longer than 15 working days as from the expiry date.

8. Independent external consultancy or audit companies or tax filing companies which act on behalf of taxpayers to file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shall be responsible for complying with legislation on tax administration for enterprises engaged in the transfer pricing referred to herein and assume legal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9. The Ministry of Finance shall provide specific guidance on information used for completing the Form No. 01, 02, 03 and 04 given in the Appendix hereto appended.

Article 11. Safe harbor for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1. A taxpayer shall be exempted from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referred to in Section III and IV of the Form 01 given in the Appendix to this Decree only if it is engaged in a related-party transaction with an entity that must pay corporate income tax within the territory of Vietnam, is subject to the same corporate income tax rate as applied to the taxpayer, and where neither of them is not offered the corporate income tax incentive within a specified tax period, but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bases for such exemption in Section I, II included in the Form No.01 of the Appendix to this Decree.

2. The taxpayer shall be responsible for declaration of transfer pricing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Form No.01 given in the Appendix to this Decree but shall be exempted from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a) Taxpayer is engaged in the transfer pricing but the total revenue arising within a specified tax period is less than VND 50 billion and the total value of the related-party transactions arising within a specified tax period does not exceed VND 30 billion;

b) Taxpayer already entering into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has submitted the annual report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on Advance Pricing Agreement. For tho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APA, taxpayers are obliged to comply with the aforesaid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0 hereof;

c) Taxpayer performing business activities by exercising routine functions, neither generating any revenue nor incurring any cost from operation or use of intangible assets, generating sales of less than VND 200 billion, as well as applying the ratio of net operating profit before loan interest and corporate income tax relative to sales revenue, engages in related-party transactions in the following sectors :

- Distribution : At least 5%;



- Manufacturing : At least 10%;
- Toll manufacturing : At least 15%.

Where taxpayer does not comply with the profit margins stipulated in this point, the aforesaid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shall be required.

Article 12. Duties and powers of tax authorities in management of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1. Apply risk management practices to tax administration for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on taxation.
2. Tax authorities shall consult the comparability analysis principle, transfer pricing principle and methods referred to herein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tax obligations of enterprises engaged in the transfer pricing in order to carry out tax imposition in the following cases :
 - a) If enterprises fully comply with accounting, invoicing and evidencing documentation regulations, setting thresholds of revenue, costs or taxable income for the purpose of determination of tax obligations shall adhere to the comparability analysis principle, transfer pricing methods and databases used in management of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as prescribed by this Decree;
 - b) If enterprises fall into other cases, imposition of tax shall be based on the tax authority's databas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on tax imposition applied to enterprises that have not fully complied with accounting, invoicing and evidencing document regulations or regulations on handling of tax violations.
3. Tax authorities shall have authority to set the level of price, profit margin or profit allocation rate which is used for tax assessment or setting thresholds for taxable revenue or corporate income tax amount payable with respect to taxpayers engaged in the transfer pricing within a specified tax period, based on information, data and analysis of assessment of the tax authority in the cases where taxpayers commit violation against transfer pricing legislation as follows :
 - a) Taxpayers do not provide or insufficiently provide information or do not submit the Form No.01 given in the Appendix hereto appended;

b) Taxpayers provide insufficient information required in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referred to in the Form No. 02, 03 given in the Appendix to this Decree or do not present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and data, evidencing documents and materials used as the basis for comparability analysis and redetermination of prices in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at the tax authority's request within the permitted time limits referred to herein.

c) Taxpayers use inaccurate or unreliable information about independent information to carry out comparability analysis, declare and determine the transfer price, or rely on materials, data and evidencing documents which are illegitimate, invalid or are of unclear origin to determine the level of price, profit margin or profit allocation rate applicable to related-party transactions;

d) Taxpayers commits any violation against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set out in Article 11 hereof.

4. The tax authority shall be responsible for securing information provided by taxpayers relating to the transfer pricing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laid down herein. Provision of information to other entities or organizations shall be subject to Clause 5 of this Article.

5. Where there is any issue relating to policies or regulations concerning industries and specialized sectors after the transfer pricing audit, the tax authority shall ask for advice from entitie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involved, specifically including :

a) Sectoral regulatory authorities, sectoral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shall be advised;

b) The tax authority sha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dossiers, information and documents relating to the transfer pricing for sectoral entities or organizations giving advice. Entities giving advice shall be responsible for securing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6. The tax authority shall exchange information with taxpayers and counterparty tax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consultation procedures implemented prior to, during and after the transfer pricing audit as follows :

a) Where, through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measures to tax administration of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the tax authority finds it necessary to



exchange information with taxpayers about the Form No.01 given in the Appendix to this Decree and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of taxpayers, the tax authority shall send a request for consultation with taxpayers in order to exchange and provide in advance information about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of taxpayers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set forth in this Decree;

b) Where the tax authority needs to contact or discuss with the tax authority about the Country-by-Country report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under the provisions on bilateral agreement and information exchange formalities in the relevant tax treaties. Where necessary, the tax authority shall notify taxpayers in writing of temporary suspension of the transfer pricing audit in order to exchange information with the counterparty tax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on taxation;

c) The tax authority shall be responsible for facilitating taxpayer's demonstration of and explanation for figures or data of independent comparables used in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ackage.

7. Where the tax authority signs the APA with taxpayers, the tax authority shall assume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

a) Manage and audit related-party transactions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APA according to the risk management principle.

b) Manage and audit compliance of taxpayers with the APA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13. Responsibilities of ministries, sectoral departments and People's Committees of centrally-affiliated cities and provinces

1. The Ministry of Finance :

a) Assume responsibility for state management of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laid down herein;

b) Undertake and collaborate with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 communicating or disseminating state management of pric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c) Audit implementation of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set out herein.

2. The State Bank

Cooperate in provision of information or data on foreign loans and debt repayments of particular enterprises engaged in the transfer pricing with reference to the list requested by the tax authority, including data on loan turnover, interest rate, periods of interest and principal payment, actual fund withdrawal, debt (principal or interest) payment and other related information (if any).

3.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Cooperate in provision of data for registration of business industry of enterprises; database concerning investment fund structure at the licensing time and time of adjustment and amendment to the investment certificate or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relevant information on investment projects when the tax authority conducting the transfer pricing audit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sign of transfer pricing for tax evasion or avoidance purposes at the tax authority's request.

4.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hall, within their jurisdiction, have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and powers

Cooperate in provision of the database relating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industrial property right assignment agreement; transfer of plant variety rights; application document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ft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plant variety rights are established, and provide information when being consulted for the tax authority in order to carry out tax administration for related-party transactions.

5.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operate in provision of the database of enterprises licensed to do business in the fields within its jurisdiction and information about related-party transactions in the digital economy at the Ministry of Finance's request.



6.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Cooperate in provision of the database of transfer prices of commodities available for transactions on domestic commodity exchanges and information within its scope of management or information required for management of transfer prices by the tax authority.

7. People's Committees of centrally-affiliated cities and provinces

Direct the Departments of Planning and Investment, Departments of Finance and departments, subdepartments or divisions to establish the database within the scope of their sectoral management which is used for transfer pricing management.

Chapter III

IMPLEMENTATION PROVISIONS

Article 14. Entry into force

This Decree shall enter into force from May 1, 2017.

Article 15.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1. The Ministry of Finance shall provide specific guidance on Article 6, 7 and 8 Article 10, Point c Clause 2 Article 11; undertake and collaborate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sectoral authorities and People's Committees of centrally-affiliated cities and provinces in implementation of this Decree.

2. Ministers, Heads of Ministry-level agencies, Heads of Governmental bodies, Presidents of People's Committees of centrally-affiliated cities and provinces, and entities or individuals concerned, shall be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is Decree./.

PP. THE GOVERNMENT THE PRIME MINISTER Nguyen Xuan Phuc



6 이전기격 보고서식

Form No.01

INFORMATION ABOUT RELATED-PARTY RELATIONSHIPS AND TRANSACTIONS

(Attached to the Corporate Income Tax Finalization Declaration Form No. 03/TNDN)

Tax period: fromto.....

[01] Taxpayer's name

[02]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	--	--	--	--	--	--

--	--	--

[03] Address:

[04] Urban/rural district: [05]

Province/city:.....

[06] Telephone:..... [07] Fax: [08] Email:

[09] Tax agent's name (if any):

.....

[10]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	--	--	--	--	--	--

--	--	--

SECTION I. INFORMATION ABOUT RELATED PARTIES

No.	Related party's name	Country	Tax identification number	Form of related-party relationship



(1)	(2)	(3)	(4)	(5)																
				A	B	C	D	Đ	E	G	H	I	K							
1																				
2																				
3																				
...																				

SECTION II. SAFE HARBOR FOR TRANSFER PRICING DECLARATION AND DOCUMENTATION

No.	Description of exemption or mitigation	Define whether or not exemption or mitigation is applied?
(1)	(2)	(3)
1	Exemption of transfer pricing declaration as specified hereunder in Section III and IV	
	Taxpayer is engaged in a related-party transaction with an entity that must pay corporate income tax within the territory of Vietnam, is subject to the same corporate income tax rate as applied to the taxpayer, and where neither of them is not offered the corporate income tax incentive within a specified tax period.	
2	Exemption from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a	Taxpayer is engaged in a transfer pricing transaction but the total revenue arising within a specified tax period is less than VND 50 billion and total value of the related-party transactions arising within that specified tax period does not exceed VND 30 billion	
b	Taxpayer already entering into Advance Pricing Agreement has submitted the annual report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on the Advance Pricing Agreement	
c	Taxpayer performs business activities by exercising routine functions, neither generates any revenue nor incurs any cost from operation or use of intangible assets, generates sales of less than VND 200 billion, as well as applies the ratio of net operating profit before loan interest and corporate income tax relative to sales revenue, and engages in related-party transactions in the following sectors:	
	- Distribution: At least 5%	
	- Manufacturing: At least 10%	
	- Toll manufacturing: At least 15%	

SECTION III. INFORMATION ABOUT TRANSFER PRICING

Unit: Vietnamese dong

No.	Description	Transaction value of sales to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value of purchases from the related party				Profit increased due to revaluation based on the arm's length price	Entrusted collection, payment, distribution to subsidiary resident	Transactions covered by APA
		Recognized value of related-party transaction	Predetermined value based on the arm's length price	Difference	Pricing method	Recognized value of related-party transaction	Predetermined value based on the arm's length price	Difference	Pricing method			
(1)	(2)	(3)	(4)	(5)=(4)-(3)	(6)	(7)	(8)	(9)=(8)-(7)	(10)	(11)=(5)+(9)	(12)	(13)
I	Total value of transactions arising from business activities											
II	Total value of transactions arising from related-party activities											
1	Goods											
1.1	Goods that are used for creating fixed assets											
	a Related party A											
	b Related party B											
	...											
1.2	Goods that are not used for creating fixed assets											
	a Related party A											
	b Related party B											
	...											
2	Services											
2.1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											
	a Related party A											
	b Related party B											
	...											
2.2	Advertisement and marketing service											
	a Related party A											
	b Related party B											
	...											
2.3	Business management, consultancy and training service											
	a Related party A											
	b Related party B											
	...											
2.4	Financial operation service											

8.1	Including revenue generated from loan interest				
9	Financial expenses				
9.1	Including loan interest expenses				
10	Amortization costs				
11	Net operating profits				
12	Net profit from which loan interest costs and corporate income taxed have not been deducted yet				
13	Net operating profits plus loan interest expenses and amortization costs (13=11+9.1+10)				
14	Ratio of loan interest expenses to net operating profits plus loan interest expenses and amortization costs				
15	Profit margin used for transfer pricing				
a	Margin of.....				
b	Margin of.....				
c				

2. This field intended for taxpayers operating in the banking and credit industry

Taxpayer who has already signed the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	------------------------------	-----------------------------

Unit: Vietnamese dong

No.	Indicator	Value of related-party transaction		Value of transactions with unrelated parties	Total value of transactions arising from business activities within a specified tax period
		Value defined based o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Value defined based on the APA price		
(1)	(2)	(3)	(4)	(5)	(6)=(3)+(4)+(5)
1	Interest income and other similar income				
2	Interest payments and other similar expenses				
3	Net interest income				
4	Income generated from service operations				
5	Expenses incurred from service operations				
6	Profit/loss from service operations				



7	Profit/loss from foreign exchange business operations				
8	Net profit/loss from sale and purchase of trading securities				
9	Net profit/loss from sale and purchase of investment securities				
10	Income generated from other operations				
11	Expenses incurred from other operations				
12	Net profit/loss from other operations				
13	Income generated from capital contributions and share purchases				
14	Operating expenses				
15	Expenses incurred from credit risk provisions				
16	Gross profit before tax				
17	Net operating profit (17=16-12)				
18	Profit margin used for transfer pricing				
a	Margin of.....				
b	Margin of.....				
c				

3. This field intended for taxpayers that are securities companies, securities investment fund management companies

Taxpayer who has already signed the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	------------------------------	-----------------------------

Unit: Vietnamese dong

No.	Indicator	Value of related-party transaction		Value of transactions with unrelated parties	Total value of transactions arising from business activities within a specified tax period
		Value defined based o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Value defined based on the APA price		
(1)	(2)	(3)	(4)	(5)	(6)=(3)+(4)+(5)
1	Receipts from fees for provision of services to customers and sole proprietorship activities				

a	Receipts from fees for securities brokerage services				
b	Receipts from fees for portfolio management services				
c	Receipts from fees for underwriting and issuing agent services				
d	Receipts from fees for financial consultancy and securities investment services				
d	Receipts from fees for securities investment fund management and bonuses awarded to fund management companies				
e	Receipts from fees for fund certificate issuance services				
g	Remunerations paid to management boards for their participation in other companies' management boards				
h	Difference in securities selling and buying prices defined within a specified tax period, receipts from interest on bonds in sole proprietorship activities of securities companies, financial investment activities of fund management companies				
i	Other receipts prescribed by laws on provision of services to customers and sole proprietorship activities				
2	Expenses for provision of services to customers and expenses for sole proprietorship activities				
a	Payments of fees for membership of securities trading centers (if the declaring company is a member of a securities trading company)				
b	Expenses for securities depository services, fees for trades in securities carried out at securities trading centers				
c	Fees for listing and registration of securities (if the declaring company is a company issuing securities listed at a securities trading center)				
d	Expenses associated with management				

	of investment fund or portfolio management services				
d	Costs of mobilization of capital for investment funds				
e	Loan interest payments				
g	Remunerations paid to the management boards				
h	Payments of taxes, fees, charges payable associated with business operations				
i	Payments for management and official duty activities, employee costs				
k	Payments for amortization of fixed assets, other asset-related payments				
k.1	Payments for amortization of fixed assets				
k.2	Other asset-related payments				
1	Amounts set aside for provisions for proprietary-trading securities				
m	Other payments prescribed by laws on provision of services to customers and sole proprietorship activities				
3	Profit (loss) derived from provision of services to customers and sole proprietorship activities				
4	Other income generated from activities other than provision of services to customers and sole proprietorship activities				
5	Other expenses for provision of services to customers and sole proprietorship activities				
6	Profit (loss) from activities other than provision of services to customers and sole proprietorship activities				
7	Total profit recorded in accounting books before corporate income tax				
8	Net operating profit (9)=(7)-(6)				
9	Net profit from which loan interest costs and corporate income taxed have not been deducted yet				
10	Net operating profits plus loan interest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베트남)

	expenses and amortization costs (10)=(8)+(2e)+(2k1)				
11	Ratio of loan interest expenses to net operating profits plus loan interest expenses and amortization costs				
12	Profit margin used for transfer pricing				
a	Margin of				
b	Margin of				
c				

I herein undertake that data shown above are true and assume legal liability for these data./.

.....,date (dd/mm/yyyy)

TAX AGENT'S OFFICER

Full name:.....

Practicing certificate No.....

TAXPAYER or TAXPAYER'S LEGAL REPRESENTATIVE

(Sign and write full name; specify title and stamp (if any))

Form No.02

LIST OF REQUIRED INFORMATION AND DOCUMENTS IN THE LOCAL FILE

(Attached to the Corporate Income Tax Finalization Declaration Form No. 03/TNDN)

Tax period: fromto.....

[01] Taxpayer's name:

.....

[02]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	--

[03] Address:

[04] Urban/rural district: [05]

Province/city:.....

[06] Telephone:..... [07] Fax: [08] Email:

.....

	related parties involved in respective related-party transactions, including any change made in comparison with the prior year		
2.6	Interpretation of the most appropriate pricing method classes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reasons for selection of the recommended pricing method		
2.7	Definition of the related party selected for transfer pricing and explanation for such selection		
2.8	Summary of material presumptions upon application of the recommended pricing method		
2.9	Explanation for analysis of multiple year data (if any)		
2.10	List and descrip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independent comparables and financial information and indicators necessary for analysis of transfer prices, including description of the method for searching comparison data and sources of information as references for such searching activity.		
2.11	Description of comparability adjustments that have already been made, reasons and materials related to adjustment results		
2.12	Description of reasons and interpretation showing that application of the recommended pricing method has observed the arm's length principle		
2.13	Summary of information about quantitative financial indices, indicators and criteria, reasons and interpretation showing that these indicators are used during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the recommended pricing method		
2.14	Copy of the unilater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APA and other tax agreements related to related-party transactions of the taxpayer to which the Vietnam's tax authority is not a participating party or signatory.		
3	Financial information:		
3.1	Taxpayer's financial report prepared in the declaration year		
3.2	Information about and plan of distribution and method of use of financial data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the recommended pricing method		
3.3	Brief description of related financial data used in the process of comparability analysis and data sources		
3.4	Summary of reasons and explanation for causes, business and investment plan and development strategy of enterprises whose income statements show they have incurred operating losses for at least 3 years.		

The company herein undertake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form and attached documents are true and assume legal liability for such information./.



....., date (dd/mm/yyyy)

TAX AGENT'S OFFICER

TAXPAYER or TAXPAYER'S 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Sign and write full name; specify title and stamp (if any))

Practicing certificate No.

Note:

- Keep blank in columns where no information is provided.

Form No.03

LIST OF REQUIRED INFORMATION AND DOCUMENTS IN THE GLOBAL MASTER FILE

(Attached to the Corporate Income Tax Finalization Declaration Form No. 03/TNDN)

Tax period: from to.....

[01] Taxpayer's name:

.....

[02]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	--

[03] Address:

[04] Urban/rural district: [05] Province/city:

[06] Telephone: [07] Fax: [08] Email:

[09] Tax agent's name (if any):

.....

[10] Tax identification number

--	--	--	--	--	--	--	--	--	--	--	--	--	--	--	--	--	--	--	--

--	--	--	--

The company reports information or documents already prepared and filed according to the Form No.03 as follows:

No.	Description	Created and filed	Remark
1	Organizational structure:		
1.1	Chart illustrating the ownership structure, legal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and geographic locations of its active subsidiaries.		
2	Information about business operations carried out by the corporation, including:		
2.1	Key elements and major distribution channels generating business profits		
2.2	Description of the supply chain of 5 major products and/or services of the corporation defined based on their sales and any products and/or services accounting for more than 5% of total sales of the corporation, including information about important geographic markets of these products and services. Description may take the form of a chart or diagram.		
2.3	List and brief description of agreements on material services between the corporation's members that exclude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services and includes competency of head or main offices at a global and regional level that provide important services and transfer pricing policies with the aim of distribution of service costs and determination of the prices for the corporation's internal services. Summary of main reasons and explanation for the circumstance where the corporation carries out purchase, advertising and marketing activities through centralized commercial and marketing centers.		
2.4	Description of main geographic markets of the corporation's produc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2		
2.5	Documented description of analysis of the head or main office's functions of giving contributions to values created by the corporation's local business establishments, e.g. material functions performed, material risks assumed and material assets used.		
2.6	Description of material business restructuring transactions, acquisitions or mergers arising within the specified fiscal year		
3	Information about the corporation's intangible assets:		
3.1	General description of the overall strategy of a MNE for development, ownership and use of intangible assets, including locations of establishments carrying out R&D of head or main offices and locations where R&D activities are managed		
3.2	List of intangible assets or group of intangible assets in the corporation that have material impacts on transfer pricing		



	policies and are legally owned by subsidiary companies		
3.3	List of important agreements between related parties on intangible assets,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arrangements on provision of research service for head or main office and other licensing or concession arrangements		
3.4	General description of transfer pricing policies applied by the corporation to R&D and intangible asset operations		
3.5	General description of transfers of important interests involving intangible assets between related parties in the related fiscal year, including information about subsidiaries and countries participating in such transfers and other relevant payments		
4	The corporation's inter-company financial operations:		
4.1	General description of financial distribution mechanism of the corporation, including financial and financing arrangements with independent lenders		
4.2	Information used for defining any member of the corporation that provides financial functions and centralized funds for the corporation, including countries where its subsidiaries are established and actual head offices of these subsidiaries		
4.3	General description of transfer pricing policies applied by the corporation to financial and financing arrangements between related parties		
5	Operating results and tax obligations of the corporation:		
5.1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declaration year of the corporation and reports, financial, internal management mechanisms for tax assessment purposes of the corporation; applicable tax rates for determination of tax obligations relative to profits obtained from business operations carried out by related parties involved in related-party transactions with the taxpayer		
5.2	List providing brief description of unilateral APAs and other tax policies relating to income distribution between countries		

The company herein undertake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form and attached documents are true and assume legal liability for such information./.

.....,date (dd/mm/yyyy)

TAX AGENT'S OFFICER

Full name:.....

Practicing certificate No.....

TAXPAYER or TAXPAYER'S LEGAL REPRESENTATIVE

(Sign and write full name; specify title and stamp (if any))



Name of the multinational group:														
Country	Subsidiary companies that are residents in host states	Countries or territories of business registration, in case other than countries or territories of tax residence	Business operations											
			Research and development	Holding or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urchase of products	Manufacturing or production	Sale, marketing or distribution of products	Operation, management and other auxiliary services	Rendering services to unrelated parties	Inter-group financial activities	Prescribed financial services	Insurance	Holding of shares or other capital instruments	Inactive companies
1.														
2.														
3.														
.....														

I herein undertake that data shown above are true and assume legal liability for such data./.

....., date (dd/mm/yyyy)

TAX AGENT'S OFFICER

TAXPAYER or TAXPAYER'S 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Practicing certificate No. (signature, stamp (write full name and title))

Note: Keep blank in columns where no information is provided.

1 Taxpayer marks "x" in the column "form of related-party relationship" as referred to in Clause 2 Article 5 hereof. Where a related party involves in more than one form of related-party relationship, taxpayer is required to mark "x" in the appropriate cells.

2 Taxpayer marks "x" in the appropriate rows.

3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to subsidiary residents, defining whether sales or costs are distributed is required.

4 Taxpayer marks "x" if a transaction is covered by APA and "no" if a transaction is not covered by APA.



재무부
국세청

제 1 부

2017년 9월 ~ 현재 신규 세제정책 및 행정제도

A. 신규 세제정책

I. 부가가치세

1. 2017.9.19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제 93/2017/TT-BTC호는 부가가치세 산출 방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함.

- (i) 신설 사업장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억동 미만인 사업장이 부가세 산출 방법을 (매입세액)공제법을 적용할 경우 제출하던 양식 제 06/GTGT를 폐지함.
- (ii) 부가세 산정방식을 변경할 경우 양식 06/GTGT의 제출규정을 폐지함.
- (iii) 2013.11.6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156/2013/TT-BTC호 제 11조(재무부 2015년 2월 27일자 시행규칙 제 26/2015/TT-BTC호 제 2조 및 2014년 8월 25일자 시행규칙 119/2014/TT-BTC호 제 1조로 수정 보완되었음)에 규정한 부사계신고서류에 의한 부가세 산출방식 관련 안내를 추가 규정함.

2017.11.5일 이후부터 시행규칙 93/2017/TT-BTC호가 발효됨에 따라 부가세 산출방법은 사업장이 조세기관에 제출한 부가세신고서류에 근거하여 확정됨.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매입세액공제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양식 01/GTGT, 02/GTGT을 작성하여 조세기관에 제출함.
- 직접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양식 03/GTGT, 04/GTGT을 작성하여 조세기관에 제출함.

2013.11.6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156/2013/TT-BTC호의 부록으로 발행된 부가세 신고서 양식 01/GTGT, 02/GTGT, 03/GTGT và 04/GTGT는 2014년 8월 25일자 시행규칙 119/2014/TT-BTC호와 2015년 2월 27일자 시행규칙 제 26/2015/TT-BTC호를 통해 수정 보완되었음)

2. 2017.12.15일자 내각 시행령 제 146/2017/ND-CP호(2018년 2월 1일 발효)는 2016.7.1일자 시행령 제 100/2016/ND-CP호와 2015.2.12일자 시행령 제 12/2015/ND-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함.
2018.3.16일자 시행규칙 제25/2018/TT-BTC호는 상기 시행령146/2017/ND-CP호의 시행을 안내함.

시행령 146호 와 시행규칙 25호의 신규규정은 다음과 같음.

(i)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속한 수출용 천연자원의 경우

- ‘부가세 면세대상인 광물 등 천연자원을 주원재료로 가공하여 천연 자원과 에너지의 원가상 비중이 51%를 초과하는 수출품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규정조건을 만족하면 영세율 적용 받음.
- + 사업장이 광물 등 천연자원을 직접 채굴하여 가공하거나 다른 곳에 아웃소싱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에서 또다시 가공을 거쳐 생산한 수출품 (폐쇄적인 가공공정 또는 공정별 생산라인, 공장 설립)
- + 사업장이 광물 등 천연자원을 구매하여 직접 가공하거나 다른 곳에 아웃소싱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또다시 가공을 거쳐 생산한 수출품 (폐쇄적인 가공공정 또는 공정별 생산라인, 공장 설립)
- + 수출품이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업장이 구매하여 가공하거나 아웃소싱하는 천연자원이 아닌 주원재료로 생산된 것

- 운임비를 포함하지 않은 조건으로 가공원료인 광물 등 천연자원의 가격을 산정 안내함.

가공공정에 투입된 광물 등 천연자원 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출됨 : 사업장이 직접 제공한 천연자원인 경우 천연자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제공장에서 가공장소까지의 운임비를 제외함)이고 사업장이 천연자원을 구매하여 가공하는 경우 제공장에서 가공장소까지의 운임비를 제외한 실제 구매가격임.

(ii) 수출용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 수출할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음.

2018년 2월 1일 이후 : 재화를 수입하여 비관세구역 수출하거나 수입·외국 수출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매월 또는 매분기 신고 사업장 중 공제 전 매입세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 사업장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

II. 법인세

2018.3.16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제 25/2018/TT-BTC호는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시 손금불산입 비용에 관해 규정한 시행령 146/2017/ND-CP호의 시행을 안내함.

- 시행규칙 제 25/2018/TT-BTC호 제 3조 1항은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산입 비용 및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함.

“기업이 법규정에 따라 자산을 포함하여 자본의 일부 또는 기업전체를 이전하는 경우에 양수 받은 기업은 양도기업의 회계장부 상에 기록된 고정자산가치에 의한 감가상각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산에 한하여 해당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공제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시행령 제 25/2018/TT-BTC 호 제 3조 3항에는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정 시 자발적인 연금 보험 등 근로자를 위한 생명보험료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



공제가능 상한액(손금산입 상한)에 관해 보완하였음. 동시에 연금보험 기금, 자발적 연금보험 가입, 생명보험 등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 공제금액을 월 1인당 100만동에서 월 1인당 3백만동으로 상향 조정함.

기존 규정 : 근로자를 위한 생명보험료 납부 비용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서, 회장, 이사장, 사장이 회사의 재무 규제에 따라 규정한 재무 규제, 상여금 규제 등과 같은 문서 상에 향유 조건 및 기준이 명기되면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전액을 공제가능비용으로 산정됨.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임의 생명보험료, 임의 연금기금 적립금으로 인당 월간 1백만동을 초과하지 않는다.

III. 토지 세제정책

2017.1.14일자 정부 시행령 제 123/2017/ND-CP호는 토지 사용료, 토지임대료, 수면임대료 징수에 관해 규정하는 각종 시행령의 조항을 수정보완함.

1. 토지사용료

- 2017.11.14일자 정부 시행령 제 123/2017/ND-CP호 제 2조 제 3항은 ‘주거용지에서 비농업적 공상업용지로 전환한 토지를 개인 및 가정의 주거용 토지로 사용 목적을 제 전환하는 경우에 토지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함.

2. 토지임대료

2.1. 공공기관의 토지 사용료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

국가로부터 토지를 무료로 할당받거나 토지 임대의 전기간에 걸쳐 임대료 면제 받은 공공기관은 토지의 전면적 또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 영업, 서비스업, 임대업, 합작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유자산 관리 및 사용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 a) 국가로부터 할당받거나 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전부를 생산, 영업, 서비스업, 임대업, 합작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임대료는 일반 사업체의 영업생산용 토지 임대료 간주하여 산출함.
- b) 국가로부터 할당받거나 임대한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생산, 영업, 서비스업, 임대업, 합작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임대료는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가 공포한 토지단가표, 토지임대료 단가퍼센테이션표, 지가조정율과 생산, 영업, 서비스업, 임대업, 합작경영의 목적으로 사용된 토지의 비중에 근거하여 계산함.
- c) 상기 b에서 생산, 영업, 서비스업, 임대업, 합작경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율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토지임대료는 분배율에 따라 산출함. 분배율은 생산, 영업, 서비스업, 임대업, 합작경영으로부터 얻은 매출액과 관할기관이 승인한 공공 수입예산 총액의 비율임.

2.2.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절차 및 서류를 안내함.

- + 복지주택, 공동묘지 투자사업에 대해 토지사용료 감면
- + 복지주택 임대 또는 매입자가 그 주택을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 납부할 토지사용료 산출방법
- + 토지임대료 감면 절차 및 구비서류
- + 2014년 투자법 제 47조 제 1항에서 규정된 불가항력 조항에 의해 영업의 임시중기기간에 대한 토지임대료 면제 절차 및 구비서류
- + 토지 임대 대상에 속했으나 투자사업이 없는 경우에 대한 토지 임대료 감면 절차 및 구비 서류
- + 2014년 투자법 제 47조 제 1항에서 규정된 불가항력 조항에 의해 영업의 임시중기기간에 대한 토지임대료 면제 절차 및 구비서류
- + 산업단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자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해 토지임대료 감면 서류
- + 과학연구단지 건립용 토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서류



3. 2018.1.30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제 10/2018/TT-BTC호는 토지사용료 징수 규정인 2014년 5월 15일자 정부 시행령 제 45/2014/ND-CP호를 안내하는 2014년 6월 16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제 76/2014/TT-BTC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함.

- 재무부 시행규칙 제 10/2018/TT-BTC호 5 항, 6항은 다음 규정을 추가함.
 - +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인/가정 주거용 토지를 양도받은 공사업 용지로 전환한 후 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다시 거주용지로 목적 전환한 경우에 토지사용료는 관할 정부기관이 승인한 사업세부계획에 의해 계산된 토지사용료에서 토지 사용 목적 전환 시점에 개인/가정용 주택 건설 계획에 의해 계산된 토지사용료를 뺀 차액임.
 - + 사업체가 정부 시행령 제 01/2017/ND-CP호 제 2조 29항, 30항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전환하여 유료 토지할당방식에 의해 지속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는 사용목적 전환 이후의 토지종류의 단가 (시행규칙 제 10/2018/TT-BTC호 제 3조 1항에 규정함)와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에서 사용목적 전환승인 시점에 원래 토지유형의 가격과 잔여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된 토지 사용료를 뺀 차액으로 산출함.
- 제 3조에는 다음 규정을 추가함. 토지를 사용하는 개인/가족이 정부 시행령 제01/2017/ND-CP호 제 2조30항 규정에 의해 유료 토지할당 방식으로 토지의 사용목적을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는 사용목적 전환 이후의 토지종류의 단가 (시행규칙 제 10/2018/TT-BTC호 제 3조 1항에 규정함)와 토지사용기간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에서 사용목적 전환승인 시점에 원래 토지유형의 가격과 잔여사용기간에 따라 계산된 토지사용료를 뺀 차액으로 산출함.

4. 2018.1.30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제 11/2018/TT-BTC호는 토지, 수면 임대료 징수에 대해 규정한 2014.5.15일자 정부 시행령 제 46/2014/ND-CP호의 일부 조항을 안내하는 2014.6.16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제 77/2014/TT-BTC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함.

- 시행규칙 제 11/2018/TT-BTC호 제 1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자가 혼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 시설 또는 정부의 운영권에 속한 토지, 건물을 이용하는데 대상자별로 사용 토지의 면적을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각 사용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토지임대료는 분배율과 각자의 건축면적을 곱하여 산출하고 2014.7.1부터 적용함.

a) 이중 분배율은 유료임대 토지전면적과 각 대상자가 사용하는 건축 면적의 합산의 비율임.

b)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인 경우 지하층의 면적 50%를 건물의 건축 연면적에 합하여 분배율을 계산함.

지하층의 면적은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대상자의 공동소유인 경우에 대상자수에 따라 동등하게 분할됨.

지하층의 면적은 토지임대료 부담자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면적을 분배하여 토지임대료를 계산함.

+ 토지 사용이 연장된 자, 토지임대료 납부 대상자인 경우 토지임대료는 연장시점에 토지정책과 단가에 따라 산출함.

연납방식 토지임대의 경우 토지임대단가 안정화 주기는 관할기관이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 승인한 시점부터 시작함.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관할 기관의 토지 임대기간 연장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간만료 시점부터 연장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토지임대료를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가 공포한 토지 단가표, 토지단가조정율, 토지임대단가 계산 퍼센테이션 등에 따라 계산하여 연납하도록 함. 동 기간에 토지임대단가 안정화(5년 1회)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제 2조에는 다음 내용을 추가함 : 임대료 일시납 대상의 토지를 무료로 임대한 자가 (혜택을 받지 않고) 토지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나머지 임대기간에 대한 일시납 임대료는 임대료납부 허가요청서 제출 시점의 토지정책 및 단가에 따라 계산됨.

B. 국세행정 개혁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청은 중앙 정부의 행정개혁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2017, 2018년 국세청의 행정개혁 계획안에 따라 행정개혁 업무를 엄격히 지도 실시하였음. 국세청 직속 기관들로 하여금 행정개혁의 6개 과제인 체제개혁, 행정절차개혁, 공공행정조직개혁, 공무원 역량강화, 공공재무개혁 및 행정현대화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청은 중앙 정부의 행정개혁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2017, 2018년 국세청의 행정개혁 계획안에 따라 행정개혁 업무를 엄격히 지도 실시하였음.

1. 체제개혁

법제도 마련업무 :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은 2017.9~2018.7기간에 정책 및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을 검토한 이후 관할기관에 승인제출하였음. 구체적으로 국회는 국세청이 제출한 조세관리법 개정을 위한 계획안을 2019년 법, 법령 제개정계획 및 2018년 법, 법령 제개정 계획 조정에 관한 2018.6.8일자 국회 결의 제 57/2018/QH14호를 통해 통과시켰음. 정부(총리실)는 재화판매, 서비스제공 시 전자영수증 제도를 조정할 시행령의 제정에 동의하였음. 3개의 신규 시행규칙(2013.12.31일자 시행규칙 제 219/2013/TT-BTC호 제 12조 3~4항을 수정 보완하고 2013.11.6일자 시행규칙 제156/2013/TT-BTC호 제 11조 7항을 폐지하는 2017.9.19일자 (1) 시행규칙 제 93/2017/TT-BTC호,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세의 전자신고·납부 시범운영 및 등록세



전자 징납 관련 전자정보교환을 규정하는 2018.1.22일자 (2)시행규칙 제 05/2018/TT-BTC호, 2016.7.1일자 시행령 제 100/2016/ND-CP호와 2015.2.12일자 시행령 제 12/2015/ND-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2017.12.15일자 시행령 제 146/2017/ND-CP호(2018년 2월 1일 발효)를 안내하는 2018.3.16일자 (3)시행규칙 제 25/2018/TT-BTC호)의 제정 승인을 위해 재무부에 요청하였고 2018년에 총괄 맡은 시행규칙의 수립을 지속함.

2. 국세행정개혁

정부 Resolution 제 2017/NQ-CP호와 제19-2018/NQ-CP호의 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세청은 재무부의 지도에 따라 국세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 검토 및 연구해왔음.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 관련 업무프로세스(내국세 회계프로세스, 세무 신고프로세스, 세금신고·납부프로세스, 세무감사절차 등)를 변경하거나 새로 구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음. 소매상 및 영수증 발급 프로세스의 수정작업을 완료함.

- **국세행정절차 공개**: 국세청은 재무부 관할 국세 행정절차 2가지(지방국세 청급과 세무서급 부가가치세 산출방법의 변경적용)의 폐지를 공포하는 2017.11.16일자 재무장관 고시를 제정하도록 건의하였음. 국세 행정절차의 공개는 본청의 홈페이지 www.gdt.gov.vn나 하노이청 홈페이지 www.hanoi.gdt.gov.vn, 호치민청 홈페이지 www.hcmtax.gov.vn 등 63개 지방청의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 본청급 행정절차인 경우 본청 각 부서 사무실에 부착하며, 납세자가 국세행정절차에 대해 인지하도록 국가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 **국세 행정절차 점검, 평가 및 간소화**: 국세청은 2017.12.29일자 재무장관 고시 제2707/QĐ-BTC호에 따라 재무부 관할 하에 있는 국세 행정절차 16 가지에 대한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2018.1.25일자



국세청 결정서 제105/QD-TCT호에 첨부된 계획안에 따라 국세행정절차 30개의 간소화 검토 중이며 재무부 공문서 제 2554/BTC-THTK호의 요구사항인 3, 4등급 수준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도입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검토하고 있음.

3. 세정 현대화

국세청은 2017.9부터 2018.7까지의 기간동안 전자 세금신고·납부, 조사기관 인증제 전자영수증제도, 전자 세금환급 등 정보기술을 접목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옴으로써 2015.10.14일자 정부Resolution 제 36a/NQ-CP호와 Resolution 제 19-2017/NQ-CP호, 제 19-2018/NQ-CP 호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 하도록 함.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세금신고 시스템 확대** : 국세 전자신고 시스템은 지방 국세청 63곳과 세무서 전체 범위로 도입되었음. 2018.7.20일까지 전국 등록기업수(670,903개)의 99.96%인 670,403개의 업체가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전자시스템을 통해 전국범위 약 5,270건의 세금신고서가 접수 되었음.
- **국세 전자납부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47개의 시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납부를 위한 연계망을 완료하였고 63개의 지방 국세청에서 전자납부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서비스 이용의 확대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음. 2018년7월 20일 기준으로 전국 운영중인 기업의 98.1%인 658,186개의 업체가 조세기관에 서비스이용등록한 바가 있음. 그 중 은행과 전자납부서비스를 등록한 업체는 645,225개사로 전체 기업수 대비 96.17%를 차지하였음. 한편, 2018년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자납부방법을 통해 납세한 1,908,025 신고건의 세수입은 328,268조동을 기록하였음.
- **세기 내 세금의 전자신고 및 납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운영 및 철저히 감독함.**



- **국세 전자환급** : 2017년 8월4일부터 전국63개성 납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 2018년1월 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자세금환급 서비스를 이용 등록한 기업이 5,135개로 환급 수요가 있는 기업 5,775개의 88.92%를 차지함. 환급 신청한 12,163개의 신청서 중 92.68%를 차지한 신청서 11,273개는 전자방식을 통해 접수되었고 이중 환급절차가 완료한 약 8,208건에 42.138조 동을 환급하였음
- **인증제 전자영수증발급 시스템의 구축과 시범 추진** : 하노이와 호치민 소재 기업들이 조세기관 인증제 전자영수증 서비스의 시범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안 2015.9부터 2018.7까지 총 247개 기업이 조세기관의 인증을 통해 매출액 약 72.271조 VND을 상당한 6,649,635개의 전자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한편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정부 Resolution 제 36a/NQ-CP호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2018년초부터 국세청은 맡은 임무를 목표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공공서비스 온라인 제공 현황** :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절차가 298개 중 124개로 3등급 이상의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음. 63개의 지방청과 본청 모두는 조세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한 상태임.
 - + 다음 7개의 공공서비스를 3등급 이상의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온라인영수증신고, 온라인 수수료영수증 사용신고, 세금신고 및 납부, 개인 소득세 온라인 신고, 전자환급, 세금영수증 위조방지 코드발급시스템 (“세제정책문답웹사이트” 서비스를 298행정절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사유로 제외시킴)
- **토지세, 영업면허세의 전자 신고·납부 서비스 도입**
 - + 전자신고 : 국세청은 20개의 지방국세청(하노이, 호치민, 팡찌, 후에, 다낭, 푸터, 박닝, 라오까이, 디엔비엔, 호아빙, 라이쩌우, 타이응웬, 박장, 하장, 박간, 까오방, 랑선, 하이즈엉, 흥옌, 옌바이)(Hà Nội, TP. Hồ Chí Minh,



Quảng Trị, Thừa Thiên Huế, Đà Nẵng, Phú Thọ, Bắc Ninh, Lào Cai, Điện Biên, Hoà Bình, Lai Châu, Thái Nguyên, Bắc Giang, Hà Giang, Bắc Cạn, Cao Bằng, Lạng Sơn, Hải Dương, Hưng Yên, Yên Bái)의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 면허세 신고에 전자방식을 적용하였음. 그 결과로 2018.1.1부터 2018.7.20까지 등록된 총 8,611개의 계정(하노이청 : 2,577; 호치민청 : 5,380, 기타청 합계 : 654)을 통해 54,046 건(하노이청 : 14,431 건; 호치민청 : 39,047건; 기타청의 합산 : 320 건)이 신고되었음.

+ 전자납세 : 시중은행 3곳(Vietcombank, VietinBank, AgriBank)과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연계함.

- 자동차, 오토바이 등록세 전자 신고·납부 서비스 도입

+ 응용프로그램 개발 : 현재 등록세 전자 신고·납부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

+ **법적 근거** : 재무부는 2018.1.22일자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록세 전자 신고·납부 시범 추진 및 등록세 징납 관련 전자정보 교환에 대해 안내하는 시행규칙 제 05/2018/TT-BTC로를 제정한 바가 있음.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교통경찰국, 등록국과 함께 기관간 업무 협업을 위한 규칙을 작성 완료하였음. 현재 교통경찰국과 등록국은 업무 협업규칙의 서명을 위해公安부 및 교통부의 상부에 보고 중임. 그러나公安부와 교통운송부 지도부로부터 별다른 지시가 내려지지 않아 업무협업규칙 서명을 통한 시스템 도입근거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017년 9월 이후 제정된 법률문서 목록

1. 2017.9.19일자 재무부 시행규칙 제93/2017/TT-BTC호는 2013.12.31일자 시행규칙 제219/2013/TT-BTC호의 제12조 3~4항(2014.8.25일자 시행규칙 제119/2014/TT-BTC호를 통해 수정됨)을 수정 보완하였고 2013.11.6일자 시행규칙 제156/2013/TT-BTC호의 제 11조 7항의 폐지를 규정함.
2. 2018.3.16일자 시행규칙 제25/2018/TT-BTC호는 2017.7.1일자 정부 시행령 제100/2016/NĐ-CP호와 2015.2.12일자 정부 시행령 제12/2015/NĐ-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2017.12.15일자 정부 시행령 제146/2017/NĐ-CP호 (발효일 2018.2.1)의 시행을 안내함.
3. 2018.1.30일자 시행규칙 제10/2018/TT-BTC호는 토지사용료에 대해 규정한 2014.5.15일자 정부 시행령 제45/2014/NĐ-CP호의 일부 조항을 안내하는 2014.6.16일자 시행규칙 제76/2014/TT-BTC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함.
4. 2018.1.30일자 시행규칙 제11/2018/TT-BTC호는 토지, 수면 임대료 징수에 대해 규정한 2014.5.15 정부 시행령 제46/2014/NĐ-CP호의 일부 조항을 안내하는 2014.6.16일자 재무부 제정 시행규칙 제77/2014/TT-BTC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함.
5. 2018.1.22일자 재무부 제정 시행규칙 제05/2018/TT-BTC호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록세 전자 신고·납부 시범 추진 및 등록세 징납 관련 전자정보 교환에 대해 안내함.
6. 2017.11.16일자 재무부 장관고시 제2369/QĐ-BTC호는 재무부 관할에 속한 조세관리분야의 일부 행정절차의 폐지를 공포함.
7. 조세관리법 개정안에 보완된 사항.



8 베트남 주요 웹사이트



□ 대사관

-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vn-ko>
- 주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 : www.vietnamembassy-seoul.org

□ 중앙정보부처

-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 <http://www.chinhphu.vn>
- 건설부 : <http://www.xaydung.gov.vn>
- 외교부 : <http://www.mofa.gov.vn>
- 법무부 : <http://www.moj.gov.vn>
- 재무부 : <http://www.mof.gov.vn>
- 산업통상부 : <http://www.moit.gov.vn>
- 교통부 : <http://www.mt.gov.vn>
- 투자기획부 : <http://www.mpi.gov.vn>
- 보건부 : <http://www.moh.gov.vn>
- 과학기술부 : <http://www.most.gov.vn>
- 자원환경부 : <http://www.monre.gov.vn>
- 내무부 : <http://moha.gov.vn/>
- 국방부 : <http://www.mod.gov.vn/>
- 公安部 : <http://www.mps.gov.vn/>
- 문화체육관광부 : <http://www.bvhttdl.gov.vn/>



□ 경제

- 국세청 : www.gdt.gov.vn
- 베트남 국가은행 : www.sbv.gov.vn
- 무역진흥국 : www.viettrade.gov.vn
- 기업개발국 : www.business.gov.vn
- 베트남 산업인력관리공단 : www.vcci.com.vn
- 호치민시 무역·투자 촉진센터 : [www,itpc.hochiminhcity.gov.vn](http://www.itpc.hochiminhcity.gov.vn)
- 베트남 사회정책은행 : www.vbsp.org.vn
- 베트남 개발은행 : www.vdb.gov.vn
- 중앙인민신용기금 : www.ccf.vn
- 통계청 : www.gso.gov.vn
- 국가공인 사업등록처 : <http://hieudinh.dangkykinhdoanh.gov.vn>
- 증권위원회 : <http://www.ssc.gov.vn>

□ 교육

- 베트남 사회과학원 : www.vass.gov.vn
- 베트남 과학기술원 : www.vast.ac.vn
- 중앙경제관리원 : www.ciem.org.vn
- 국가 원자력에너지원 : www.vaec.gov.vn
- 공업부 - 기계 연구원 : www.narime.gov.vn
- 과학기술정보국 : www.vista.gov.vn
- 하노이 국립 대학교 : www.vnu.edu.vn
- 호치민 국립 대학교 : www.vnuhcm.edu.vn

□ 사회/문화/언론

- 문화체육관광부 : www.cinet.gov.vn
- 베트남 관광청 : www.vietnamtourism.com



- 베트남 역사 박물관 : www.baotanglichsu.vn
- 베트남 호치민 박물관 : www.baotanghochiminh.vn
-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 : www.vme.org.vn
- 호치민 묘소 : www.bqlang.gov.vn
- 베트남 군사역사 박물관 : www.btlsqsvn.org.vn
- 베트남 여성연맹 : hoilhpn.org.vn
- 베트남 학생회 : hsvvn.vn
- 베트남 노동연맹 : www.congdoanvn.org.vn
- 베트남 농민회 : www.hoinongdan.org.vn
- 베트남 변호사연맹 : liendoanluatsu.org.vn
- 베트남 방송국 : vtv.vn
- 베트남 라디오방송국 : vov.vn
- 베트남 통신사 : news.vnnet.vn
- 인민일보 : www.nhandan.com.vn
- 노동신문 : laodong.com.vn
- 선봉신문 : www.tienphong.vn
- 젊은이신문 : tuoitre.vn
- 청년신문 : www.thanhnien.com.vn
- 베트남뉴스(영자) : vietnamnews.vn

□ 한인소식

- 재하노이한인회 : homepy.korean.net/~vietnamhanoi/www
- 재호치민한인회 : koreanhcm.org

9

참고문헌 (웹사이트)



1. 베트남 국세청(www.gdt.gov.vn)
2. PWC, Vietnam Pocket Tax Book 2018 / PWC, 2018
3. Deloitte Vietnam-세무뉴스 / 2016-2018
4. KPMG, 『Transfer pricing Newsletter』, KPMG, 2016-2018
5. 법무법인 아세안 - 주간 베트남 법률뉴스레터 / 2016-2018
6. Kocham Seminar
 - 2017. 4. 26. 베트남 개정 이전가격세제 이해 및 대응 전략(광장)
 - 2017. 7. 12. 개정세법을 반영한 이전가격 실무 세미나(이정회계법인)
 - 2017. 9. 14. 이전가격 과세동향 및 세무조사 대응방안(EY)
 - 2017. 9. 15. 베트남 국세청 한국기업인과의 간담회 (국세 분야)
 - 2017. 11. 22. 특수관계자 거래유형별 회계와 세무 및 과세 동향(서우회계법인 베트남)
 - 2018. 5. 23. 개정국세 및 세무조사 동향 (서우회계법인 베트남)
7. 법률신문, 『베트남 이전가격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울촌)』 2017,
8. 2016년 베트남 개정세법 GUIDE/ 우리세무회계법인
9. kotra 『해외 시장뉴스 국가 지역정보』, 2018
10. kotra 『국가별 진출전략(베트남)』, 2018
11. 해외경제연구소, 『유망진출산업 분석시리즈 (1) 베트남』, 2017
12.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2017
13. 김상기 외 『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대한회계학회, 2015
14. 김경돈, 『베트남의 투자 인센티브 종류와 획득 방법 안내』,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2018
15.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 / 2014
16. 국세청,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국세청, 2016



17. 법무법인 율촌, 『외국인계약자세의 이해』, 율촌, 2011
18. 변동욱 영사,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제 안내』, 주호치민총영사관, 2013
19. pwc, 『vietnam pocket tax book』, pwc, 2017
20. 변동욱 영사, “최신 베트남 세법”, 문커뮤니케이션(2015.6)
21. 변동욱 영사, “베트남 사업현장 주요 세법”, 문커뮤니케이션(2015.6)
22. 이정회계법인, Vietnam Taxation & Investment Guide(2017)
23. 이정회계법인, 베트남 회계 세무 환경
24. 책임연구원 신충일, 『베트남 신투자법 실무』, 무역협회, 2017
25. 해외경제연구소, 『베트남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해외경제연구소, 2017
26. 이제홍, 『베트남 직접투자 기업의 진입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2012
27. 왕봉, 박준호, 강명구,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입지결정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개발학회, 2015
28. 법무법인 율촌, 『강화된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율촌, 2018
29. 국세청, 2016 APA 연차보고서(2017.12월)
30. 국제원산지정보원, 외국의 비관세장벽 자료 체계화 연구용역보고서 (2017.12)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베트남)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 044 - 204 - 2814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국제조사관 김종국

국제조사관 홍미라

국제조사관 신종훈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044-204-281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의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2018